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0549-01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 취약보육과 보육교사 인력활용을 중심으로 -

2011.12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0549-01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 취약보육과 보육교사 인력활용을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서 문 희(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양 미 선(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권 미 경(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이 완 정(인하대학교 교수)

이 미 화(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 혜 진(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보 건 복 지 부
육아정책연구소

본 보고서는 육아정책연구소가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보건복지부의 공식적 입장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제 출 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의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 취약보육과 보육교사 인력활용을 중심으로 -』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 영

차 례

요약	1
I.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2. 연구 내용	12
3. 연구 방법	12
4. 연구의 범위	18
II. 연구의 배경	19
1. 취약보육의 수요와 요구	19
2. 국내·외 연구동향 및 사례	27
III. 야간보육(시간연장보육)	56
1. 시간연장보육 제도	56
2. 시간연장보육 현황 및 문제점	61
3. 시간연장보육 운영 모델	79
4. ‘시간연장보육 운영 다양화 시범사업’ 운영 방안	92
5. 시간연장보육 내실화를 위한 개선 방안	95
IV. 시간제 일시보육	100
1. 시간제 일시보육 제도	100
2. 시간제 일시보육 현황 및 문제점	101
3. 시간제 일시보육 운영 모형	116
4.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133
V. 토요보육	136

1. 토요보육 제도	136
2. 토요보육 운영 현황 및 문제점	136
3. 토요보육 개선 방안	148
VI. 보육교사 활용 방안	158
1. 보육교사 미취업 요인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의견	158
2. 보육교사 인력활용 개선방안	165
부록	177
부록 1. 시간연장보육 이용신청서	179
부록 2. 토요보육 현황 조사 설문지	180

표 차례

〈표 I-3-1〉 시간연장보육 심층면담 내용	14
〈표 I-3-2〉 시간연장보육 심층면담 교사 특성	14
〈표 I-3-3〉 시간연장보육 심층면담 원장 특성	14
〈표 I-3-4〉 시간연장보육 심층면담 부모 특성	15
〈표 I-3-5〉 시간제 일시보육 심층면담 기관장 특성	15
〈표 I-3-6〉 시간제 일시보육 심층면담 내용	16
〈표 I-3-7〉 토요일보육 심층면담 원장과 교사 특성	16
〈표 I-3-8〉 토요일보육 심층면담 내용	16
〈표 I-3-9〉 보육교사 인력활용 심층면담 내용	17
〈표 I-3-10〉 보육교사 인력활용 심층면담자 특성	17
〈표 II-1-1〉 취약보육의 필요성	19
〈표 II-1-2〉 부모 특성별 취약보육 서비스 필요성: 야간보육	21
〈표 II-1-3〉 부모 특성별 취약보육 서비스 필요성: 시간제보육	22
〈표 II-1-4〉 부모 특성별 취약보육 서비스 필요성: 토요일보육	22
〈표 II-1-5〉 취약보육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이용 사유	23
〈표 II-1-6〉 취약보육 서비스별 이용 가능성	24
〈표 II-1-7〉 취약보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4점 척도)	25
〈표 II-1-8〉 취약보육 서비스별 장소 선호도	26
〈표 II-1-9〉 보육서비스별 선호 형태: 야간보육	26
〈표 II-1-10〉 보육서비스별 선호 형태: 토요일보육	27
〈표 II-2-1〉 일본의 야간보육 실시현황	28
〈표 II-2-2〉 나고야시의 야간보육소	29
〈표 II-2-3〉 일시보육의 장소별 유형	31
〈표 II-2-4〉 일시보육의 이용 목적별 유형	31
〈표 II-2-5〉 일본 일시보육 실시 현황	31
〈표 II-2-6〉 요코하마시 일시보육 유형별 운영 내용	32
〈표 II-2-7〉 요코하마시 일시보육 유형별 실시 현황	32
〈표 II-2-8〉 요코하마시 24시간형 긴급 일시보육 이용료	33

〈표 II-2-9〉 나고야시 일시보육 이용 아동수: 2009	33
〈표 II-2-10〉 나고야시 일시보육 이용료	33
〈표 II-2-11〉 휴일보육 일본 전체 실시 현황	36
〈표 II-2-12〉 삿뽀로시의 휴일보육 이용료	37
〈표 II-2-13〉 나고야시 휴일보육 이용료	37
〈표 II-2-14〉 유럽 각국의 시간 외 보육 서비스 실시 현황	38
〈표 III-1-1〉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	58
〈표 III-1-2〉 시간연장보육료 지원단가	61
〈표 III-2-1〉 시간연장보육 운영 기관수: 2010년	61
〈표 III-2-2〉 기관유형별 시간연장보육 아동수: 2010년	62
〈표 III-2-3〉 연령별 시간연장보육 이용 비율	63
〈표 III-2-4〉 기관유형별 시간연장보육 교사수 : 2010년	65
〈표 III-2-5〉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영유아의 하원시각	67
〈표 III-2-6〉 ○○가정어린이집 10월 시간연장반 수입·지출내역서	74
〈표 III-2-7〉 ○○국공립어린이집 10월 시간연장반 수입·지출내역서	75
〈표 III-2-8〉 시간연장보육 서비스 이용 횟수와 1회 평균 이용시간	78
〈표 III-3-1〉 시간연장보육 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87
〈표 III-3-2〉 연령별 교사 대 아동 비율	87
〈표 III-3-3〉 시간연장보육 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89
〈표 III-3-4〉 연령별 교사 대 아동 비율	90
〈표 III-3-5〉 시간연장보육 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91
〈표 III-5-1〉 교사 대 아동 비율	98
〈표 IV-2-1〉 서울형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운영 기관수	102
〈표 IV-2-2〉 서울형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운영과 이용방법	103
〈표 IV-2-3〉 서울형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전담교사와 전용공간 보육 프로그램의 유무	104
〈표 IV-2-4〉 365 열린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운영과 이용방법	107
〈표 IV-2-5〉 365 열린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이용현황	108
〈표 IV-2-6〉 영유아플라자 시간제 보육 운영현황	110
〈표 IV-2-7〉 ‘아가야’ 시간제 열린 육아센터 운영과 이용방법	112
〈표 IV-2-8〉 ‘아가야’ 시간제 열린 육아센터 연도별 이용현황	113
〈표 IV-2-9〉 2010년도 ‘아가야’ 시간제 열린 육아센터 공간보육 연령별 이용현황	113

〈표 IV-2-10〉 시간제 일시보육 수요자와 공급자의 요구와 고려되는 대안	115
〈표 V-2-1〉 조사대상 대비 실제 조사참여 비율	137
〈표 V-2-2〉 토요보육 운영 여부	137
〈표 V-2-3〉 지역별 토요보육 운영여부	137
〈표 V-2-4〉 어린이집 유형별 토요보육 운영여부	138
〈표 V-2-5〉 토요보육 운영 횟수별 분포	138
〈표 V-2-6〉 토요보육 운영 횟수별 지역규모 분포	138
〈표 V-2-7〉 토요보육 운영 횟수별 어린이집 유형 분포	139
〈표 V-2-8〉 토요보육 운영 시간	139
〈표 V-2-9〉 토요보육 이용 아동	139
〈표 V-2-10〉 지역 및 어린이집 유형별 월간 토요보육 이용 아동의 차이	140
〈표 V-2-11〉 지역 및 어린이집 유형별 월간 토요보육 이용 영아의 차이	141
〈표 V-2-12〉 지역 및 어린이집 유형별 월간 토요보육 이용 유아의 차이	141
〈표 V-2-13〉 토요일 한 달 평균 출근인원	142
〈표 V-3-1〉 현행 시간연장 어린이집과 「가항토요보육반 운영어린이집」의 범위 비교	149
〈표 V-3-2〉 현행 휴일 어린이집과 「나항지역거점형 토요보육 어린이집」의 범위 비교	152

그림 차례

[그림 II-1-1] 취약보육 서비스별 필요성	20
[그림 II-1-2] 취약보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	24
[그림 II-2-1] 프랑스 일시보육 기관수 변화	34
[그림 III-1-1] 시간연장보육 개념도	56
[그림 III-2-1] 연도별 시간연장 어린이집(2009~2011)	62
[그림 III-2-2] 연도별 시간연장보육 이용 아동수	63
[그림 III-3-1] 시간연장보육 운영 모델	80
[그림 III-5-1] 시간연장보육 신청절차	95
[그림 III-5-2] 시간연장보육 신청양식 등록 화면(예)	95
[그림 III-5-3]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시간연장보육 이용시간 등록 화면(예)	97
[그림 IV-3-1] 시간제 일시보육 모형 요약	117
[그림 IV-3-2] 시간제 일시보육 교사 근무시간 운영 모형	120
[그림 VI-2-1] 보육교직원 인력풀 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체계	168
[그림 VI-2-2]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심으로 한 보육교직원 인력풀 관리 시스템 사업 추진 체계	170

요 약

1. 서론

- 본 연구는 시간연장보육, 시간제 일시보육 및 토요보육의 현황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둬. 또한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인 전문 인력이 보육서비스 시장으로의 진입을 꺼리는 요인을 분석하고, 유희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국가적인 관리 체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야간보육(시간연장보육), 시간제 일시보육 및 토요보육의 수요 및 현황을 검토함.
 - 시간연장보육, 시간제 일시보육 및 토요보육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시간연장보육, 시간제 일시보육 및 토요보육의 모형을 제시함.
 - 보육교사 인력활용에 대한 선행연구 및 관련 이론을 분석하고 전문 보육인력의 보육시장 진입 저해 요인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보육교사 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을 강구함.
- 연구방법으로 국내외 문헌조사, 설문조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음.
 - 시간연장보육, 시간제 일시보육 및 토요보육과 관련한 국내외 문헌자료를 수집, 분석함.
 -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자료, 육아정책연구소의 2011년 각종 관련 조사 자료 등 기존 자료를 재분석하여 시간연장보육, 일시보육, 토요보육의 실태 및 요구도를 파악하였음.
 - 시간연장보육, 시간제 일시보육 및 토요보육, 보육교사 인력활용 관련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및 해당 보육서비스 제공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 및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음.
 -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정책 방안을 모색하였음.

2. 야간보육(시간연장보육)

가. 시간연장보육 현황과 문제

- 시간연장보육이란 기준 보육시간(07:30~19:30) 이후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것으로 2010년 보육통계에 따르면(2010.12월 현재), 전체 어린이집 38,021개소 중 시간연장 어린이집은 6,535개소로 약 17.2%를 차지함.
 - 최근 3년간 시간연장보육 이용 아동수는 2009년 28,288명에서 2010년 36,455명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2011년 10월 45,000여명에 달함.
- 현행 시간연장보육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시간연장보육 이용 신청절차에 대한 지침 부재로 부모들의 시간연장보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용률이 저조함.
 - 시간연장보육 시작시간의 부적절성으로 인하여 유치원이나 타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필요한 시간에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 영유아 혼합연령반 운영으로 발달에 적합한 보육활동을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보육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됨.
 - 시간연장보육 특성을 반영한 보육 프로그램 부재로 부모의 요구에 따라 시간연장보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거나 주간 프로그램이 연장 운영되고 있음.
 - 야간근무, 낮은 임금 등의 이유로 시간연장보육 교사 채용 및 채용 후 지속적인 근무가 어려움.
 - 시간연장보육 교사의 근무시간의 개선 및 대체교사 인력풀 마련이 시급함.
 - 시간연장보육 교사는 주간 교사와는 다른 역할 수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연장보육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시간연장 보육교사 직무연수가 필요함.
 - 시간연장보육 교사 인건비가 지원되지만 기본 운영비가 추가 발생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시간연장보육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부족으로 시간연장보육의 근본 취지와는 다르게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 부모 대상의 시간연장보육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이용 부모들이 지원대상이나 신청방법, 이용시간, 보육료 및 석식비 수납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

- 시간연장보육료 지원 이용시간이 현행 월 60시간이지만 실 이용시간은 이에 미치지 못함. 따라서 이용시간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의 시간연장보육 이용아동 및 이용시간과 관련한 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나. 시간연장보육 운영 모델: 세가지 모형

- 모든 어린이집이 신청하도록 개방하여 아동이 소수이어도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현행 시간연장보육 제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거점형 시간연장보육, 연계형 시간연장보육, 결합형(2in1) 시간연장보육 모델을 제안함.
- 모형 1: 거점형 시간연장보육 운영 모델
 - 「거점형 시간연장보육」은 종일보육과 시간연장보육 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형태로, 현행 모든 어린이집에서 소수의 아동을 시간연장보육하는 비효율적 운영을 개선하고자 시간연장보육을 상시 이용하는 아동들을 지역 내 거점 어린이집으로 모아 보육하는 형태임.
- 모형 2: 연계형 시간연장보육 운영 모델
 - 「연계형 시간연장보육」은 인근의 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의 시간연장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보육 형태로, 등·하원 차량으로 인근 기관을 순회하여 시간연장보육 이용 아동을 운영 기관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임.
- 모형 3: 결합형(2in1) 시간연장보육 운영 모델
 - 「결합형 시간연장보육」은 시간연장보육 이용 아동수가 일일 평균 3명 이하인 어린이집 2개소가 상호운영하는 형태로, 격월로 보육교사가 시간연장보육 이용 아동과 함께 해당 월의 운영 어린이집으로 가서 시간연장보육하는 형태임.

다. 시간연장보육 내실화를 위한 개선 방안

- 시간연장보육 내실화를 위한 실행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시간연장보육 이용을 위한 신청 절차로 신청양식 등록이나 온라인 신청 등 기준을 마련함.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의 시간연장보육 시간을 월단위에서 주단위 또는 일단위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함.

- 시간연장보육료 지원한도액을 월 60시간에서 월 45시간으로 축소 지원함.
- 시간연장보육료와 석식비를 통합 지원하고 보육료를 현실화함.
- 국공립어린이집 시간연장보육 교사 인건비 지원을 종전대로 80% 지원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하는 단시간 근로제 도입함.
- 시간연장보육 프로그램 개발 및 혼합연령반 연령 기준을 마련함.
- 시간연장보육 교사 직무연수 제도화 및 대체교사 인력풀을 마련함.
- 시간연장보육 이용 부모교육 활성화 및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를 확대함.

3. 시간제 일시보육

가. 시간제 일시보육 현황과 문제

- ☐ 시간제보육은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부득이한 경우에 비정기적인 보육을 받는 경우를 의미함.
 - 정규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비정형적, 비정기적 보육서비스임.
 - 영영아(만 1세 이전)와 영아(1세~2세)의 수요가 많음.
 - 시간제 일시보육은 보육 수요와 이용이 불규칙함.
 - 보육 서비스 수요자와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신뢰 관계 형성이 어려움.
 - 갑자기 맡겨지는 아동을 위한 공간 환경과 인적 환경에의 배려가 필요함.
 - 시간제 일시보육은 안전과 건강에 취약하기 쉬움.
 - 시간제 일시보육은 정규보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미취업 어머니와 시간제 취업 어머니들의 이용이 많음.
- ☐ 시간제 일시보육의 수요가 많고 그 이용이 활발한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현재 운영 중인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는 다음과 같음.
 - 서울특별시의 보육포털서비스를 통해 신청 가능한 서울형 어린이집 맞춤보육으로의 시간제 보육, 365 열린 어린이집의 시간제 보육, 서울특별시의 각 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영유아플라자와 육아지원센터에서의 시간제 보육, 사회적 기업

인 YMCA ‘아가야’에서 운영하는 시간제 보육 등 네가지임.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 수요자의 요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긴급한 일시보육 상황에 이용이 어려움.
 - 일시보육을 위한 예약이 쉽지 않음.
 - 영영아나 영아는 맡기기가 어려움.
 - 낯선 장소에서 아동이 부모와 떨어지기 힘들어 안전하고 쾌적한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원함.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함.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 공급자의 요구는 다음과 같음.
 - 정원 이외의 아동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갑작스런 일시 보육을 위해 정원을 예상해 비워둘 수 없음. 일시보육의 수요예측이 어려움.
 - 낯선 상황과 장소, 사람을 만나 적응의 어려움 보이는 아동을 보육하기 위해서는 경력이 많고 상호작용을 잘할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함.
 - 기존 기관에서는 전용공간 확보가 어려움.
 - 혼합 연령으로 구성되어 보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힘들.
 - 일시보육 아동의 부적응 또는 건강이 기존 보육 아동에게 영향을 미침.
 - 영아 시간제 보육의 경우, 보육정원이 채워진 상태라 긴급 일시보육이 어려우며, 안전과 돌연사 같은 염려와 사고의 책임이 부담됨.
 - 일시보육교사의 보육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일시보육 전담교사를 구하기 힘들.

나. 시간제 일시보육 운영 모형: 세가지 모형

- 모형 1. 시간제 일시보육의 수요를 고려하여 기존 어린이집의 운용에 변화
 - 일시보육의 수요를 감안하여 두 가지로 차별화된 접근이 고려됨.
 - 시간제 일시보육에 대한 수요와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에는 권역별로 시간제 일시보육을 위한 거점 어린이집을 지정하고 지원을 활성화함.
 - 시간제 일시보육 수요가 매우 불규칙하고 이용 빈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기존 어린이집의 정원을 융통성 있게 운용하는 방

안이 고려될 수 있음.

□ 모형 2: 어린이집 이외 현재 시간제 일시보육 제공하고 있는 기관의 활성화

- 어린이집은 아니지만 이미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이용하여 운영을 지원·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신규기관을 설치하는 것보다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됨.
- 영유아플라자 또는 육아지원센터 등에서 제공되는 일시보육의 정원과 이용시간 등을 늘려 그 운용을 활성화하는 것임. 부모가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좋을 수 있음.
- 시간제 일시보육을 위한 사회적 기업인 '아가야' 등과 같은 기관의 활성화를 통해 일시보육의 수요를 보조적으로 충족함.

□ 모형 3: 시간제 일시보육 전담기관 제도

- 시간제 일시보육 전담 기관을 설치하는 방법, 적절한 장소를 마련하고 전담교사를 확보하여 운영하는 방법,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동사무소가 통폐합된 공간이나 지하철 역사의 유휴 공간, 초등학교 빈 교실 활용하는 방법 등이 고려됨.
- 보육교사 자격 소지여부와 경력, 품성, 가정의 보육환경으로서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일시보육 전담 가정을 지정하여 보육포털을 통해 연결하는 방법으로 자가에서 소규모의 시간제 일시보육을 제공하는 것임.
- 비정형적, 비정기적 일시보육의 특성상 24시간 운영하는 기관으로, 이런 필요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형병원 내에 또는 그 근접지역에 일정공간을 확보, 24시간 시간제 일시보육을 제공하는 모델임.

다. 시간제 일시보육 품질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의 시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이용현황을 지역별, 월별, 시간대별, 이용아동의 연령별 특성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에 대한 통계를 자료화하여 보육 수요와 이용경향을 예측함.
- 낯선 환경과 사람 사이에서 아동이 경험하기 쉬운 불안한 보육경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서지원이 강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함.
- 시간제 일시보육이 지니는 긴박성, 안전과 건강에 대한 취약성, 부모-교사의 관

제형성 어려움 등 특성을 반영한 대응 행동기준을 설정함.

- 교사의 채우는 보육 서비스의 질과 긴밀한 관련이 있으므로 경험 많은 시간제 전담교사의 인력풀(pool)을 구성하고 수요 발생 시 기관에 파견하는 방법을 고려함.
-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므로 부모에게 일시보육 서비스 제도 자체와 집 근처의 이용가능한 기관, 이용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

4. 토요보육

가. 토요보육 현황과 문제

- 토요보육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1,236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적은 이용아동에도 불구하고 매주 토요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토요일에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전체 조사 참여기관의 82.2%(997개소)로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토요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대부분의 어린이집(80.3%)은 매주 토요일(4~5회)에 어린이집을 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토요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은 각 기관마다 영아는 평균 1.61명, 유아는 평균 1.82명으로 적은 편이었음.
- 보육교직원들은 이용하는 아동이 없는 토요일에 출근할 때도 있으며, 토요일에 출근하는 인원은 평균 1.77명으로 주로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나. 토요보육 개선 방안

- 토요보육-가형
 - 토요보육-가형은 어린이집에서 일정 조건을 갖추어 토요보육만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2명 이상의 영유아를 토요일에 보육하였을 경우 보육교사의 추가 근무수당을 지원하는 것임.
 -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은 1:5를 기준으로 하되, 유아만 있는 반의 경우 1:7까지로 함.

- 토요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육장소를 지정하고 영유아의 연령별,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공간을 구성한 후 영유아의 특성에 알맞은 교재, 교구를 배치하고, 주제를 중심으로 보육계획을 수립함.
- 등원, 실내외 자유선택활동, 간식, 대소집단활동, 점심 및 자유놀이, 귀가로 이루어지는 하루일과를 운영하도록 함.

☐ 토요보육-나형

- 토요보육-나형은 지역거점형 토요 어린이집 운영 모형으로서 어린이집에서 일정 조건을 갖추어 지역거점형 토요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후 영아반과 유아반을 각각 2개반 이상씩 운영하되, 1개반은 기존 보육교사가 담당하고, 1개반은 토요 보육교사를 배치하여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임.
-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은 영아반은 0-2세 영아 혼합연령반을 기준으로, 유아반은 3-5세 유아 혼합연령반을 기준으로 함. 장애아가 있을 경우 종사자의 업무 범위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도록 함.
- 토요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아반과 유아반의 보육실 구성, 교재 교구의 배치 및 하루일과의 운영원리를 각각 준수하도록 함.
- 토요보육 과정은 영아반과 유아반에 대한 보육일지를 각각 작성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된 내용은 이후 보육계획 수립에 환류될 수 있도록 해야 함.

5. 보육교사 활용 방안

가. 보육교사 미취업 요인

- ☐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나 취업하지 않은 이유는 개인마다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양함. 그러나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미취업 요인은 다음과 같음.
- 미취업 요인으로서는 낮은 임금수준, 직무환경(장시간 근로, 열악한 복지 수준), 보육교사직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원장과의 철학 불일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이 공통적으로 지적됨.

나. 보육교사 인력활용 개선 방안

- ☐ 미취업 자격증 소지자 활용방안

- 시간제 근로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형태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음. 다양한 근무시간에 적합한 근로직종을 개발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함.
 - － 통합 보육시간제 교사, 건강영양관련 시간제 교사(점심시간 전후로 집중 배치), 업무지원 시간제 교사 등이 제안됨.
 - 유휴 인력들이 자신의 상황과 관심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직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 제안된 일자리로는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국’의 현장관찰자, 가정보육교사나 아이돌보미 등의 가정 내 양육지원인력, 방과 후 교사 등이 있음.
 - 미취업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다시 보육 현장으로 투입되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이 필수적임.
 - － 재취업의 형태(보육교사, 시간제 교사, 현장관찰자, 보육요원, 가정 내 양육지원인력 등)에 따른 보수교육과정 개발이 요구됨.
 - 현재 대부분의 미취업 상태인 자격증 소지자들은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함.
 - － 보육 교직원들의 자녀에 대한 보육지원이 필수적임.
 - 경력 단절 보육교사의 재취업 관련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함(예: 대체교사형태 또는 시간제 교사 형태 등).
 - － 주 40시간 이상일 때 경력을 인정해주던 과거의 시스템이 변화하여, 현재는 주 30시간의 단축 근로형태도 경력으로 인정해주고 있음.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경력단절 교사의 재취업에 관한 유인책으로 활용함.
- 자격증 소지자 인력관리 방안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과 같이 보육교직원 국가자격 관리시스템을 갖춘 기관에서 신뢰성을 갖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격취득에서부터 채용까지 이르는 one-stop 서비스 구현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함.
 - －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내 인력풀 관리시스템을 구축함.
 - － 인력풀 등록 신청자 이력서 검증 절차 수행 및 대상을 관리함.
 - － 인력풀 등록자 재취업을 위한 교육 및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 －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내 구인 신청 내역 및 지원자 이력서 열람체계를 구축함.
 - － 인력풀 관리 시스템 내 어린이집 구인신청 정보를 관리하고 1:1로 매칭함.

- 보육 관련 최신 정보 안내를 위한 메일링 서버를 구축함.
- '보육정보센터' 보육인력 관리시스템을 마련함.
 - '보육교사 인력뱅크' 중앙시스템을 구축하여 어린이집과 보육인력을 매칭함.
 -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구직' 시스템 활용하여 중앙보육정보센터와 시군구보육정보센터의 구인·구직란을 연결하여 인력수급 체계를 단일화함.
- 자격관리 및 인력 관리의 연동 시스템을 마련함.
 - 자격증 신청 시 회원가입 단계에 자격증 발급 이후에 채용 및 보육분야 최신 정보에 대한 수신(메일 또는 SMS)을 받겠다는 동의를 받아서 인력관리 시스템으로 자동 연동되도록 하는 방안임.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 보육은 기관수가 거의 4만개에 이르고 소요 예산도 총 5조에 이르는 등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음.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이 획일적으로 추진되어 부모들의 다양한 요구에 세밀하게 대응하고 있지 못함.
- 통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시간(07:30~19:30) 이후의 야간 시간대에 운영하는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운영 중이나, 운영기준과 보육 프로그램의 미비, 안전 매뉴얼 등의 부재로 시간연장보육 서비스의 질 저하 야기가 우려됨.
 - 1,000여개 기관에 시간연장보육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각 기관마다 이용 아동은 소수에 불과하여 프로그램 운영 등이 여의하지 않는 등 질적 수준이 높지 않음.
 - 맞벌이 부모 등이 저녁 늦은 시간까지 안심하고 영유아를 맡길 수 있도록 야간 연장 어린이집 운영의 내실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어린이집의 획일적인 12시간 운영과 이용에서 벗어나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합리적인 수요가 있는 경우에 필요 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정기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의 부모가 일시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운영 모형 마련이 요구됨.
- 2011년 7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주 40시간 근무제 등의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원칙적으로 토요일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상대적으로 유사 업종에 비해 과도한 보육교사의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토요일 보육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지역별 보육수요, 환경에 맞추어 거점 형태로 토요일에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조건, 방안 등의 검토가 요구됨.

- '05년도 보육교사 국가 자격증제가 도입된 이후, 매년 8만여명의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신규로 유입됨에도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약 32%만 보육 현장에 종사하고 있어서,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의 효과적인 활용이 미흡한 실정임.
 -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인 전문 인력이 보육서비스 시장으로의 진입을 꺼리는 요인을 분석하고, 유희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국가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시간연장보육, 시간제 일시보육 및 토요보육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들의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고, 전문 보육인력의 보육교사 진입 저해 요인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보육교사 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 본 연구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시간연장보육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 모형을 제안하고 시간연장보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함.
 - 시간제 일시보육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시간제 보육 활성화를 위한 운영 모형을 제시함.
 - 토요보육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모형을 제시함.
 - 보육교사 미취업 요인을 분석, 개선사항을 도출하며, 보육교사 인력활용 개선 방안을 제시함.

3. 연구 방법

가. 관련 국내외 문헌연구

- 취약보육과 관련한 국내외 문헌 및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해외자료 고찰을 통한 선진 해외 사례를 연구함.

- 어린이집관리시스템 어린이집 및 운영 관련 자료를 분석함.

나. 기존 조사 자료 분석

-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2011년 조사 자료 등 기존 자료를 분석하여 야간보육(시간연장보육), 시간제 일시보육, 토요보육의 현황과 실태 및 요구도를 파악함.

다. 설문조사

1) 시간제 보육

-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에 등록된 시간제 보육서비스 운영 어린이집 56개소를 대상으로 실태 파악을 위한 전화조사를 실시함. 이와 함께 영유아플라자를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여 시간제 보육서비스 운영 현황을 파악함.
- 서울특별시 각 구별 보육정보센터의 시간제 보육서비스 운영 현황에 대해 온라인 조사를 실시함.

2) 토요보육

- 전국 1,236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토요보육 현황에 대해 조사한 설문자료를 분석하여 토요보육의 실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함.

라. 어린이집 관찰 및 심층면담

- 시간연장보육, 일시보육 및 토요보육 운영과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위한 기관 방문 관찰 및 관계자 면담을 실시함.

1) 야간보육(시간연장보육)

- 시간연장보육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시간연장보육 교사 및 근로시간 연장 교사 등 관련 인력을 대상으로 시간연장보육 운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심층면담을 실시함.

- 심층면담 내용은 <표 I-3-1>과 같음.

<표 I-3-1> 시간연장보육 심층면담 내용

구분		질문
시간 연장 보육	원장	- 시간연장보육 운영 현황(시간연장교사 수, 이용 아동수, 운영시간, 이용 사유, 부모 특성 등) - 시간연장보육 운영 시 어려움(교사 채용 및 관리, 재정, 프로그램 운영, 기타 인력 등) - 시간연장보육 운영지침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시간연장보육 활성화 방안
	교사	- 시간연장보육반 운영 현황(담당 연령, 아동수) - 시간연장보육 교사 처우 문제(근무시간, 보수, 담당업무, 프로그램, 애로사항 등) - 시간연장보육 활성화 방안
	부모	- 시간연장보육 이용현황(이용시간, 이용 사유, 부모 특성 등) - 시간연장보육 이용 시 문제점 및 요구사항

- 시간연장보육 운영 어린이집 심층면담에 참여한 교사와 원장의 제 특성은 <표 I-3-2>, <표 I-3-3>과 같고 시간연장보육 서비스 이용자 대상의 심층면담에 참여한 부모의 제 특성은 <표 I-3-4>와 같음.

<표 I-3-2> 시간연장보육 심층면담 교사 특성

구분		지역	교사 특성		기관 규모
			연령	경력	
시간연장교사	1	서울	37	10	가정(20인)
근무수당교사	1	전주	42	4	민간(89인)
	2	전주	31	2	민간(91인)

<표 I-3-3> 시간연장보육 심층면담 원장 특성

단위: 세, 년

구분	지역	원장 특성		기관유형
		연령	경력	
1	서울	40	7	가정어린이집
2	서울	52	20	가정어린이집
3	서울	34	5	가정어린이집
4	서울	44	14	가정어린이집
5	서울	42	12	국공립어린이집
6	서울	41	7	국공립어린이집
7	서울	37	16	민간어린이집
8	전주	57	18	민간어린이집

〈표 I-3-4〉 시간연장보육 심층면담 부모 특성

구분	지역	1학력	직업	자녀 수	기관이용 자녀연령	소속 기관	보육료 지원	시간연장보육 이용시간	이용 유형
1	서울	중졸	자영업	1	만 5세	유치원	100%	19:00~21:00 (3시간)	시간연장
2	서울	대졸	영양사	1	만 3세	가정	-	19:30~20:30 (1시간)	종일보육 시간연장
3	서울	대졸	회사원	1	만 3세	가정	100%	19:30~21:00 (1시간30분)	종일보육 시간연장
4	서울	고졸	자영업	2	만 3세	가정	100%	19:30~21:40 (2시간10분)	종일보육 시간연장
					만 5세	유치원	60%	19:00~21:40 (2시간40분)	시간연장

2) 시간제 일시보육

- ☐ 어린이집의 시간제 일시보육 운영과 문제점에 대한 심층조사를 위해 기관 방문 관찰 및 관계자 심층면담을 실시함.
- 현장관찰을 통한 운영현황을 파악함.
 - 어린이집 원장, 교사 및 보육정보센터장, 일시보육센터 전문가 등 관련 인력을 대상으로 시간제 일시보육 운영방안 마련 심층면담을 실시함.
 - 심층면담에 참여한 교사와 기관장의 제 특성은 <표 I-3-5>와 같고, 심층면담 내용은 <표 I-3-6>과 같음.

〈표 I-3-5〉 시간제 일시보육 심층면담 기관장 특성

구분	지역	원장 특성		기관 형태(정원)
		연령	경력	
1	서울 강남구	만 40세	7년	국공립(86명)
2	서울 광진구	만 36세	16년	민간(70명)
3	서울 동대문구	만 39세	12년	국공립(71명)
4	서울 동대문구	만 44세	22년	국공립(54명)
5	서울 동대문구	만 38세	16년	영유아플라자
6	서울 금천구	만 35세	8년	영유아플라자
7	서울 서초구	만 50세	15년	영유아플라자
8	서울 강남구	만 32세	5년	육아지원센터
9	서울 강남구	만 26세	3년	육아지원센터
10	서울 영등포구	만 39세	7년	사회적기업

〈표 1-3-6〉 시간제 일시보육 심층면담 내용

구분	질문
시간제 일시보육	- 일시보육 운영시간 및 이용현황(이용아동 특성, 이용사유, 부모특성 등) - 일시보육 운영 시 어려움(정부지원, 교사 수급, 프로그램 운영, 기관관리 등) - 일시보육 운영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일시보육 활성화 방안

3) 토요보육

- 토요보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어린이집 원장, 원감, 교사 등 보육 교직원을 심층 면접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토요보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안을 살펴봄.
- 면접자는 원장 1명, 원감 1명, 교사 2명으로 총 4명임. 심층 면담자의 인적 사항과 특성을 요약하면 <표 1-3-7>과 같고 심층면접 내용은 <표 1-3-8>과 같음.

〈표 1-3-7〉 토요보육 심층면담 원장과 교사 특성

구분	지역	연령	총경력(현기관 경력)	기관형태(정원)
원장	1 경기(인천 부평)	만33세	10년(7년)	민간(150명)
	2 경기(인천 부평)	만42세	12년(2년)	가정(20명)
교사	1 서울	만47세	10년(5년)	민간(41명)
	2 서울	만38세	7년(7년)	가정(20명)

〈표 1-3-8〉 토요보육 심층면담 내용

구분	질문
토요보육	- 보육교사 근무시간에 대한 의견(현행 영유아보육법의 정규 보육운영시간의 적정성, 주40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 - 추가근무에 해당되는 시간연장보육에 대한 인식(교사인건비 지원여부, 운영이유, 학부모 요구도, 추가근무에 대한 재정지원, 운영의 어려움, 급간식 및 프로그램 운영 등) - 토요보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필요성, 현재 진행여부, 주변 어린이집의 운영현황, 토요보육 수요의 안정성) - 토요보육 개선안(토요보육반 vs. 거점형 토요어린이집)에 대한 의견(운영방식, 선호도, 예상되는 문제점) - 토요보육 운영요소에 대한 인식(교사 대 아동비율, 프로그램, 재정지원방식, 토요보육 운영방식, 다른 대안 등)

4) 보육교사 인력활용

- ☐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나, 현재 무직이거나 교사와 무관한 일을 하고 있는 대상 10명에 대하여 심층 면접을 실시함.
- 심층 면접은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진행하였고, 1인당 1회 면접을 실시하였음.
 - 모든 면담은 녹음하였고, 녹음 기록은 전사하여 분석함.

〈표 I-3-9〉 보육교사 인력활용 심층면담 내용

구분	질문
보육교사 인력활용	－ 보육교사 소지자의 미취업 요인 － 보육교사 근무환경(근로시간, 원장과의 관계) － 보육교사 처우문제(임금, 복지수준 사회적 인식) － 보육교사 유휴 인력활용 방안

- 면담에 참여한 대상들의 특성은 <표 I-3-10>과 같음.

〈표 I-3-10〉 보육교사 인력활용 심층면담자 특성

사례 번호	연령	자격증 취득연도	자격증종류	취업경력	현재취업상태
1	만35세	2005	1급(유치원 자격증에서 전환)	4년	무직(주부)
2	만32세	2003	1급	5년 6개월	무직(주부)
3	만34세	2004	1급	3년	특별활동강사
4	만33세	2004	1급	10년	무직(주부)
5	만53세	1999	2급(양성과정)	1년 미만	녹즙배달(시간제)
6	만53세	1999	2급(양성과정)	1년 미만	아동도서대여(시간제)
7	만28세	2006	1급	4년	무직(주부)
8	만34세	2001	2급(양성과정)	1년 미만	사무직

마. 전문가 자문회의

- ☐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정책 방향 설정과 정책 대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어린이집 원장, 교사 등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 대안에 반영함.

4. 연구의 범위

- 본 연구는 시간연장보육, 시간제 일시보육 및 토요보육의 다양한 보육서비스와 보육교사 인력활용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 범위는 매우 넓음. 다양한 보육 요구에 따른 보육 서비스와 보육교사 인력활용 방안을 중점적으로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용어 정의가 필요한 단어는 다음과 같음.
- 영유아보육법 상 취약보육은 만3세 미만의 영아, 장애아동, 다문화가족 아동, 시간연장형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 대상의 보육 서비스를 의미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의 취약보육은 야간보육(시간연장보육), 시간제 일시보육 및 토요보육으로 정의함.
 - 시간연장보육은 기준 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야간보육의 일부를 의미함.
 - 시간제 일시보육은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부득이한 경우에 비정적으로 보육을 받는 경우를 의미함.
 - 토요보육은 영유아보육법 상 정규보육에 포함되나 본 연구에서는 토요일에 보육하는 경우로 제한함.

II. 연구의 배경

1. 취약보육의 수요와 요구

- 근로시간의 다양화와 부모들의 다양한 보육 요구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시간제 보육, 야간보육, 토요보육의 필요성과 이용, 그리고 해당 보육의 접근성에 관하여 알아보았음.
-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11년 0-5세 자녀를 둔 부모 2,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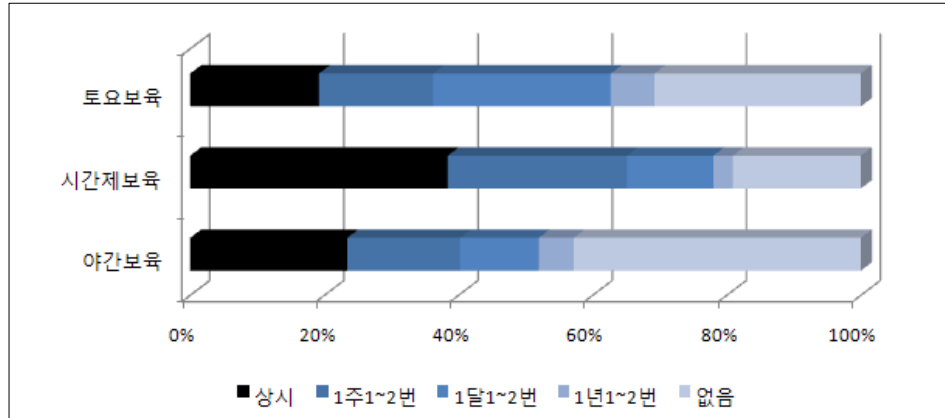
가. 취약보육의 필요성

-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의 취약보육이 상시 필요하다는 비율은 야간보육 23.4%, 시간제보육 38.4%, 토요보육 19.2%임(표 II-1-1 참고).
- 야간보육은 상시 필요하다는 응답과 주 1~2번이 23.4%, 16.8%로 약 40% 정도 되며, 필요없다는 응답은 42.8%에 달함.
 - 시간제보육은 상시가 38.4%로 가장 많고 주 1~2번 26.7%로 전체적으로 65.1%를 차지함.
 - 토요보육은 월 1~2번이 26.5%로 가장 많고, 상시나 주 1~2번은 20% 미만이지만 필요없다는 응답은 30.8%로 1/3이나 됨.

〈표 II-1-1〉 취약보육의 필요성

구분	단위: %(명)					계(수)
	상시	주1~2번	월1~2번	연1~2번	없음	
야간보육	23.4	16.8	11.7	5.2	42.8	100.0(2,003)
시간제보육	38.4	26.7	12.9	2.9	19.1	100.0(2,003)
토요보육	19.2	17.0	26.5	6.5	30.8	100.0(2,003)

자료: 서문희·이윤진·유해미·송신영·김세현(2011). 출산수준 제고를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그림 II-1-1] 취약보육 서비스별 필요성

- 부모 특성별로 취약보육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야간보육의 필요성을 모의 취업여부별로 조사한 결과, 취업 중인 모의 경우 25.9%, 휴직 중인 모는 29.0%로 평균 23.4%보다 높은 비율을 보임. 한편, 미취업인 모가 야간보육이 상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1.9%로, 이는 취업모를 대상으로 하는 취약보육 서비스 정책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임.
 - － 가구소득별로 보면, 300만원 미만인 경우 상시 필요하다는 응답이 24~31% 수준으로 높게 나타남. 이는 저소득층의 야간 근로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됨.
 - 시간제보육은 대도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10% 이상 시간제 보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
 - － 취업 중인 모의 경우는 필요없다는 응답이 22.7%, 미취업모의 경우는 1주 1~2번 필요하다는 응답이 28.8%로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임. 이는 전일제 근무하는 취업 모인 경우, 시간제 보육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되며, 미취업모인 경우에도 시간제 보육이 상시 필요하다는 응답이 37.0%에 달한다는 점은 보육서비스 지원이 보편적 지원이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임.
 - － 가구소득별로는 25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의 경우 시간제보육에 대한 상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저소득층의 시간제

노동 비율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됨.

- 토요보육은 필요없다는 응답이 대도시에 비하여 읍면이나 중소도시에서 더 높음.
- 또한 가구소득별로 차이를 보여 300만원 미만인 경우 상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19.2%보다 높고, 300만원 이상인 경우는 필요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30.8%보다 높게 나타났음.
- 모의 취업 여부 등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즉, 토요보육에 대한 수요는 모의 취업 여부보다는 토요 근무비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됨.

〈표 II-1-2〉 부모 특성별 취약보육 서비스 필요성: 야간보육

단위: %(명)						
구분	상시	1주 1~2번	1달 1~2번	1년 1~2번	없음	전체(수)
전체	23.4	16.8	11.7	5.2	42.8	100.0(2,003)
지역						
대도시	29.4	15.9	10.3	4.2	40.2	100.0(738)
중소도시	18.5	18.8	13.6	5.6	43.4	100.0(850)
읍·면	22.7	14.5	10.4	6.3	46.3	100.0(415)
$\chi^2(df)$			33.7(8)***			
모 취업 여부						
취업중	25.9	20.1	11.5	5.2	37.4	100.0(619)
휴직중	29.0	22.6	9.7	-	38.7	100.0(31)
미취업	21.9	15.2	11.9	5.5	45.6	100.0(1,339)
$\chi^2(df)$			18.6(8)*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31.3	16.7	14.0	4.0	34.0	100.0(150)
150~199만원	28.1	15.2	12.1	3.9	40.7	100.0(231)
200~249만원	24.3	18.7	10.2	6.8	40.0	100.0(412)
250~299만원	23.7	16.9	13.4	5.7	40.3	100.0(350)
300~349만원	22.6	17.7	9.1	3.7	46.9	100.0(350)
350~399만원	20.5	14.1	12.2	5.8	47.4	100.0(156)
400~449만원	12.8	14.9	11.5	5.4	55.4	100.0(148)
450만원 이상	21.2	17.2	13.8	5.9	41.9	100.0(203)
$\chi^2(df)$			-			

자료: 서문희 외(2011), 출산수준 제고를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p < .05$, *** $p < .001$

〈표 II-1-3〉 부모 특성별 취약보육 서비스 필요성: 시간제보육

단위: %(명)						
구분	상시	1주 1~2번	1달 1~2번	1년 1~2번	없음	전체(수)
전체	38.4	26.7	12.9	2.9	19.1	100.0(2,003)
지역						
대도시	45.5	20.7	10.6	2.6	20.6	100.0(738)
중소도시	34.2	31.3	14.2	3.4	16.8	100.0(850)
읍·면	34.5	27.7	14.2	2.7	21.0	100.0(415)
$\chi^2(df)$			41.8(8)***			
모 취업 여부						
취업중	41.2	22.8	10.4	2.9	22.7	100.0(616)
휴직중	41.9	16.1	12.9	-	29.0	100.0(31)
미취업	37.0	28.8	14.2	3.1	17.0	100.0(1,339)
$\chi^2(df)$			23.2(8)**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47.3	32.0	10.7	2.0	8.0	100.0(150)
150~199만원	40.7	29.0	8.2	1.3	20.8	100.0(231)
200~249만원	41.7	27.7	12.6	1.9	16.0	100.0(412)
250~299만원	38.0	25.4	12.3	2.3	22.0	100.0(350)
300~349만원	35.4	25.4	17.1	2.9	19.1	100.0(350)
350~399만원	36.5	18.6	19.9	6.4	18.6	100.0(156)
400~449만원	29.7	29.1	10.8	8.1	22.3	100.0(148)
450만원 이상	36.0	27.1	10.3	2.5	24.1	100.0(202)
$\chi^2(df)$			74.0(28)***			

자료: 서문희 외(2011). 출산수준 제고를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p < .05$, *** $p < .001$

〈표 II-1-4〉 부모 특성별 취약보육 서비스 필요성: 토요보육

단위: %(명)						
구분	상시	1주 1~2번	1달 1~2번	1년 1~2번	없음	전체(수)
전체	19.2	17.0	26.5	6.5	30.8	100.0(2,003)
지역						
대도시	22.9	13.6	28.2	6.1	29.3	100.0(738)
중소도시	16.8	19.1	25.5	7.1	31.5	100.0(850)
읍·면	17.6	18.8	25.5	6.0	32.0	100.0(415)
$\chi^2(df)$			19.2(8)*			
모 취업 여부						
취업중	18.8	18.9	29.6	4.4	28.3	100.0(618)
휴직중	19.4	16.1	25.8	3.2	35.5	100.0(31)
미취업	19.3	16.1	25.1	7.6	31.8	100.0(1,339)
$\chi^2(df)$	-					

(표 II-1-4 계속)

구분	상시	1주 1~2번	1달 1~2번	1년 1~2번	없음	전체(수)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28.7	16.0	30.0	2.7	22.7	100.0(150)
150~199만원	23.8	20.8	27.7	4.3	23.4	100.0(231)
200~249만원	21.1	17.0	25.5	6.8	29.6	100.0(412)
250~299만원	21.1	16.9	28.0	6.3	27.7	100.0(350)
300~349만원	16.0	18.6	25.1	8.9	31.4	100.0(350)
350~399만원	17.3	12.2	30.1	10.3	30.1	100.0(156)
400~449만원	6.8	18.9	23.0	7.4	43.9	100.0(148)
450만원 이상	16.3	13.3	24.1	3.9	42.4	100.0(203)
$\chi^2(df)$			75.7(28) ^{***}			

자료: 서문희 외(2011). 출산수준 제고를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p < .05$, *** $p < .001$

나. 취약보육의 이용

- ☐ 취약보육 서비스 이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야간보육 5.2%, 토요보육 5.8%로 이외의 보육형태는 극히 소수임.
- ☐ 이용 이유로는 야간보육은 직장, 근로상의 이유가 62.7%로 다수이고, 23.5%가 여가 등 기타로 나타났으며, 그 이외는 다른 자녀보호, 가족간호, 경조사 등으로 분산되었음. 토요보육도 취업모 수요가 74.8%로 가장 많고, 이외 경조사는 11.3%, 여가 등은 7.8%이었음.

〈표 II-1-5〉 취약보육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이용 사유

단위: %(명)

구분	이용 여부				이용 사유						
	상시 이용	가끔 이용	이용한 적 없음	계(수)	직장, 근로	다른 자녀 보호	가족 간호	경조사	여가 등 기타	기타	계(수)
야간보육	1.3	3.9	94.8	100.0(1,971)	62.7	6.9	3.9	2.9	23.5	-	100.0(102)
토요보육	1.4	4.4	94.1	100.0(1,971)	74.8	5.2	0.9	11.3	7.8	-	100.0(115)

자료: 서문희 외(2011). 출산수준 제고를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다. 취약보육 이용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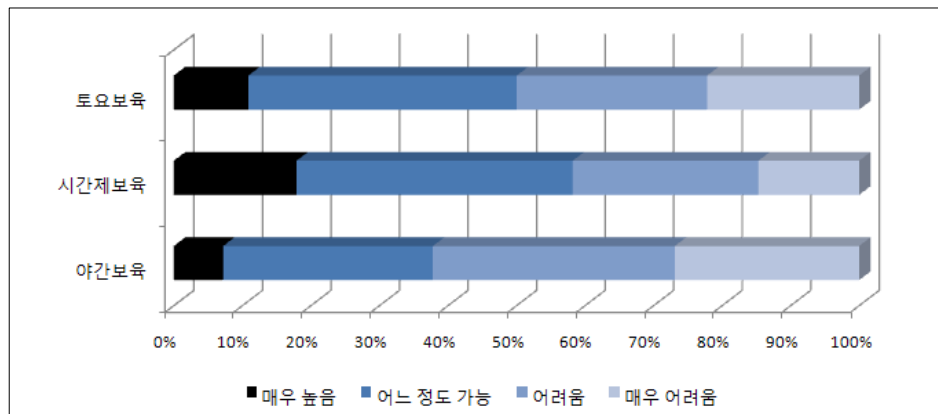
- 취약보육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매우 높다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비율은 시간제보육이 58.2%로 가장 높고, 토요보육이 50.1%이며 야간보육이 37.8%로 시간제보육의 이용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1-6〉 취약보육 서비스별 이용 가능성

단위: %(명)

구분	매우 높음	어느 정도 가능	어려움	매우 어려움	계(수)
야간보육	7.2	30.6	35.3	26.9	100.0(2,003)
시간제보육	17.9	40.3	27.1	14.7	100.0(2,003)
토요보육	10.9	39.2	27.8	22.2	100.0(2,003)

자료: 서문희 외(2011). 출산수준 제고를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그림 II-1-2] 취약보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

- 취약보육 이용 가능성을 4점 척도로 환산하여 산출한 결과, 시간제보육이 2.4점, 야간보육 2.8점, 토요보육 2.6점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 각 서비스별 어린이집 이용 가능성을 지역별로 보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도시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지역에서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음. 읍·면 지역에서는 시간제보육과 함께 토요보육도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고하였음.
- 모의 취업별로는 미취업모가 야간보육을, 취업중인 모가 토요보육 이용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하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음.

- 소득수준별로는 야간보육은 소득수준이 350만원 이상이 그 이하보다 높은 차이를 보였음.

〈표 II-1-7〉 취약보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4점 척도)

구분	야간보육	시간제보육	토요보육	단위: %(명) (수)
전체	2.8	2.4	2.6	(2,003)
지역				
대도시	2.6	2.2	2.5	(738)
중소도시	2.9	2.4	2.7	(850)
읍·면	2.8	2.4	2.4	(415)
F	17.7(2) ^{***}	5.8(2) ^{**}	16.3(2) ^{***}	
모 취업 여부				
취업중	2.7	2.3	2.5	(618)
휴직중	2.7	2.5	2.7	(31)
미취업	2.8	2.3	2.6	(1,339)
F	4.7(2) ^{**}	0.5(2)	4.7(2) [*]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2.6	2.3	2.4	(150)
150~199만원	2.7	2.3	2.6	(231)
200~249만원	2.8	2.3	2.5	(412)
250~299만원	2.7	2.3	2.5	(350)
300~349만원	2.7	2.4	2.5	(350)
350~399만원	2.9	2.4	2.6	(156)
400~449만원	3.0	2.4	2.7	(148)
450만원 이상	2.9	2.4	2.7	(203)
F	2.8(7) ^{**}	0.8(7)	1.9(7)	

자료: 서문희 외(2011). 출산수준 제고를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p < .05$, ** $p < .01$, *** $p < .001$

- 취약보육 서비스의 접근성은 앞서 살펴본 해당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함.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시간제보육의 이용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야간보육의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취약보육의 수요와 해당 서비스 접근성간의 괴리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라. 취약보육 서비스 유형 선호도

- 어린이집 이용 부모들은 취약보육 유형별 서비스 장소로는 어린이집을 가장 선호함(표 II-1-8 참고).
- 야간보육 서비스 제공 장소에 대해서는 응답자 60.7%가 현재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것을 가장 좋다고 응답하였고, 거점형 보육전담 장소에서 돌보는 것은 6.7%로 10% 미만 수준임.
 - 토요보육도 현재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것을 선호하는 응답자가 69.2%로 가장 많지만, 거점형 보육장소는 8.0%가 선택하였음.

〈표 II-1-8〉 취약보육 서비스별 장소 선호도

단위: %(명)

구분	보육도우미가 아이 집에서	보육도우미가 자기 집에서	현재 다니는 어린이집	거점형 전담 장소	계(수)
야간보육	30.3	2.3	60.7	6.7	100.0(2,003)
토요보육	21.1	1.7	69.2	8.0	100.0(2,003)

자료: 서문희 외(2011). 출산수준 제고를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보육서비스별 장소 선호 형태는 야간보육과 토요보육 모두 지역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두 서비스 모두 지역 내 거점형 전담 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는 대도시가 중소도시나 읍·면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반면, 어머니 취업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표 II-1-9, 표 II-1-10 참조)

〈표 II-1-9〉 보육서비스별 선호 형태: 야간보육

단위: %(명)

구분	보육도우미가 아이 집에서	보육도우미가 자기 집에서	현재 다니는 어린이집	지역 내 거점형 전담 보육 장소	계(수)	X ² (df)
전체	30.3	2.3	60.7	6.7	100.0(2,003)	
지역						
대도시	30.6	2.2	63.4	3.8	100.0(738)	18.7(6)**
중소도시	30.8	2.4	57.9	8.9	100.0(850)	
읍·면	28.4	2.7	61.7	7.2	100.0(415)	
모 취업 여부						
취업중	30.4	1.1	61.9	6.6	100.0(619)	-
휴직중	32.3	-	64.5	3.2	100.0(31)	
미취업	30.2	3.0	60.0	6.8	100.0(1,339)	

** $p < .01$

〈표 II-1-10〉 보육서비스별 선호 형태: 토요보육

단위: %(명)

구분	보육도우미가 아이 집에서	보육도우미가 자기 집에서	현재 다니는 어린이집	지역 내 거점형 전담 보육 장소	계(수)	X ² (df)
전체	21.1	1.7	69.2	8.0	100.0(2,003)	
지역						
대도시	24.3	2.0	69.1	4.6	100.0(738)	25.8(6) ***
중소도시	20.1	1.4	67.9	10.6	100.0(850)	
읍·면	17.6	1.7	72.0	8.7	100.0(415)	
모 취업 여부						
취업중	20.0	1.3	70.3	8.4	100.0(619)	-
휴직중	22.6	3.2	67.7	6.5	100.0(31)	
미취업	21.6	1.9	68.7	7.8	100.0(1,339)	

*** $p < .001$

2. 국내·외 연구동향 및 사례

가. 해외 연구 동향 및 사례

1) 야간보육

가) 일본

- 야간보육 사업은 「보육대책추진사업」¹⁾ 중 휴일·야간보육 사업으로 분류되며, 야간에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소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특별 경비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 보호자의 야간근로로 인하여 야간보육에 대한 요구는 높아졌지만, 보육소의 대응은 이에 미치지 못함.

1) 일본 정부는 다양한 보육 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0년 3월에 특별보육 사업 실시 요강을 책정하였으나 사업의 내실화와 종합적인 전개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5년 5월에 「보육대책추진사업 실시 요강」으로 개정하였으며 2007년에도 추가 개정하였음. 「보육대책추진사업」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된 국가 차원의 종합사업임. 본 사업은 일시보육 사업, 특정보육 사업, 휴일·야간보육 사업, 병아(病兒)·병후아(病後兒)보육, 대기아동 해소 촉진 사업, 보육환경 개선 사업 등 6개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Baby Hotel(인가 외 어린이집)에서 사망 사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1981년에 ‘야간보육 사업 실시 요강’을 발표하여 시범사업을 실시, 1995년에는 이를 정규 사업화하여 운영함.
- 전문 야간보육소 운영비에 관한 특별 보육단가가 설정되어 있음.
 - －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공립 보육소 운영비가 국가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 재원화됨. 따라서 보육단가는 사립 보육소에만 적용됨.
 - － 지역, 정원, 원장 배치 여부, 연령(0세, 1-2세, 3세, 4세 이상)에 따라 기본 보육료가 설정되며, 민간시설 급여 개선비, 아동용 채난(採暖)비, 한냉(寒冷) 지역 수당 등이 가산되는 형태임.
 - － 야간 보육소도 보육 단가가 원칙적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 야간보육 실시 보육소는 전국적으로 2008년 77개소로 파악됨(표 II-2-1 참고).

〈표 II-2-1〉 일본의 야간보육 실시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00	2002	2004	2006	2008
전체	46	55	64	69	77
공영(公營)	-	-	-	-	-
민영(民營)	46	55	64	69	77

자료: 全國保育団体連絡會・保育研究所(2000~2010). 保育白書 2000~2010. 東京: ちいさいなかま社.

- － 야간 보육소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총 11시간을 기본 보육시간으로 하고 있으나 전·후 시간에도 연장 보육서비스를 제공함.
 - － 일반 보육소에서도 정원 범위 내에서 야간보육이 가능하며, 야간보육소 이외의 보육소에서도 오후 9시 이후까지 보육서비스를 제공함(保育小辭典編集委員會, 2006).
- 일본 정부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지방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정촌이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야간보육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각 지역의 특색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음. 지방자치 단체별 실시 현황은 다음과 같음.
 - － 가와사키시(川崎市)는 「아이이쿠」라는 민간 인가보육소를 설치하여 야간보육을 제공하고 있음. 보육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이며, 보호자가 야간 동안 아동을 보육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다른 보육소에서 보육이 어려운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함. 보육료는 다른 인가보육소와 같이 가구 세액에 따라 책정되며, 오전 9시~11시에 대해서는 별도로 월 2,500엔의 연장 보육료를 수납함.

- 나고야시(名古屋市)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기본 보육시간으로 하며 이후 3시간 또는 이전 4시간도 연장보육을 실시함. 야간보육은 민간보육소 총 4곳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 내용은 <표 II-2-2>와 같음.
- 교토도시(京都市)는 야간보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내에 7개소(제2 와카바원, 제2 세이신 유아원, 단타마 야간보육원, 六滿어린이집 보육원, 코바토 야간보육원, 미노리원, 富士 야간보육원) 야간보육소 설치하였음. 30명 정원으로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을 기본으로 함. 또한 필요한 경우 오전 9시부터 연장보육 실시, 보육료와 별도로 이용료가 발생함(기초 생활보호 세대 무료, 시정촌민세 비과세 세대 월 1,000엔, 상기 이외의 세대 월 2,500엔의 연장 이용료 지불).

<표 II-2-2> 나고야시의 야간보육소

시설명	인가	정원	보육시간	시설유형	비고
春岡야간보육원	1985. 4	30명	오전 11시~오전 1시	밤 3시간 연장	名京보육원에서 독립
榮야간보육원	1987. 4	30명	오전 11시~오전 1시	밤 3시간 연장	1959년 榮보육원야간부를 창설
衆善會 야간보육원	1986. 4	30명	오전 11시~오전 1시	밤 3시간 연장	
카와라마치 야간보육원	1988. 4	45명	오전 7시~오전 1시	밤 3시간 연장 낮 4시간 연장	

자료: 名古屋市子ども青少年局・子育て家庭部保育企畫室・保育運営課(2010). 名古屋市の保育. 名古屋市: 名古屋市役所, p26.

나) 야간보육 소결

- 일본은 부모의 야간근로로 인하여 야간보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야간보육 사업을 정규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음.
 - 원칙적으로 야간보육료 단가가 책정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운영시간은 오전 11시~오후 10시까지이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전후 시간에 연장보육을 실시함.
 - 일반 보육소도 정원 범위 내에서 야간보육이 가능하며, 오후 9시 이후까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

- 야간보육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야간보육 운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기본 운영시간도 현실적으로 오후 10시까지 운영하고 추가 보육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이후 시간에도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시사함.

2) 일시보육

가) 일본

- 일시보육사업은 「보육대책촉진사업」에 속하는 별도의 사업으로, 가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육이 곤란한 경우나 보호자의 양육스트레스 경감을 위하여 일시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원칙적으로 보호자의 취업 여부와 서비스 이용 사유를 묻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임.
 - 일본의 일시보육의 발달 배경은, 시간제 노동의 증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전업주부의 육체적·심리적 육아스트레스 지원의 필요성 증가, 인구 집중 지역의 어린이집 대기 입소자 해소의 일시적 방안, 소자녀 사회에서 아동의 집단 생활 경험과 친구관계 형성 등을 들 수 있음(장영인·최영신, 2008).
 - 일본 정부는 1999년부터 국고보조 제도를 마련하여 일시보육 사업의 이용 확대를 도모함. 임시·긴급적인 보육과 함께 주 1~3회 정도의 지속적인 노동에 대응하는 보육소 이용도 보조 사업화하였고, 이후 보호자의 육아스트레스 해소 등의 개인적인 이유에 의한 이용도 가능하게 되었음.
 - － 즉, 일시맡음사업은 상시 보육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일시적인 사정 등으로 가정에서 보육이 곤란하게 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함(保育小辭典編集委員會, 2006).
 - 일시보육의 유형은 실시 장소, 이용 목적에 따라 구분됨.
 - － 일시보육은 실시 장소에 따라 보육소에서 실시하는 보육소형, 보육소 이외의 편리성이 높은 장소(지역자녀양육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지역 밀착형, 지역 밀착Ⅱ형 총 3가지로 분류되며, 지역 밀착형과 지역밀착Ⅱ형의 차이는 <표 II-2-3>과 같음.

〈표 II-2-3〉 일시보육의 장소별 유형

구분	내용
지역 밀착형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36조 35 각 호에 따라 다음의 조건을 준수해야 함. 1. 보육소 설비기준에 따라 사업 대상인 영유아의 연령 및 인원수에 따라 필요한 설비(의무실, 조리실 및 옥외 놀이터 제외)를 설치할 것 2. 아동 대 보육사 비율은 영아의 경우 3:1, 만 1세 이상 만 3세 이하 유아는 6:1,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 유아는 20:1, 만 4세 이상 유아는 30:1의 기준을 적용할 것. 전체 보육사 수가 2명 이상 될 것 3. 보육소 보육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보육을 실시할 것 4. 식사 제공 시 가열, 보온 등의 조리 설비를 설치할 것 ※ 지역밀착형은 사회복지법 제 2종 사업복지 사업으로 사업을 개시할 때에는 도도부현의 신고가 필요함.
지역 밀착II형	- 보육사 1명 이상 배치하고, 시정촌에서 실시하는 일정의 연수를 받은 자를 지역 밀착형 조건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 조건 1, 3, 4에 따라 사업을 실시할 것 ※ 지역 밀착II형은 지역 밀착형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사회복지법 제 2종 사회복지사업은 아님(인가와 어린이집으로 신고).

자료: 후생노동성홈페이지 <http://www.mhlw.go.jp/topics/npa/03/06-03.html>에서 2011년 11월 30일에 인출.

- 일시보육 사업은 이용 목적에 따라 비정형(非定型)적 보육, 긴급보육, Refreshment 보육 3가지로 분류됨(표 II-2-4 참조).

〈표 II-2-4〉 일시보육의 이용 목적별 유형

구분	비정형(非定型)적 보육	긴급보육	Refreshment 보육
내용	보호자의 취업, 직업훈련, 취학 등에 의해 가정에서의 지속적인 보육이 곤란하게 된 경우	보호자의 질병, 입원, 관혼상제 등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인해 긴급/일시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경우	육아에 따른 보호자의 신체적, 심리적 부담 해소하기 위해

- 일시보육 실시 보육소는 2008년 7,651개소로 파악됨(표 II-2-5 참고).

〈표 II-2-5〉 일본 일시보육 실시 현황

단위: 개소					
구분	1999	2000	2002	2006	2008
전체	685	1,700	4,178	6,727	7,651
공영(公營)	128	415	1,341	1,938	2,174
민영(民營)	557	1,285	2,837	4,789	5,477

자료: 全國保育団体連絡會・保育研究所(1999~2010). 保育白書 1999~2010. 東京: ちいさいなかま社..

- 요코하마시(横浜市)의 ‘일시보육 사업’은 일시보육 목적에 따라 이용 조건과 대상 아동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나 일시보육 수요가 다양하고, 높은 정령지정(政令指定) 도시(인구 3,692,295명)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의 일시보육이 혼합된 형태로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음(표 II-2-6 참조).

〈표 II-2-6〉 요코하마시 일시보육 유형별 운영 내용

구분	이용 조건	대상아동
비정형(非定型)적 보육 긴급보육	주 3일, 월 120시간 이내 연속 14일 이내	인가보육소(요코하마 보육실, 가정보육복지원, 인정어린이원 보육소 포함)를 이용하고 있지 않는 미취학 아동
Refreshment 보육	1회분(1일)만 신청 가능	

자료: 横浜市 홈페이지, <http://www.city.yokohama.lg.jp/front/welcome.html>. 2011년11월 19일 인출

- 일시보육의 보육시간과 이용 아동 연령은 실시 시설에 따라 다름²⁾.
 - － 일시보육 이용료는 3세 미만 1일 2,400엔, 3세 이상 1일 1,300엔으로 정해져 있음. 이용료는 보호자가 보육소에 직접 지불하며, 이용료 외 식비 등의 실비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
 - － 보육소 이용 신청은 보호자가 일시보육 실시 시설에 직접 신청하며, 보호자와 시설 간의 직접 계약 형태로 이루어짐.

〈표 II-2-7〉 요코하마시 일시보육 유형별 실시 현황

실시내용	비정형적 보육· 긴급보육· Refreshment	비정형적 보육· 긴급보육	비정형적 보육· Refreshment	비정형적 보육· 긴급보육· Refreshment 중 하나
실시 시설수	228개소	7개소	1개소	9개소

자료: 横浜市 홈페이지, <http://www.city.yokohama.lg.jp/front/welcome.html>에서 2011년11월 19일에 인출.

- 인구집중 현상을 보이는 동경 중심의 관동지방은 야간 근로나 자영업 근로 형태가 많음. 이러한 이유로 요코하마시는 2개소(민간보육소)에서 24시간형 긴급

2) 보육소 보육시간은 아동복지시설 최저기준 제34조에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각 지역의 영유아의 보호자의 근로시간과 가정의 상황을 고려하여 보육소의 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일시보육 서비스 제공하고 있음.

- 원칙적으로 3일 이내만 이용 가능하나 개인사정으로 이용 기간이 3일 이상 될 경우 실시 보육소의 상담 필요함.
- 1시간당 이용 요금은 연령과 이용 시간에 따라 다름.

〈표 II-2-8〉 요코하마시 24시간형 긴급 일시보육 이용료

연령	7시-19시	19시-7시	24시간의 상한
0-1세	600엔	700엔	1만엔
2-3세	500엔	600엔	
4세 이상	400엔	500엔	

- 주. 1) 별도로 식사비(1식당 300엔)
 2) 형제가 이용할 경우, 동생 30% 감면
 3) 생활보호세대 등 50% 감면

□ 나고야시(名古屋市)는 1993년부터 일시보육사업을 실시하였음.

- 나고야시도 요코하마시와 같은 정령지정(政令指定) 도시로 비정형적 보육, 긴급 보육 및 Refreshment 보육을 함께 실시하는 보육소가 있음(표 II-2-9 참조).

〈표 II-2-9〉 나고야시 일시보육 이용 아동수: 2009

단위: 명

구분	비정형(非定型)적 보육	긴급보육	Refreshment 보육
이용 아동수	23,524	2,845	5,847

자료: 名古屋市子ども青少年局・子育て家庭部保育企畫室・保育運営課(2010). 名古屋市の保育. 名古屋市: 名古屋市役所. p.28.

- 나고야시의 1일 일시보육 이용료는 전년도 소득 세액에 따라 계층별로 정해짐.

〈표 II-2-10〉 나고야시 일시보육 이용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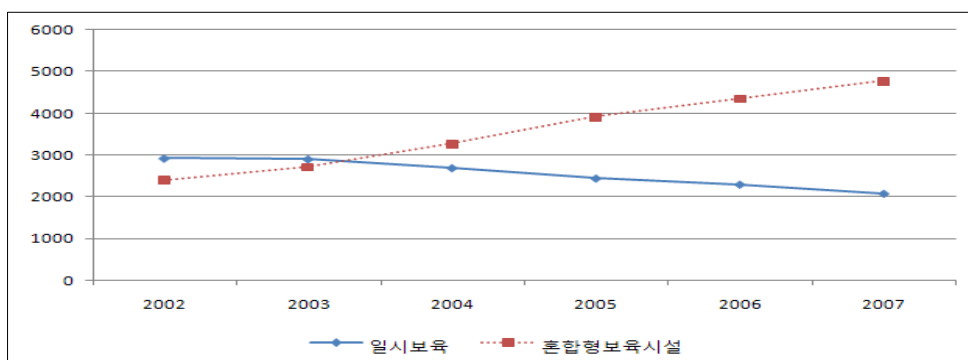
구분	이용시간		
	~ 6 시간	~ 8 시간	8 시간 초과
생활보호세대/시민 세비과세 세대	무료		
소득세 비과세 세대	600엔	800엔	1,000엔
소득세 과세 세대	1,200엔	1,600엔	2,000엔

주: 식음료비 300엔 보호자 부담

자료: 名古屋市子ども青少年局・子育て家庭部保育企畫室・保育運営課(2010). 名古屋市の保育. 名古屋市: 名古屋市役所. p.28.

나) 프랑스

- 프랑스의 영유아 어린이집은 보육 유형에 따라 시설보육(accueil collectif)과 가정보육(accueil familial)으로 구분됨. 이 중 시설보육은 집단 어린이집(crèches collectives), 유치원(jardins d'enfants), 일시보육(haltes-garderies)으로 구분됨(정미라·조희연·안재진, 2009).
- 프랑스의 시간제 보육은 원래 미취업 부모들이 아이를 잠깐 동안 맡기기 위한 곳이 었으나 점차 시간제 노동과 노동시간 유연화 등 고용 형태의 다양화, 유아학교 휴무일 등으로 비전형적인 보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함(장영인·최영신, 2008).
- 프랑스의 경우, 일시보육 어린이집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일시보육과 정규보육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혼합형 어린이집 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정미라 외, 2009).
 - 일시보육(haltes-garderies)은 만 6세 미만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으로, 특히 3세 미만의 영아들에게는 다른 유아와의 만남, 공동 활동을 경험하고 유아 학교를 준비하기 위한 기관임.
 - 최대 수용 인원 60명, 부모협동으로 운영되는 곳의 경우는 20~25명으로 운영됨. 이용시간은 1시간에서 종일반까지 다양하며, 부모가 일하지 않지만 자녀를 몇 시간 동안 맡길 곳을 필요로 할 때 주로 이용하는 기관임.
 - 혼합형 어린이집(établissements multi-accueil)은 만 6세 미만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의 다양한 특성이 혼합된 기관으로 정규보육과 일시보육을 병행함.



출처: 정미라 외(2009). 프랑스의 육아정책.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재구성

[그림 11-2-1] 프랑스 일시보육 기관수 변화

- 프랑스 시간제 보육은 이용시간 유형을 몇 가지로 유형화(일주일 동안 총 12시간, 만나질 3~5회 등)하여 이용 아동 수나 이용 빈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함. 이는 정원 책정이나 인력의 배치에 중요한 기초를 제공함.
 - 이용 대상은 4세 이하 아동이 가장 많으나, 영아(10주 이상)도 그 대상에 포함됨.
 - 보육료는 부모의 소득과 가족 수,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이용시간 별 티켓을 미리 구매하게 함.
 - 프랑스의 일시보육 이용 빈도는 농촌지역보다 대도시가 높고, 특히 파리지역이 높게 나타남. 농어촌 지역처럼 수요가 분산되는 지역에는 별도의 고정시설이 아닌 정기적인 순회 버스를 운행하는 등 순회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함(장영인·최영신, 2008).

다) 일시보육 동향 및 사례 소결

- 오랜 보육 서비스 역사를 지닌 일본과 프랑스에서는 ‘일시보육’이라 통칭하기보다는 그 이용 목적과 장소 등에 따라 또는 운영의 형태에 따라 일시보육 유형이 세분화되어 있음.
 - 일본의 경우는 일시보육을 ‘일시맡음사업’으로 칭하며, 그 이용 목적을 시간제 근로를 위한 비정형적 보육,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일시보육 요구를 위한 긴급보육, 전업 주부의 육아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Refreshment 보육으로 구분하여 일시보육을 이용하려는 수요자의 필요를 구체화함.
 - 또한 일본에서는 일시보육 실시 장소에 따라 보육소형, 지역밀착형, 지역밀착 II형 등으로 구분함. 특히 보육교사 1인이 담당하는 소규모 일시보육이 가능하도록 지역밀착형 II의 경우는 인가 외 어린이집으로 신고하여 운영하도록 하여 시간제 일시보육의 다양한 수요에 접근 가능하도록 배려함.
 - 프랑스에서도 일시보육 전담기관은 haltes-garderies라 칭하여 혼합형 어린이집(établissements multi-accueil)에서 제공되는 일시보육과 구분되어 있음.
- 사회 변화와 가족 구조의 변화에 따라 일시보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일시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 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1999년~2010년 보육백서’에 의하면, 1999년 총 685개소이었던 일시보육시설은 2008년 7,651개소로 10년 사이 12배 가까이 증가함.
 - 프랑스의 일시보육 경향은 일시보육 전담 기관 수는 2002년 3,000개에서 2007년

2,000개로 감소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 혼합형 어린이집의 수는 2,400여개에서 4,900여개로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줌.

- 일시보육의 수요 증가와 다양화되는 일시보육의 필요를 반영하는 다변화된, 융통성 있는 서비스 마련이 요구됨을 시사함.
- 일시보육이 비정형적, 비정기적, 또는 긴급한 필요에 따른 보육이라 간과하기보다는 전업주부의 육아스트레스 경감과 육아지원을 위한 부분까지 포괄하는 일시보육 개념 정립이 필요함을 시사함.

3) 토요보육

가) 일본

- 휴일보육 사업은 「보육대책추진사업」 중 휴일·야간보육 사업에 속하며, 아동복지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일요일·공휴일 등에도 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소를 지정하여 휴일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1999년 휴일보육 사업을 창설하여 「휴일·야간보육사업 실시 요강(2005년 5월 개정)」에 따라 실시되고 있음.
 - － 실시 주체는 시정촌(특별구 포함)이며, 보육소를 경영하는 자에게 위탁 가능.
 - － 아동 대 교사 비율에 맞게 아동 수에 따라 보육사를 2명 이상 배치해야 하며, 간식 또는 급식 제공함.
 - － 실시 장소는 보육소 외에도 「휴일·야간 보육사업 실시요강」 최저 기준 제32조 8호 기준에 적합한 공공시설 유휴 공간 등도 활용 가능함.
 - － 휴일보육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도도부 현의 보조, 지정도시, 중핵도시들이 조성하며, 경비의 일부를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保育小辭典編集委員會, 2006).
- 휴일보육 사업의 전국 실시 현황을 보면, 공영과 민영 모두 증가 추세로 특히, 민영이 큰 폭으로 증가함.

〈표 II-2-11〉 휴일보육 일본 전체 실시 현황

단위: 개소

구분	1999	2000	2004	2006	2008
전체	84	152	618	798	927
공영(公營)	4	13	64	85	99
민영(民營)	80	139	554	713	828

자료: 全國保育団体連絡會・保育研究所(1999~2010). 保育白書 1999~2010. 東京: ちいさいなかも社.

□ 삿포로시(札幌市)와 나고야시(名古屋市)의 토요일보육 실시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삿포로시(札幌市)는 현재 인가보육소를 이용하고 있거나 가정보육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중 보호자의 일요일·공휴일 근무로 휴일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휴일보육 서비스 제공함.
- － 휴일보육 이용 연령은 생후 5개월부터 가능하며, 총 4곳(豊平구, 西구 보육·자녀양육지원센터, 青葉興正보육원, 元町니코니코보육원)에서 휴일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개소 정원은 20명임.
- － 기본 보육시간은 8시부터 19시까지(青葉興正보육원은 9시부터 17시까지)이며, 보호자가 실시 시설에 직접 신청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 － 이용료는 자녀수에 따라 다르며, 이용시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1일 이용료를 지불함(표 II-2-12 참고).

〈표 II-2-12〉 삿포로시의 휴일보육 이용료

이용요금	첫째아	둘째아 이후
이용료	2,500엔	1,200엔
급간식비	300엔	300엔
합계	2,800엔	1,500엔

주: 1) 생활보호세대 및 시민세 비과세 세대의 경우 이용료 무료. 단, 급간식비는 지급.

2) 식물Allergy로 인해 식사를 지참할 경우 식사비 무료

자료: 札幌市 홈페이지. <http://www.city.sapporo.jp/index.html>에서 2011년 11월 19일 인출.

- 나고야시(名古屋市)는 보육소 이용 아동 중 보호자의 일요일·공휴일 근무로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육을 실시함. 단, 일시보육 이용 아동은 이용이 제한됨.
- － 나고야시의 휴일보육은 인가 민간보육소 8곳에서 실시하며, 1개소 정원 10명임.
- － 보육시간은 8시부터 18시까지로, 시설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음.
- － 1일 이용료는 전년도 소득 세액에 따라 계층별로 정해짐.

〈표 II-2-13〉 나고야시 휴일보육 이용료

구분	이용시간		
	~ 6 시간	~ 8 시간	8 시간초과
- 생활보호 세대			
- 시민세 비과세 세대		0 엔	
소득세 비과세 세대	600엔	800엔	1,000엔
소득세 과세 세대	1,200엔	1,600엔	2,000엔

주: 식음료비로 실비 상당액 부담.

자료: 名古屋市子ども青少年局・子育て家庭部保育企画室・保育運営課(2010). 名古屋市の保育. 名古屋市: 名古屋役所. p.38.

나) 유럽

- 유럽 각국의 전형적인 정규 보육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5시, 금요일은 오후 4시 30분까지임. 이는 오전 7시부터 근무를 시작하는 산업계 종사자의 업무 일정 맞춘 것이고, 오후 4시에 끝나는 대부분의 사무종사자 근무시간에 맞춘 것임.
- 보육 서비스는 가격 적정성과 유연성이 높아야 함. 유연성은 보육 서비스 운영시간이 이른 아침, 저녁, 주말 등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저녁이나 주말 등에 일하는 부모는 보육의 유연성에 관심이 큼.
 - 유럽 각국은 영유아 연령이 만 2세 이하일 경우, 여성이나 남성의 시간제 근로를 격려하고 지원함. 육아휴직 후, 집에서 부모가 번갈아가며 돌보거나 밖에서 일하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만 2세 이하 영아가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임.

〈표 II-2-14〉 유럽 각국의 시간 외 보육 서비스 실시 현황

구분	내용
덴마크	저녁이나 밤에 운영하는 어린이집(혹은 유치원) 거의 없음.
프랑스	24시간 보육소(creches) 있음.
스웨덴	약 절반 이상의 어린이집이 저녁 등 비정규 시간에 운영 하고 있음.
핀란드	보육법(the Act on Day Care)에 따라 저녁, 주말 등에도 어린이집 운영. 여름 휴가철에는 어린이집이 거의 운영하지 않음(Platinga & Remery, 2009).
이탈리아	7, 8월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는 편임(Platinga & Remery, 2009).

- 정부가 시간 외 보육서비스에 정책적인 노력을 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시간 외 보육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괴리가 가장 많이 지적됨.
 - 시간 외 보육 서비스 수요자인 부모는 일반적으로 영유아기 자녀를 어린이집에 장시간 동안 맡겨두는 것을 선호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정규 보육시간이 끝나면 친인척이나 친구 등 사적 영역의 지원자가 영유아를 집에 데려와 돌봐 주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Harries, La Valle, & Dickens, 2004; Rutter & Evans, 2011).
 - Singler(2011)가 비정규 시간에 근무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한 결과, 비정규 시간에 근무하는 부모일수록 업무시간의 규칙성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부모는 보육시간의 유연성(flexibility)을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비정규 시간에 근무하는 부모는 기관형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려와서 야간에 집에서 돌봐 주거나 혹은 토요일에는 소규모 센터에서 돌봐주는 등의 연계형 서비스(joint-up care)를 요구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를 위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기관 어린이집과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개인 등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 코디네이터가 영유아별로 맞춤형 연계 보육을 설계해주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함.
- 공급자인 어린이집 운영자는 정규 보육시간이 아닌 야간이나 토요일 등에 영유아를 맡기고자 하는 부모의 근로 일정이 일시적이고 변경이 잦아 현실적으로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맞추어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음(Singler, 2011).

다) 영국

□ 영국의 근로현황 대비 시간 외 보육 서비스 실시 현황은 다음과 같음.

- Singler(2011)에 의해 수행된 「노동력 데이터(The quarterly Labor Force Survey, October to December 2009)」 이차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영유아기 자녀를 키우는 부모 중 정규 근무시간으로 간주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시간대에 근무하는 사람은 17% 뿐이고, 40% 이상의 영유아기 부모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비해 영국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이른 아침, 저녁, 야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매우 드문 실정임.
- 비정규 시간에 근무하는 부모일수록 빈곤층이 많고, 한부모 가족인 경우가 많아 이들의 영유아기 자녀는 빈곤의 문제와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부재라는 이중의 문제를 겪고 있는 현실임.
- 1998년 영국 정부는 「국가보육전략(National Childcare Strategy)」에서 비정규 시간에 근무하는 부모를 위한 보육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에서는 시간 외 보육 서비스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시간 외 보육은 부모의 친인척, 친구 등 사적 영역에서 해결되고 있는 실정임.

□ Statham과 Mooney(2003)는 영국의 보육교직원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보육 업무에 종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보고함.

- 그 이유는, 주로 '주말에 일하는 것이 내 가족에게 불공평하기 때문(77%)'이라고 생각하거나 '내 자신이 주말에 일하고 싶지 않아서(71%)'라고 응답함. '영유아는 주말에 가족과 함께 지낼 필요가 있음'이라는 이유를 제시한 응답자는 37%에 머물렀음.
-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응답으로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도 주말에 일하고 싶지 않다(54%)'고 응답하고 있으며, '높은 보육료를 받을 경우(31%)'나 '정부의 재정지원이 있을 경우(26%)'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응답하고 있음.

라) 미국

- Adams와 Rohacek(2002)은 미국의 보육지원 기금(Childcare Subsidy Fund) 제도 운영 시 지원되는 기금이 건전한 아동발달을 도모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역설함.
 - 보육지원 기금은 '부모의 선택(parental choice)' 기회를 넓힘으로써 부모가 자녀를 위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봄.
 - 특히, 저소득층 부모의 경우 정규 근로시간(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이 아닌 시간대에 일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야간보육이나 토요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에서 양질의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 Statham과 Mooney(2003)는 시간 외 보육, 특히 야간이나 토요일과 같은 주말 보육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유형의 서비스(one size fit all)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함.
 - 시간 외 보육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보육 서비스가 연계된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망을 구축(mix and match universal, integrated services)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 Henly(2008)와 Martinez-Beck(2009)은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업무 일정을 가진 부모나 직업이 일정치 않아 자주 바뀌는 부모, 그리고 초과 업무를 자주 해야 하는 부모는 자녀를 위해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찾아주기가 어렵다고 지적함.
 - 대부분의 기관 어린이집은 정규 보육시간이 일정하며 그 부모들이 일해야 하는 시간은 정규 보육시간 외의 시간대일 경우가 많기 때문임.

- 이 부모들은 일자리가 일정치 않고 자주 바뀌기 때문에 보육료 지원을 받을 때에도 불리할 뿐만 아니라 토요일보육료는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보육료 지원액에서도 정규 보육시간을 이용하는 부모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함.
- 토요일 등 비정규 시간대에 일하는 부모는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찾기 어려운 이유로 어린이집보다는 친인척 등 사적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향이 높음.
 - Johnson(2004)이 SIPP(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4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중 비정규 시간대에 일하는 부모는 근무시간 동안 자녀를 배우자(36%), 조부모(31%), 아이의 형제나 다른 친인척(15%)에게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반대로 일하는 시간동안 사적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 부모가 상대적으로 비정규 시간의 근로를 더 선택하는 경향도 있음(Presser, 1995).
- 미국 일리노이 주의 토요일보육 서비스 현황 및 관련 연구는 아래와 같음.
 - 2004년 미국 일리노이주 13,007개의 어린이집 중 토요일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1,141개소(8%)로 나타남. 대부분의 조사 자료에서 가족의 노동과 보육 서비스를 연구할 때 가족의 근무일정을 자세히 묻고 있지 않아 야간이나 주말보육 수요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Stoll, Alexander & Sugimura, 2006).
 - 일리노이 주 대민 서비스부(Dept. of Human Services)는 2002년 6개 어린이집(기관형 4개소, 가정형 2개소)에 실험적으로 토요일보육 등 시간 외 서비스를 실시하여 운영 상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조사함.
 - 조사결과, 어린이집은 재정 상 시간 외 보육 서비스 희망 영유아를 지속적으로 모집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부모의 근로 일정 불규칙적이며, 특히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부모의 근로 일정이 더 불규칙적임. 부모들은 어린이집의 정규 보육시간 외 시간대에는 가정과 같이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줄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프로젝트 종료 후, 6개 시설 중 1개 시설만 시간 외 보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응답하여 시간 외 보육 서비스 제공이 어린이집 측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Stoll 외(2006)는 어린이집의 토요일보육 서비스 제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공적 섹터와 사적 섹터(기업 등)가 협업해야 함을 강조함. 다른 방법으로는 비정규

시간 근무자가 많은 대기업이 시간 외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봄.

- 토요일 근무 부모가 배우자, 친인척 등 사적 지원체계를 이용하는 경향이 높으므로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미국의 보육관련 연방기금은 크게 두 가지로 CCDF(the federal Child Care Development Fund)와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임.
 - CCDF는 보건복지부(the 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보육국(the Child Care Bureau)이 관할함. 기금 대부분은 13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직접적인 보육료 지원을 위해 사용되며, 일정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이 가능함. CCDF전문가들은 토요보육 등 취약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 기금을 사용하라고 권하고 있음(Szekely, 2004).
 - 지방정부는 TANF 기금의 30%까지 전용시켜 CCDF와 함께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조건은 CCDF 관리를 받는 것임 (Greenberg, 1988).
 - CCDF기금의 사용은 투명하게 정산되어야 하며 다소 까다로움. CCDF기금을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주정부는 기업주, 비영리단체 등과의 공조관계(partnership)를 수립하여야 하는데, 이때 기업주나 비영리단체 등은 소요 재원 일부를 분담하거나 토요보육 등 시간 외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근로자 부모를 지속적으로 연계시키는 등 일정 역할을 담당케 할 수 있음(Szekely, 2004)³⁾.
- 비정규 시간에 일하는 부모와 자녀의 가족생활시간을 조사한 Barnes, Bryson과 Smith의 연구(2006) 결과, 부모는 자녀의 보호를 위해 서로 번갈아가며 토요근무를 신청하거나 조부모 등 친인척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부부가 자녀를 위해 번갈아가며 자녀를 돌보는 것은 자녀의 복지에는 도움이 되지만, 가족 전체가 함께하는 가족생활은 오히려 방해가 됨.
 - 가족마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부부가 번갈아가며 토요근무를 하는 일정을 지양하면서 부모의 취업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부부가 동시에 일

3) 이런 공조관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다음을 참조할 수 있음: The Child Care Partnership Project, a technical assistance project managed by the Finance Project and funded by the Child Care Bureau, at <http://www.nccic.org/ccpartnerships/home.html>.

하는 대신 조부모 등 친인척이나 개인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조부모의 경우 근래 퇴직연령이 늦어지면서 비정규 시간에 일하는 자식을 위해 손자녀를 돌봐주어야 하는 부담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교육, 상담, 비용 등 정책적 지원은 전혀 없는 것은 문제가 됨.

마) 토요보육에 대한 외국 연구보고서의 정책 제언

□ Singler(2011)는 토요보육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노력해야 할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 중앙정부가 해야 할 정책적 노력은 다음과 같음.
 - － 토요보육 서비스를 확충시키기 위해 대기업 등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토요보육 서비스를 설정해내는 코디네이터나 모범사례에 기금을 지원할 것
 - － 토요보육 비용에 대해서는 세제감면이나 바우처 등을 제공하고, 부모들로 하여금 기관형 어린이집에서도 토요보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여 알릴 것. 아울러 저소득층 지역에 토요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늘려나갈 것
 - － 대기업, 특히 비정규 시간 종사자가 많은 기업이 지방 정부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기금을 분담하여 지원하고, 근로자 중 지속적인 토요보육 이용(예정)자 정보를 어린이집 네트워크에 제공하도록 유도할 것. 이를 통해 토요보육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를 충분히 확보하여 안정적인 교사-영유아 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줄 것
 - －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가능한 토요일에 근무하지 말고 평일에 근무하도록 권장하는 등의 근무환경 및 분위기를 바꾸어나갈 것. 마찬가지로 근로자들도 가능한 초과근무나 토요근무를 거절하고 가족과 함께 하고자 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가도록 지원할 것
- 지방정부가 해야 할 정책적 노력은 다음과 같음.
 - － 보육실태조사(Childcare Sufficiency Assessment)를 할 때 정규 보육시간이 아닌 시간대의 보육수요에 대해 설문조사와 더불어 심층면접을 통해 보다 심층적으로 조사할 것. 토요보육이나 야간보육에 대한 수요는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임.
 - － 소규모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간 연계(networks)를 구축할 것. 이들이 토요보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모색할 것
 - － 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와 가정방문 보육 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맞춤형 보육

서비스 구성이 가능하도록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 이를 통해 부모들이 다양한 보육 요구를 충족시키고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

- 24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을 구축하되, 여러 기관 및 단체가 연합하여 질 높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 아침에 영유아를 정규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오후에 하원하는 영유아를 데려다가(혹은 맞이하여) 부모가 올 때까지 돌봐 줄 수 있는 상시 서비스를 우수한 수준으로 제공할 것
- 등록된 아이돌보미(sitter services)가 영유아의 가정을 방문하여 토요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킬 것. 이 비용은 보육료 바우처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것
- 초등학교에서 토요반을 운영할 때, 3-5세 유아반도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시킬 것
- 지역 보육정보센터에 토요보육을 하는 어린이집과 토요보육 서비스를 구하는 부모가 서로 연계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할 것

4) 보육교사 인력활용 방안

- 많은 나라에서 영유아 보육(ECEC,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이에 따라 담당 부처의 선정, 중앙 및 지방차원의 관리 재조정, 관련 정책의 전체 또는 일부 개정, 다양한 관련 서비스와 종사자 및 가정 간의 상호연결 등과 관련하여 여러 과제에 부딪치고 있음.
 - 특히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 및 유지에 핵심적인 보육인력의 통합적 관리 및 활용은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임(Cho & Couse, 2008).

가) 보육인력의 통합적 관리

- 미국의 경우, 시간제·종일제 프로그램, 교육·복지·교육시장의 프로그램, 공립·사립 프로그램, 보육·교육 프로그램 등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보육·교육 서비스를 연방정부 및 주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따라 NAEYC(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에서는 홈페이지에 아동 인력관리 시스템의 발의(Early Childhood Workforce

Systems Initiative)에 관한 내용을 개제함.

- 아동 인력관리 시스템은 헤드스타트, 기관 또는 가정 내 영리/비영리 보육 프로그램, 지역사회 또는 학교 부설의 유아교육 프로그램, 공립유치원 프로그램, 조기중재 및 특수교육, 자문기관, 고등교육기관, 교육·자격관리·건강 및 기타 유아교육 관련 부서 등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분야 종사자들의 통합적인 관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영국에서 Every Child Matters 법에 발맞추어 2005년 설립된 아동 인력개발국(CWDC; The Children's Workforce Development Council)에서는 아동 인력 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 '아동 인력- 앞으로 나아갈 방향(Early Years Workforce- The way Forward)' 보고서를 발표함.

□ 아일랜드의 교육과학부에서도 '보육·교육 종사자 개발(Developing the workforce in the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sector) 보고서'에서 보육·교육 분야의 인력 개발 및 보급 현황, 정부의 지원 및 관련 법 개정 등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음(Minister for Education and Science, 2008).

- 이 중 정의·평등·법 개정부(Department of Justice, Equality and Law reform)에서 발표한 '질 높은 보육과 평생교육: 교육, 훈련 및 전문성개발을 위한 모델개발' 결과를 제시하며 보육·교육인력을 훈련 수준에 따라 초급, 중급, 상급, 고급, 전문가(Basic, Intermediate, Experienced, Advanced, Expert Practitioner) 등의 다섯 집단으로 구분한 뒤 각 집단이 받은 훈련의 수준, 담당할 수 있는 업무 및 책임의 수준을 함께 제시하고 있음.

나) 보육인력의 다양한 활용

□ 미국 NAEYC의 2010 유아교육 분야 종사자 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기준(2010 NAEYC Standards for Initial & Advanced Early Childhood Professional Preparation Programs)에서 유아교육 분야 종사자들이 많은 경우, 관련 학위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을 매우 제한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밝히며 관련 분야를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함.

- 유아교육(Early Childhood educator roles): 유아교육교사, 헤드스타트 교사, 공립학교 준전문 직원 등
- 가족 지원(Home-family support roles): 가정방문, 가정지원, 아동보호서비스, 부모교육 등

- 전문적 지원(Professional support roles): 유아교육 또는 헤드스타트의 행정, 교사교육, 교사 및 프로그램 멘토링, 지역사회·주·국가 차원의 교육지원
- 영국 아동 인력개발국 CWDC(The Children's Workforce Development Council)에서는 관련 분야를 영유아교육, 교육심리, 대리양육, 통합관리, 저소득층 및 다문화 등 취약계층 관리, 안전관리, 사회복지, 가족지원, 장애아동 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직업군을 제시하고 있음.
- 아일랜드의 교육과학부(Minister for Education and Science)에서도 '보육·교육 종사자 개발(Developing the workforce in the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sector) 보고서'에서 보육·교육 관련 분야를 크게 보건, 놀이, 특수교육, 기타로 구분한 뒤 크레쉬(crèche), 어린이집 등의 간호사 및 조무사, 방과 후 활동 및 자유놀이 상황 등에서의 놀이 지도, 교실 특수보조교사, 보충학습 교사, 가정 내 보육 서비스 전달자 등 다양한 직업을 제시함(Minister for Education and Science, 2008).
-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유아교사 훈련을 이수하면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위한 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덴마크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교실 등과 같은 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위한 기관 뿐 아니라 노인 시설과 같은 성인을 위한 시설에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Moss, 2000).
- 스웨덴의 경우, 담당 부처가 통합되면서 만 6~9세 아동들을 위한 종일학교(whole day school)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유아기, 학령기 아동의 교육 및 방과 후 보육교직원들 간의 구분이 흐려지고 있음(Moss, 2003).

다) 관련 이슈

- 보육인력의 부족과 높은 이직률은 많은 나라에서 나타나는 이슈 중 하나임. 미국의 경우 약 10년 전 실시된 전국 조사에서 보육분야 종사자들은 연 30~40%의 높은 이직률을 보인다는 결과가 나타났고, 이후 지속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이직률을 보이고 있음(Whitebook, Howes, & Phillips, 1998, 재인용).
- 보육 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보육교직원들, 특히 교사들의 높은 이직률은 대체로 과도한 업무, 낮은 임금 및 사회적 인식 등 때문임. 뉴질랜드 교육부에서 발표한 한 연구결과에서도 약 43.2%의 교사들이 이직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함(Ministry of Education, New Zealand, 2008).

- 그 이유로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23.3%), 서류업무의 과중함(17.8%), 낮은 임금(15.1%), 직업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13.7%), 기타 원장 또는 동료 교사와의 마찰, 신체적 부담 등을 들었음.
- 미국의 경우 보육교직원들의 임금은 취업여성 평균임금의 1/2에서 2/3 수준인데 반해, 국가 보육지원 수준이 높은 덴마크, 스웨덴, 벨기에에서는 보육교직원들의 임금이 평균 수준 또는 이를 웃도는 수준임(Meyers, 2007).

나. 국내 연구 동향

- 본 연구와 동일한 주제를 독립적으로 다룬 연구는 소수이며,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야간보육

- 야간보육 관련 연구로는 주로 야간보육의 수요조사와 실태파악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추진되었음. 야간보육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교사와 프로그램 변인을 다룬 연구가 많이 이뤄지고 있음.
- 김정희, 이경아, 서화숙과 최현진(2004)의 연구는 장기간 근로를 특징으로 하는 노동 구조, 근로시간의 다양화 등과 같은 우리 사회의 최근 특징들은 주간보육 틀로는 부모들의 다양한 보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필요성을 바탕으로 특수(시간연장형)보육 수요 조사 및 그에 따른 정책 대안을 제시함.
 - 취업모들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육기관의 운영시간이 자신의 근무시간에 비해 부족하며, 기관들의 보육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시간연장형 보육의 확대와 국공립·민간의 우수 어린이집 중심의 지원 정책 강화, 수요층의 성격에 따른 정책 지원 방안을 제안함.
- 조선주, 유희정, 강민정과 오현경(2010)의 연구는 시간연장보육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인하여 실시한 시간연장보육 교사 근무수당 지원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인건비 지원방식의 다양화를 통한 시간연장보육 서비스의 확대 정책을 강조함.
 - 시간연장보육 교사 근무수당 지원 시범사업 결과,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시간연장 어린이집이 확대되어 다양한 보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고, 근무수

당 지원은 교사의 시간연장 근무에 대한 긍정적인 인센티브로 작용하였음. 또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원장 겸 보육교사까지 인정함으로서 가정보육의 시간연장 보육의 질 제고 효과가 있음.

- 한편, 시간당 근무수당 금액이 낮고, 주간 보육교사에 비해 시간연장형 교사의 처우가 열악하며, 대체인력수급의 어려움의 문제점과 같은 운영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단점으로 지적됨.
 -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고 시간연장보육 제도의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기존의 시간연장 인건비 지원사업과 근무수당지원 시범사업의 동시 확대와 장기적으로 지역별 지정기관(거점)의 확대를 제안함.
 - 또한 시간연장 보육매뉴얼을 공무원용, 기관용, 부모용으로 별도로 나누어 제작 및 배포하고 보육정보통합서비스 시스템 개선을 통한 신청·관리 및 원아관리의 효율화를 주장함.
- 김동례, 백영애와 김지영(2010)는 전라남도에 위치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175명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시간연장형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요구도를 살펴봄.
- 시간연장형 보육교사들은 시간연장보육 프로그램의 부족을 업무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꼽았고, 시간연장보육 개선을 위해 교사의 인건비 지원을 희망함.
- 강문희, 김매희, 이경희와 정정옥(2000)은 국내의 야간 및 24시간 보육의 실태 및 요구를 살펴봄. 야간 및 24시간 보육을 필요로 하는 가정의 취약성과 체계적인 보육 프로그램의 부재를 지적하였고, 야간 및 24시간 보육의 질적 제고를 강조함.
- 서원경과 최석란(2005)은 야간보육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야간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 부족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인한 야간보육의 질적 수준 저하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보육교사와 영아의 애착증진을 위한 야간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분석함.
- 야간보육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연령이 점점 하향화되는 추세와 더불어 장시간 부모와 떨어져 기관에서 지내게 되는 상황에서, 야간보육 이용 영유아에게 적합한 야간보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시사함.

2) 일시보육

- 일시보육에 대한 관련 연구는 장영인과 최영신(2008)의 연구가 유일함. 이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사회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그 중 우리 사회에서 그 보육수요에 비해 보육 서비스의 지원이 부족한 시간제 보육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연구임.
- 국내의 일시보육 제공기관 종사자 3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이용자 특성, 이용현황과 문제점, 운영상의 문제점을 확인함.
- 시간제 보육의 활성화방안으로 다음의 여섯 가지를 제언함.
 - － 첫째, 이용률에 영향 미치는 요인이 입지여건 및 접근성, 보육료임을 강조하며 주거 밀집지역에 시간제 보육설치가 요구됨.
 - － 둘째, 시간제 보육의 수요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순회시간제 보육을 제언함.
 - － 셋째,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도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 넷째, 시간제 보육료의 현실화와 보육료 부담의 형평성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하였음.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적자운영을 지원할 방안 검토가 필요함.
 - － 다섯째, 현실을 고려한 시간제 보육 관련 정부지침이 구체화 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 － 여섯째, 한국의 시간제 보육의 특성을 담은 시간제 보육 개념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3) 보육교사 인력활용 방안

가) 보육교사 현황 및 역할

- 이미화, 장명림, 신나리, 김문정과 김현철(2006)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의 보육교사의 수요 규모와 공급 규모를 검토하였음.
- 교사 수급 전망은 연평균 '수요변동규모'와 퇴직률을 이용한 '추가 수요규모'를 산출한 후, 두 수치의 합을 공급 규모와 비교함으로써 수급의 적절성을 판단함. 연구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20년도까지 총 수요규모의 추이를 볼 때 보육교사 자격증 배출자수는 연평균 총수요 규모의 약 2.9배~3.3배에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었음(이미화 외, 2006).
- 김은설 외(2009)의 연구에서도 2009년 실시된 보육실태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육수요 및 교사 공급 예측치를 계산함. 이에 따르면 연간 약 1만 5천~2만 8천 명 정도의 보육교사 자격자가 초과 공급되는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이 초과인원에 대해 불필요한 잉여 인원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음(김은설 외, 2009). 보육교사 자격자가 100% 보육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며, 특히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은 만성적인 교사 부족에 시달리기 때문임.
- 한편, 보육교사는 보육 현장에서 다양하고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보육교사의 역할을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누어 정리함.
 - － 첫째, 보육교사는 어린 영유아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교사’임. 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교수활동을 계획하는 일, 계획된 수업에 기초하여 교육과정을 수행하는 일, 학급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일, 아동 개개인의 특성을 알고 관찰하여 기록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상호작용함으로써 효과적인 교수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 주로 관찰과 기록을 통해 영유아가 바람직한 행동을 체험하여 발달시키도록 하는 일 등 교육과정 설계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
 - － 둘째, 보육교사는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들을 돌보는 ‘대리양육자’임. 보육교사는 일반 전문직이나 교직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역할 특성을 가짐.
 - － 셋째, 보육교사는 부모와의 지속적인 면담과 상호교류를 통해 아이들의 생활과 성장을 알려주는 ‘상담자’이며, 개별 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양육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부모교육자’임.
 - － 넷째, 보육교사는 모든 아동의 보편적 보육 욕구에 부응하는 ‘사회복지 실천가’임. 보육교사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음.
 - － 다섯째,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해 부모 및 지역사회 환경과 지속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상호 협력하는 ‘교류자’임.
 - － 여섯째, 보육 서비스 전문가임과 동시에 교사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피고용된 ‘근로자’임.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사회복지 종사자로서 국가에서 부여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교원자격령과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원이 아님.

나) 보육교사의 전문성 관련 요인

- 보육교사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육교사는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함. 보육의 양적 팽창에 이어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선행연구들은 보육

서비스에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보육교사 요인을 지적하고 있음.

- 이미화 외(2006)는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관련된 요인을 양성교육과정, 자격기준, 수요와 공급, 재교육 과정, 근무 여건의 측면에서 설명함.
 - 첫째, 양성 교육과정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단계로써, 전문적 태도,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는 사전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 과정임.
 - 둘째, 교육적 훈련을 통해 습득한 전문적 태도, 지식 및 기술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단계가 필수적임.
 - 셋째, 교사의 공급 과잉은 급여 수준의 저하, 잦은 이직, 경력 교사 부재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교사의 전문성 유지 및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넷째, 승급교육 및 다양한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워크숍 등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익히며 정보를 교환하는 등 지속적으로 재교육에 참여할 때 교사의 전문성이 신장될 뿐 아니라 교육과 보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음.
 - 다섯째, 직업의 특성상 요구되는 전문가적인 태도와 행동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근무 여건에 있다고 할 수 있음.

다) 보육교사 근무만족도 및 이직 의도와 개선 방안

- 실제 보육의 현실은 보육교사가 교사로서 요구되는 다각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그 전문성을 확보하기에 부족함이 많음. 최윤경과 김재원(2011)은 보육교직원의 급여 및 비급여 근무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통해 보육교사가 '인식'한 급여와 근무환경에의 수준을 알아보았음.
 -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은 가운데, 만족도가 높은 문항은 고용계약서 작성 및 임금협의과정, 고용계약서(대로의) 이행,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적립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약 30%이상의 만족도를 보임.
 - 반면, 만족도가 낮은 문항은 현재 급여수준과 임금체계, 초과 근무수당, 각종 지원액 지급과 같은 금전적 요건과, 휴가사용, 근무시간 및 업무량과 같은 근무여건에 대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30%이상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실시된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는 하루 평균 9.5시간을 일하고

126만원의 월평균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남(유희정 외, 2009).

- 2009년 법정 최저임금이 시간당 4,000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육교사는 최저 임금 수준의 열악한 보수를 받고 있다 할 수 있음. 이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님. OECD 국가들의 경우에도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훈련기회가 부족하고, 최소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이러한 열악한 처우는 보육교사의 잦은 이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음. 2009년 조사 대상 어린이집의 평균 보육 교사 수는 4.2명이고, 한 해 동안 이직한 교사 수는 2.1명임. 이 중에는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매년 약 절반가량의 보육교사가 이직을 하고 있는 셈이라 볼 수 있음.
 - 영국의 경우 2004년 기준으로 보육교사의 평균 연봉은 7,831파운드로 초등학교 교사 평균 연봉인 22,662파운드의 3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미국의 경우에도 2003년 기준으로 보육교사의 평균 연봉은 16,980달러로 25,020달러를 받는 환경 미화원의 68% 수준임.
- 윤경준과 지경빈(2011)은 어린이집의 구조적 특성 및 근무환경에 초점을 두어 31개 서울형 어린이집 보육교사 178명을 대상으로 이직 의도를 분석함.
- 분석결과, 보육교사의 이직 의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66.3%)을 보였으며, 보육교사의 전공 그리고 근무시간이나 급여와 같은 처우가 보육교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으로 드러남.
 - 정책적 시사점으로 다음의 세 가지가 제안됨.
 - － 첫째, 보육교사 처우는 현재보다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보수지급체계의 불합리성이 극복되어야 하고,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간 격차가 완화되어야 함.
 - － 둘째, 어린이집의 공영화 노력이 확대되어야 함.
 - － 셋째, 중장기적으로 보육체계는 일원화되어야 함. 단계적 접근을 취하되 보호와 교육이 하나의 틀 속에서 관리되는 보육체계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이숙희(2009)는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은 보육교사의 근무의욕에 영향을 미치고, 낮은 근무환경에 의한 낮은 근무의욕은 보육교사의 이직과 함께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게 됨을 지적함.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보육교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보육으로의 우수한 인력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봄.

- 보육에 우수한 인력이 유인하기 어려운 이유는 과도한 노동시간과 절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 보육교사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과 자기 계발 기회 부족 등이 있음.
 -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단축 또는 연장 근무시간에 대한 방안으로 초과근무에 대한 비용의 지급, 연장보육담당 보육교사의 확보, 보육교사의 휴가기간 세이브제도(초가근무기간만큼 휴가 기간을 사용할 수 있고,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하여 지급), 행정운영 및 시설 관리를 위한 보조 인력을 보육교직원에게 포함시키기 등이 있음.
- 서문희와 최혜선(2010)은 보육교사의 근무 시간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즉, 보육교사 8시간 근로 준수가 필요하다는 것임.
- 장기적으로는 보육교사는 8시간 근무하고, 이후 종일제 보육교사를 별도로 투입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봄. 교사 근무시간은 아이들과의 활동과 다음날을 위한 준비시간 비율이 6:4로 배분되어야 함.
 - 보육시간 체계를 이원화하여 영유아의 연령, 부모의 취업유무에 따라 미취업모 자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3시까지 보육하고 종일제는 취업모 등 장시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만 적용하여 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어린 이집이나 아동 입장에서 모두 바람직하다고 제안함.
- 김정신과 노은호(2006)는 보육교사 자격 제도에 있어서 세분화하고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함. 이에 대하여 외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함.
- 미국의 경우, 보육교사 자격증은 주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보육대상 연령별로 구분되어 있고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도 있음.
 - 스웨덴의 경우에는 보육관련 종사자가 아동양호교사(child attendant), 유아교사(preschool teacher), 레크레이션지도사(recreation instructor), 가정탁아모(childminder)의 4가지로 구분됨.
 - 프랑스의 경우는 원장, 육아전문가, 준육아전문가 및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즉, 스웨덴, 프랑스에서 가정탁아모(childminder)나 준육아전문가 등에 대한 자격과 지위를 별도로 정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업무의 전문화를 위한 보육교사 등급 간의 고유 업무와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이를 통해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다양한 보육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함.

라) 보육교사 인력 관리 및 활용의 필요성

- 다양하게 지적되고 있는 보육의 현실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일부 과잉 공급되고 있는 보육교사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됨.
 - 그러나 이러한 방안에 대한 선행 연구나 검토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음. 대부분 개선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도임.
 - 일부 연구들에서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인력들을 교사 보조 인력, 가정 보육교사 등으로 활용할 방안들이 제안되었음.
- 김명순(2010)은 보육교사교육원을 졸업한 후 3급 자격취득의 경우, 학력을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봄. 즉, 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전공을 한 경우 보육교사교육원 1년의 교사 준비 과정을 거쳐서 3급을 취득하도록 할 수 있음.
 - 이때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에는 3급과 분리하여 ‘보조교사자격’ 신설(유치원의 준교사 자격처럼), 이들이 3급 또는 2급으로 승급하기 위해 경력 뿐 아니라 학사나 전문학사의 학력 취득이 동시에 이루어진 후에 승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이러한 경우, 일부 저학력의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전문성을 향상 도모, 동시에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도 도움이 됨.
- 이옥(2007)은 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인력 수급 관리제도의 필요성을 제안함.
 - 교사들이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 제공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대체교사, 청소 및 취사부 등에 대한 배치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봄.
 - 또한, 지원 인력에 대하여 원활한 수급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함을 제안함. 지원 인력의 활용을 통한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 교사가 교육·보육 업무 충실할 수 있도록 하여 영유아가 받는 질 높은 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보장함. 또한 새로운 사회적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됨.
- 가정 내 보육지원에 대한 제도화 방안을 연구한 백선희(2008)는 보육의 다양성 측면을 고려할 때, 가정 보육은 또 하나의 보완적인 보육형태가 될 수 있음. 특히 기관 보육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보육지형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0~1세 아 자녀 양육과 시간제 보육이 필요한 취업 여성, 그리고 저소득층의 일과 가정 양립의 문제 해결을 위해 가정 보육은 필요함.
 - 가정보육 제도를 사용하는 부모들에 대한 보육비용 지원 및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교사입장에서 본다면 적절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기 위한 자격과정과 훈련과정이 체계화되어 있어야 할 것임.

- 임양미 외(2009)는 경기도의 출산 및 육아시기의 취업여성을 위한 양육지원책인 「가정보육교사제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보육 사업 개선 방안을 제시함.
 - 우선, 가정보육교사 제도에 대해서는 이용 부모의 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보육 서비스 이용 가정이 점차 증가함으로써 사업 초기에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음. 그러나 교사의 공급이 부족하며 신청 가정에 대한 교사 연계율이 낮은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미취업 보육교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가정보육교사로의 취업 의사가 있는 대상을 선별하여 가정보육교사로 연계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한편, 보육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보육종사자 전반에 걸친 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함. 이에 대해 정효정(2005)은 보육정보센터를 통하여 정보 및 교육제공, 상담 및 프로그램 지원, 인력뱅크 및 DB구축 등의 업무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제안함.
 - 보육인력 정보시스템과 인력풀 운영으로 특수영유아 지도교사, 출산교사 대체인력, 간호사, 영양사, 사무인력, 사회복지사, 상담사 등 보육현장의 필요 인력에 대한 수급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임. 관리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보육교사 유희 인력의 파악과 수급 조절, 질 관리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관리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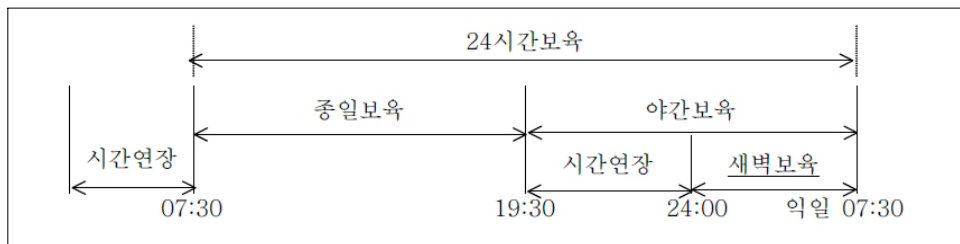
Ⅲ. 야간보육(시간연장보육)

- 어린이집 운영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하루 12시간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 다양화로 인하여 야간보육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간연장보육, 야간보육, 24시간 보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 본 장에서는 야간보육 유형 중 시간연장보육의 문제점을 분석,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시간연장보육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1. 시간연장보육 제도

가. 시간연장 어린이집의 정의

- 시간연장보육이란 기준 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것을 말하며, 시간연장 어린이집이란 기준 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기관을 말함.



[그림 III-1-1] 시간연장보육 개념도

나. 시간연장보육의 법적 근거

- 시간연장 어린이집은 해당기관의 주간보육 아동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간에 다른 어린이집 등을 이용한 경우에도 가능함.

- 또한 원칙적으로 별도의 교사를 두어야 하며, 시간연장보육 교사 근무수당을 지원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보육교사 겸임 가능한 경우에 한함)이나 보육교사가 시간연장반 교사 겸임 가능함.
- 국공립 및 정부지원 비영리법인 기관의 경우 부모의 취업 등으로 1명 이상이 보육시간 연장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시간연장보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함.

1) 지원대상

-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원대상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기관으로, 배정된 수량 범위 내에서 지원기준 및 지원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기관을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함.
- 국공립, 법인, 직장어린이집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하는 기관을 우선 지정하고, 평가인증을 통과한 기관과 시간연장보육을 희망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우선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2) 지원조건

- 시간연장 어린이집은 다음 사항 ① 어린이집 보육교사 전원이 4대 보험에 가입, ② 시도지사가 고시한 보육료 상한선 준수, ③ 총 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 준수를 모두 충족하면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3) 지원기준

- 시간연장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은 월급여 지원 시간연장반과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으로 구분하여 지원함. 각 지원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건비를 지원함.

가) 월급여 지원 시간연장반

(1) 인건비

- 시간연장보육 교사 인건비는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정부지원기관과 직장어린이집은 시간연장보육 교사 월 지급액의 80% 지원하고, 민간어린이집은 시간연장보육 교사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함.
- 단, 주간 보육교사가 초과근무 형태로 시간연장보육을 실시할 경우 시간연장 교

사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음.

〈표 III-1-1〉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

기관유형	지원 내용
① 정부지원기관	- 시간연장보육 교사 월 지급액의 80% 지원
② 직장어린이집	- 시간연장보육 교사 월 지급액의 80% 지원 - 정부지원기관 인건비 지원 체계에 따라 호봉을 책정한 경우에 한하고, 그 외 기관은 민간기관에 준해 지원
③ 민간어린이집	- 시간연장보육 교사 1인당 100만원 지원

(2) 아동 수

- ☐ 시간연장교사 인건비는 시작시간(19시 30분) 이후 시간연장보육 아동을 2명 이상 보육할 경우에만 지원함. 단, 국공립 등 정부 인건비 지원 비영리법인 및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 지원 기관은 보육아동 1명 이상이면 지원함.
- 원장이나 대표자가 자신의 자녀(또는 손자, 외손자)를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보육을 실시하는 경우 인건비 산정을 위한 아동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시간연장보육 아동이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함.

(3) 보육시간

- ☐ 해당 시간연장반 전체 아동 시간연장보육 시간 총 합이 월 20시간 이상일 경우 인건비를 지원함. 단, 보육아동 귀가를 위한 통근차량 이동시간은 제외함.

(4) 지원 교사 수

- ☐ 어린이집 정원 범위 내에서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함.
- 시간연장보육 인건비 지원은 시간연장반을 우선 편성하고, 나머지 아동으로 시간연장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건비를 추가 지원함.

(5) 교사 대 아동 비율

- ☐ 시간연장보육의 교사 대 아동비율은 1:5를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0세아는 보육교사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유아로만 편성된 경우 1:7까지 조정할 수 있음. 반면, 시간연장 미지정 기관의 경우 기관 당 5명을 초과할 수 있음.

(6) 근무시간

- 시간연장 교사의 근무시간은 총 8시간 이내(최소 6시간 이상 근무)로 조기출근이 가능하며, 기관별 특성에 따라 준비 및 정리 등을 포함.
 - 시간연장보육 전후 시간을 적절히 조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음. 단, 19:30~21:30 동안은 반드시 근무하는 것이 원칙임.

나)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

(1) 인건비

- 주간 보육교사(보육교사 겸임 가능한 원장 포함)가 초과근무 형태로 시간연장보육을 실시한 경우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를 채용한 경우 시간연장반 별로 월 30만원을 지원함.
 -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의 경우, 동일 시간연장반을 여러 명의 보육교사가 요일을 달리하여 시간연장보육을 실시할 수 있음.
 - 단시간 시간연장반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경력(자격·호봉)이 인정되지 않으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기타 종사자'로 등록함.

(2) 아동 수

- 시작시간(19:30) 이후 시간연장보육 아동을 2명 이상 보육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함. 단, 국공립 등 정부인건비 지원 비영리법인 및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 기금지원기관은 보육아동 1명 이상을 보육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함.
 - 원장, 대표자가 자신의 자녀(또는 손자, 외손자)를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보육하는 경우 인건비 산정을 위한 아동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시간연장보육 아동이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함.

(3) 보육시간

- 해당 시간연장반 전체 아동 시간연장보육 시간 총 합이 월 20시간 이상일 경우 인건비를 지원함. 단, 보육아동 귀가를 위한 통근차량 이동시간은 제외함.

(4) 인건비 지원 교사 수

- 어린이집 정원 범위 내에서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함.
 - 시간연장보육 인건비 지원은 시간연장반을 우선 편성하고, 나머지 아동으로 시간

연장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건비 추가 지원함.

(5) 교사 대 아동 비율

- ☐ 시간연장보육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1:5를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0세아는 보육 교사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유아로만 편성된 경우 1:7까지 조정할 수 있음. 그러나 시간연장 미지정기관의 경우 기관 당 5명을 초과할 수 없음.

(6) 근무시간

- ☐ 시간연장보육 교사의 시간연장보육 근무시간은 최소 1일 2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시간연장보육 일수 동안 19:30~21:30 동안은 반드시 근무하는 것이 원칙임.

4) 정원관리 및 운영기준

- ☐ 시간연장 어린이집은 주로 야간에 아동을 보육하는 기관으로, 주간 보육아동 정원을 채웠을 경우에도 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새로 책정할 수 있음.
 - 주간(19:30 이전)에 이미 최소 4시간 이상 보육할 경우에는 주간 보육정원에 포함되므로, 주간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함.
 - 주간에 이어서 19:30 이후까지 보육할 경우 19:30부터는 시간연장보육 정원으로 간주함.
 - － 기관 내 여유 공간과 시간연장보육 교사가 있을 경우, 이용자 부모의 사정(야간근로 등)에 따라 시간연장보육 기준시간(19:30) 이전에도 보육은 가능하나 시간연장보육료 기산은 19:30부터 시작함.
- ☐ 주간 보육정원이 미충족 되었을 경우 15:30 이전에 등원하여 최소 4시간 이상 보육한 아동은 주간 아동으로 보아 주간 보육정원에 포함시킬 수 있음.
 - 주간 보육정원이 채워졌을 경우 원칙적으로 19:30 이전에는 시간연장보육 아동을 입소시킬 수 있으나, 조기 귀가 아동이 있고, 시간연장보육 교사가 근무할 경우에는 19:30 이전에도 정원 외로 시간연장 아동 보육이 가능함. 단, 주간 보육료 수납 또는 지원이 불가함.

5) 보육료

- ☐ 시간연장(19:30~24:00)보육료는 시간 당 2,700원, 장애아동은 3,700원(연령에 관계 없이 동일)을 지원하며, 매월 60시간을 지원하고 있음.

- 소득하위 70%에 대한 시간연장보육료 지원 단가는 2,700원이며, 162,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율은 기준액×100%로 산정함.
- 시간연장보육 이용 아동을 포함하여 어린이집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귀가하는 아동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1일 1,000원 한도 내에서 석식비를 받을 수 있음.

〈표 III-1-2〉 시간연장보육료 지원단가

구분	지원단가	지원한도액	지원율
소득하위 70%	2,700원	162,000원	기준액×100%

2. 시간연장보육 현황 및 문제점

가. 시간연장보육 현황

- 2010년 보육통계에 따르면(2010.12월 현재), 전체 어린이집 38,021개소 중 시간연장 어린이집은 6,535개소로 약 17.2%를 차지함.
- 전체 기관 중 가정어린이집이 2,840개(41.6%)로 가장 많고, 민간개인이 2,207개(33.8%)로 가정과 민간개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함. 반면 국공립어린이집은 909개로 13.9%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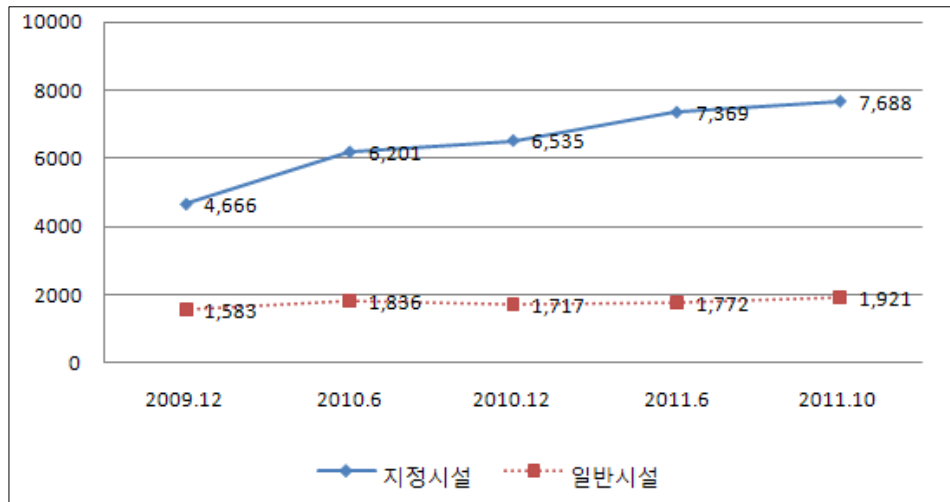
〈표 III-2-1〉 시간연장보육 운영 기관수: 2010년

단위: 개소

총계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법인의외	민간개인			
6,535	909	345	175	2,207	2,840	1	58

자료: 보건복지부(2010). 2010 보육통계, 서울: 보건복지부.

- 최근 3년 간의 시간연장보육 운영 어린이집 추이를 살펴보면, 시간연장 지정 어린이집은 2009년 12월 4,666개에서 2010년 6월 6,201개로 대폭 증가함. 이는 2010년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시간연장 인건비 지원사업과 시간연장보육 교사 근무수당 지원 시범사업으로 일시 증가한 것으로 해석됨. 2010년 12월 6,535개, 2011년 10월 7,688개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자료: 보건복지부(2009, 2010). 2009, 2010 보육통계, 서울: 보건복지부.
2011년 통계.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그림 III-2-1] 연도별 시간연장 어린이집(2009~2011)

□ 2010년 시간연장보육 정원은 총 307,334명이나 이용 아동은 총 31,371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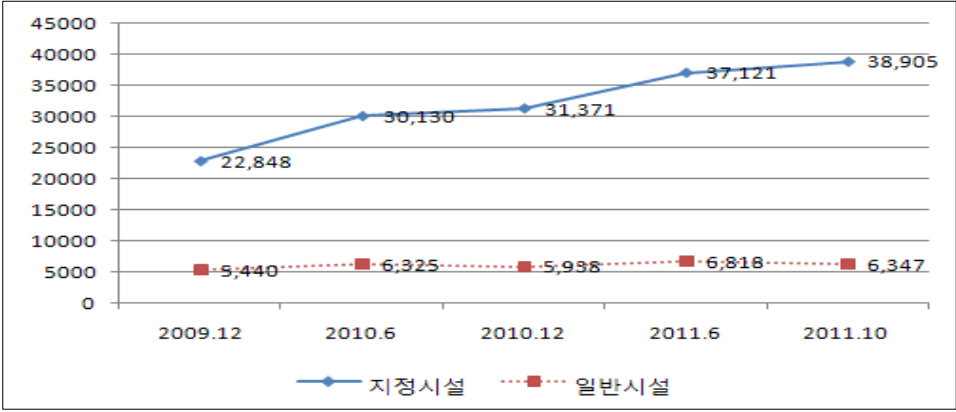
<표 III-2-2> 기관유형별 시간연장보육 아동수: 2010년

단위: 명, %

구분	총계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법인 외	민간개인			
아동정원	307,334	73,603	33,603	13,626	130,157	50,784	73	5,488
아동현원	31,371	4,208	1,633	976	12,672	11,684	5	193

자료: 보건복지부(2010). 2010 보육통계, 서울: 보건복지부.

- 기관별 정원은 민간개인이 130,157명으로 가장 많고,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개인의 절반 수준인 73,608명, 가정어린이집 50,784명 정도임. 현원 수도 민간개인이 가장 많으며 국공립어린이집보다는 가정어린이집이 더 많음.
 - 즉, 이용률을 산출하면, 민간개인이 40.4%로 가장 높고, 가정 37.2%, 국공립 13.4% 순이며, 이외의 기관은 10% 미만 수준임.
- [그림 III-2-2]와 같이, 최근 3년간 시간연장보육 이용 아동수는 2009년 28,288명에서 2010년 36,455명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2011년 10월 현재 4만 5천여명에 달함.



[그림 III-2-2] 연도별 시간연장보육 이용 아동수

- 2009년 보육실태조사의 아동 연령별 시간연장보육 이용 비율에 관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만 2세가 19.5%로 가장 많고, 만 3세, 4세, 1세 모두 10%대이지만, 만 0세 영아 이용률은 10% 미만임. 만 2세 이하 영아가 만 3~5세 유아보다 이용 비율이 높음.

<표 III-2-3> 연령별 시간연장보육 이용 비율

단위: %(명)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계
전체	7.8	15.2	19.5	18.3	16.1	3.7	100.0(4,997)
전체	7.8	15.3	19.8	18.0	15.9	3.7	100.0(3,997)
취업형태	기관유형						
	국공립	3.0	9.4	18.1	20.9	21.5	23.6 100.0(724)
	법인	4.2	10.6	19.2	25.0	18.8	20.4 100.0(452)
	민간/법인외/부모협동	5.0	12.1	18.8	19.6	21.3	18.3 100.0(1,232)
	가정	25.3	31.4	23.3	9.7	5.5	3.4 100.0(782)
	직장	1.4	12.7	19.6	24.6	21.4	15.0 100.0(805)
규모	규모						
	20명 이하	24.5	31.6	23.8	8.8	6.1	3.9 100.0(822)
	21~39명	5.7	18.0	20.2	21.0	17.0	14.6 100.0(704)
	40~79명	3.6	10.6	20.0	21.8	23.3	18.4 100.0(1,039)
	80명이상	2.3	8.1	17.1	23.3	21.4	21.6 100.0(1,432)

(표 III-2-3 계속)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계
전체	7.8	15.2	19.5	18.3	16.1	3.7	100.0(4,997)
전체	3.5	13.7	17.0	22.8	21.0	3.8	100.0(1,000)
기관유형							
비취업모							
국공립	1.4	11.4	21.4	14.3	24.3	24.3	100.0(70)
법인	3.8	11.3	15.1	15.1	22.6	24.5	100.0(53)
민간/법인외/부모협동	2.3	13.1	15.8	27.3	19.6	17.7	100.0(260)
가정	21.9	34.4	21.9	9.4	9.4	3.1	100.0(32)
직장	-	8.1	16.2	29.7	32.4	13.5	100.0(37)

주 1) 응답내용은 200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함.

2) 시간연장보육은 2009년 4월 기준임.

자료: 서문희 외(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가구조사 보고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 취업모의 경우, 전체 비율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냄.

— 기관유형별로는 만 0~2세는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는데 반해, 만 3~5세는 가정어린이집보다 국공립, 법인, 민간,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이 약 20% 수준에 달함.

— 기관규모별로 보면, 만 0세와 만 1세는 20명 이하의 소규모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만 2세는 모든 규모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며, 만 3~5세는 소규모 어린이집보다는 20명 이상 규모의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취업모의 경우, 만 3세가 22.8%로 가장 높고, 다음이 만 4세 21.0%, 만 2세 17.0%, 만 1세 13.7%, 만 5세 3.8%로 취업모보다 높은 연령의 아동이 시간연장보육을 이용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기관유형별로 보면, 만 0세와 1세는 가정어린이집이 가장 높고, 국공립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낮음. 만 2세는 가정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높음. 만 3세는 민간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높고, 만4~5세는 국공립, 법인, 직장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기관유형별 시간연장보육 교사수를 보면, 2010년 시간연장 교사는 총 4,675명으로 가정어린이집이 1,857명으로 가장 많음. 다음으로 민간개인 1,830명, 국공립 610명 순임.

〈표 III-2-4〉 기관유형별 시간연장보육 교사수 : 2010년

단위: 개소

총계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법인의외	민간개인			
4,675	610	212	106	1,830	1,857	1	59

나. 현행 시간연장보육의 문제

- 시간연장보육 관련 제도와 실태, 선행연구들의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 현행 시간연장보육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1) 시간연장보육 이용 신청절차에 대한 지침 부재

- 현행 시간연장보육 운영 지침은 신청양식이나 신청절차, 신청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없어서 기관마다 아동명, 이용날짜, 이용시간 등으로 구성된 양식을 개별적으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음. 또한 신청기간도 일주일 또는 월 단위로 기관마다 달리 운영하고 있음.
- 즉, 형식적인 신청절차 부재로 이용 부모들의 시간연장보육 이용 신청이나 취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며, 신청기간 동안 신청 아동이 시간연장보육을 이용하는 경우는 매우 적음. 따라서 정작 긴급한 사정으로 시간연장이 필요한 부모가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이는 어린이집이 시간연장보육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인 동시에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림. 또한 비이용 아동이 이용 아동으로 허위 보고될 소지가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함.

어머님들이 오늘 갑자기 전화해서 ‘선생님 저희 아이 야간 연장 할게요’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해요. (원장 1)

저희는 1주일마다 신청을 받아요. 주로 출입구에 신청서를 가져다 놓는데 필요한 엄마들이 알아서 적고 있어요. 당연히 선착순이죠. 그래서 매일 아이를 데리고 오는 엄마들이나 이용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며 시간연장 못해요. (원장 5)

- 규격화된 신청양식 및 신청절차, 신청기간 등에 대한 신청시스템을 마련하여 시간연장보육 운영의 편의성 및 효율성을 개선해 나가야 하며, 이를 통해 시간연장보육 이용 부모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함.

2) 시간연장보육 시간의 적절성 문제

- 시간연장보육은 기준 보육시간(07:30~19:30)이 끝나는 19시 30분부터 24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이 시간연장보육을 이용할 경우 소속기관의 하원시간과 시간연장보육 시작시간 간에 차이가 있어 정작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시간에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 <표 III-2-5>와 같이, 어린이집 이용시간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하원시각이 오후 3시에서 4시, 4시에서 5시 사이가 가장 많고, 이용 영유아 80~90%정도가 6시 이전에 하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서문희 외, 2011; 서문희 외, 2009).
 - 유치원 이용 아동의 하원시각은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가 31.7%로 가장 많고, 5시 이전에 하원하는 아동이 80% 이상을 차지함.
 -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부모 취업 여부가 반영되기는 하지만 대체로 어린이집 등·하원 차량 순회시간에 따라서도 아동의 하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서문희 외(2011)의 연구에서 하원차량이 대체로 오후 2시~5시 사이가 70% 이상을 차지함. 즉, 5시 이전에 대부분의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하원하고 있음.
 - 따라서 인근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타 어린이집의 시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 시작시간까지 약 1시간~2시간 정도의 시간 차가 있어 아동이 집이나 거리에서 방치될 소지가 많음.

아이가 이전 기관에서 시간연장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통학차량에서 계속 있다가 마지막 시간에 내리거든요. (중략) 시간연장 시간을 5시 반, 아니면 5시부터 해 줘야만 아이가 이전 기관에서 끝나는 대로 봐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하면 유치원도 시간연장을 만들어야죠. 그 아이가 이전 기관에서 다른 아이 집에 가는 거 다 보고 나서, “너는 다른 기관으로 가야 돼.” 라고 했을 때 그 아이 마음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원장 2)

여기 어린이집에 6세반이 없어서 올해 졸업해요, 이제 유치원을 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유치원은 워낙 시간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일을 그만둘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중략) 그래서 직장을 쉬고 제가 데리고 있으면서 유치원을 보낼까 생각하고 있어요. (부모 2)

〈표 III-2-5〉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영유아의 하원시각

단위: %(명)

시각	어린이집		유치원
	연구 1	연구 2	연구 3
14:00까지	4.4	3.6	15.2
14:01~15:00	18.1	15.7	31.7
15:01~16:00	21.8	17.1	26.0
16:01~17:00	26.2	22.4	10.9
17:01~17:30	5.5	11.9	5.0
17:31~18:00	12.5	10.8	5.1
18:01~19:00	8.2	13.1	5.4
19:01 이후	3.3	5.4	0.7
계(수)	100.0(1,020)	100.0(1,342)	100.0(611)

자료: 연구1,3) 서문희 외(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2) 서문희·양미선(2011). 보육시설 이용시간 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우리 아이는 유치원에서 6시에 끝나고 시간연장은 7시부터 해요. 제가 장사를 해서 유치원에서 오면 집에 혼자 있다가 제가 여기(어린이집)로 데려다 줘요...(중략) 7시에 시작하는 거 좀 늦은 거 같아요. 제가 집에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데리고 가는데 여기에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밖에 못 있잖아요. 가끔 귀찮아서 못 보낼 때도 있어요. 여기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부모 1)

□ 시간연장보육 지침에 따르면, 주간 보육정원이 충족되었을 경우에는 19시 30분 이전에 시간연장보육 아동을 입소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조기 귀가 아동이 있고, 시간연장보육 교사가 근무할 경우에는 19시 30분 이전에도 정원 외로 시간연장 아동을 보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시간연장보육료 기산은 19시 30분부터이고,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문제가 있어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시간연장보육 운영을 기피하게 됨.

유치원 차량 내려와서 아이를 여기서 보면 저희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5시 이전에는 아이들을 못 오게 하는 것도 생겨야 될 거 같아요. (원장 1)

○ 앞서 살펴본 문제들로, 하원시간이 이른 아동들이 보육 서비스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시간연장 시작시간을 조정하거나 보육정원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운영 지침 개선이 요구됨.

3) 영유아 혼합연령반 운영에 따른 보육의 질 저하

□ 연령을 세분화하여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시간연장보육의 교

사 대 아동 비율은 1:5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장애아나 0세아가 포함될 경우에는 일부 달리 적용하며, 유아로만 편성될 경우에는 1:7까지 조정 가능하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음.

- 만 1, 2세 영아는 유아(만 3~5세)와 발달 상의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교사 대 아동 비율 원칙에서 특히 고려되어야 할 대상임.
- 영아의 경우 운동기능이 미숙하고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유아보다 교사의 관심과 주의를 더 필요로 함. 또한 유아는 운동능력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활동량이 많아져서 영아들을 밀치거나 때리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큼.
- 김명순 외(2009)의 연구에서도 발달 수준차가 크기 때문에 만 0, 1세, 만 2, 3세 혼합연령반 구성에 대하여 원장, 교사, 부모 모두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음.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큰 아이들이 좁으니까 답답해해요. 있고 싶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애기들하고도 섞여 있으니까, 애기들은 철이 없잖아요 그럼 와서 건드리면 한 대 툭 때리고 밀고, 그러면 어린 아이들은 머리가 무거우니까 확 쓰러져서 안전사고도 나고.... (원장 4)

가장 사고가 많은 아이가 만 1세예요. (중략) 다른 형이나 누나들이 연필 같은 거로 공부하고 있으면 뺏고. 어린 아이들이 오전에는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중략) 연필도 가져보는 경험도 없고... 가위질도 위험한 상황인데 꼭 누나 형들이 하면, 하고 싶어 해서 사고가 나요. (시간연장보육 교사 1)

- 또한 영유아간 발달차가 크므로 보육교사가 영유아의 발달수준에 적합한 보육활동을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시간연장반 프로그램에 맞춰서 하는데 이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돼버린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영아가 갑자기 막 울면 애를 봐야 돼서 나머지 나이 많은 아이들까지 판이 깨져버리고.... (원장 2)

선생님 혼자 계시기 때문에 영아 아이들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중략) 한 아이 기저귀 갈 동안 거의 프로그램은 운영이 된다고 볼 수 없고요, 가지고는 있어요, 하라고는 되어 있잖아요.(원장 1)

월간·주간계획서는 다 만들어 두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용 원아의 연령이 너무 다양해서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주간보육은 등·하원시간이 고정되어 있지만 야간에는 등하원 지도도 수업 중간마다 해야 해서 집중도 안 되고, 혼합연령이라 어려움이 많아요. (원장 4)

선생님 혼자 계시다 보니까 거의 보육을 위주로 하는 거 같아요. 그냥 TV 틀어주거나 그러는데..., 사람(교사)이 좀 더 있으면 좋겠어요. (부모 4)

- ☐ 시간연장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교사 대 아동 비율 기준 조정이 필요함. 특히, 만 1, 2세가 만 3~5세와 혼합반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혼합반 구성 기준과 혼합반 구성 시 낮은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지침이 마련되어야 함.

4) 시간연장보육 특성을 반영한 보육 프로그램의 부재

- ☐ 보육활동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야간보육 특성에 적합한 보육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함.
 - 현재, 시간연장보육 운영 어린이집 중 대부분의 기관이 주간 보육 프로그램과 별도의 시간연장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못함. 주로 부모의 요구가 동기가 되어 시간연장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종이접기, DVD시청, 학습지 지도 등을 실시하거나 주간 프로그램 연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음.

프로그램은 솔직히 방과 후에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선생님 재량으로 알아서 하고 있어서 그런데 좀 더 프로그램을 해 주면 좋겠어요. 독후활동 같은 거로요. (부모 4)

봐달라고 원하면 집에서 쓰는 학습지나 집에서 가져오라고 그래요 우리는... (원장 5)

(복지부에서 만든 야간 프로그램은)맞지 않아요.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요. (원장 4)

- 즉, 시간연장보육의 일과와 이용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한 보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시급함.

프로그램은 공부, 학습이 아니고 그냥 뭘 만든다든지 미술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그러던데)..., 그런데 아이들 재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더 좋을 거 같아요. (부모 3)

5) 시간연장보육 교사 채용 및 채용 후 지속적인 근무의 어려움

- ☐ 심층면담에서 원장들은 시간연장보육 교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보육교사들이 야간 근무, 낮은 임금 등의 이유로 시간연장 근무를 꺼려하며, 근무하더라도 근무기간이 주간 교사보다 짧음.

(시간연장)교사 급여가 주간교사 만큼만 된다 하더라도 관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중략)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문 닫고 가면 내 교사 아니에요. 내일 나와야 그 교사가 내 교사지. (원장 2)

시간연장형 교사는 밤에 혼자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외로움이 있어요. 근무여건상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평균적으로 1년 반 미만으로 근무하는 거 같아요. (원장 7)

시간연장 급여에 대한 부분도 1.5배는 아니더라도... 근무시간이라도 좀 줄여주었으면 좋겠어요. 만약 0.5로 되면 주간만 선생님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 같아요. (원장 6)

- 시간연장 교사 수급이 어렵다 보니 40대 이상의 기혼자, 1급 교사보다는 보육교사교육원을 통해 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3급 교사가 주로 근무하고 있음. 개인차가 있겠지만, 보육활동을 계획, 운영, 평가 하는 등의 보육 업무를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음.

시간연장 교사는 특이한 환경/배경의 지원자만 몰리니까 기관에서 쉽게 채용하기 어려워요. 그렇다고 안 뽑을 수도 없으니까. 주간교사들은 절대 로테이션 하지 않으려고 해요. 아마 야간반을 하느니 차라리 그만두려고 할 거예요. (원장 7)

- 보육의 질은 교사의 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시간연장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교사 인건비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하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특히, 도시 일부 지역과 농어촌 지역은 퇴근 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제한되어 있어 시간연장보육 교사 채용이 더 어려운 것으로 조사됨.

- 2009 보육실태조사에서도 대도시, 중소도시보다 읍면지역에서 시간연장보육 교사 채용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경우가 '없다'는 비율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야간보육교사 채용이 어려운 이유로 '지역이나 기관 특성상 구직자가 없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희망 보수가 높아서', '자격소지자를 찾기 어려워' 등의 순이었음. '지역 및 기관 특성상 구직자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법인어린이집과 읍면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음.

저희 선생님은 10시 반에 퇴근을 하세요. 10시 반에 아이들 놀았던 거 거실 청소 조금 하시면 11시가 되더라고요. 그럼 11시에 가실 때 저희는 마을버스를 타고 올라가는 곳이거든요. 버스가 끊겨요. 택시 타시더라고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적어도 우리 야간 교사 교통비 지원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원장 1)

여기는 촌이라 도시보다 교사 구하기가 더 어려워요. 주간교사도 구하기 어려운데 시간연장 교사는 어떨겠어요. 밤에는 교통편도 없어서 차가 없으면 시간연장 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원장 8)

- ☐ 시간연장보육 운영의 수월성 측면에서 시간연장보육 교사 인력 풀을 마련하여 시간연장보육 교사 채용에 도움을 주어야 함.

6) 교사의 처우문제

- ☐ 시간연장 교사의 근무시간이 개선되어야 함. 시간연장 교사는 시간연장보육 전후 시간을 적절히 조정하여 총 8시간 내에서 근무하며, 19시 30분에서 21시 30분 동안은 반드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대부분의 시간연장 교사들은 오후 2~3시 사이에 조기 출근하여 주로 보육일지, 보육계획안을 작성, 저녁 급식을 준비하는 등의 보육 업무를 담당함. 그러나 시간연장 전까지는 어린이집에서 특별히 담당하는 업무가 없어서 자체적으로 잔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주 40시간 근무를 지켜야 하는데, 야간보육의 기준점이 7시 반부터여서 문제가 많아요. 실제 야간교사가 2,3시에 출근해도 그 시간에는 주간교사가 모두 있으니까 특별히 담당할 업무가 없어요. 그렇다고 야간반 교사들이 7시 반에 출근하게 되면(8시간 근무 이후) 너무 늦게 퇴근할 수도 없고, 늦게 퇴근하면 더 힘들어하기도 해요. 야간반 교사가 8시간을 지켜 근무하는 게 솔직히 어려워요. (원장 5)

- ☐ 시간연장보육은 지자체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취사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시간연장보육 교사가 직접 저녁 급식 준비, 배식, 급식 지도, 설거지까지 모든 일을 담당하고 있음. 즉, 보육교사가 보육 업무 이외의 업무가 많아 교사로서의 직무만족도를 떨어뜨리며, 이는 이직의 원인으로 작용함.

저희가 2시부터 나오거든요. 빨리 나오면 2시, 좀 늦게 나오면 3시거든요. 애들 낮잠 잘 시간 이후로... 그러니까 이 교사는 그 시간에 블록정리나 잔일을 해요. 설거지하고 간식 먹이고... (중략) 시간연장 교사의 자긍심이 떨어지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난 뭐지? 내가 정말 보육교사 맞아?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 같더라고요. (원장 2)

- ☐ 시간연장보육 운영 지침에 따르면, 시간연장보육 교사는 보육 아동이 없어도 22시까지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기준이 마련되어 있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보육아동 조기 귀가 시 보육교사도 조기 퇴근할 수 있는 근무시간 예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함.

-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의 경우, 2010년부터 주간 보육교사에게 1일 2시간 근무, 1만 2천원을 근무수당으로 월 30만원을 지원함. 그러나 연장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의 이유로 주간 보육교사가 시간연장 근무를 기피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이는 보육 서비스의 질을 낮출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시간 40시간제 도입과 역행하는 제도라고 판단됨.

시간연장비를 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교사가 8시간 근무를 함에도 지쳐있는데 야간까지 하고, 그 다음날 또 근무를 한다라는 건 질적으로 좋다고 볼 수 없어요. (원장 1)

저희는 주간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시간연장 근무하다가 다들 힘들다고 그만둔다고 해서 나이 많은 선생님 한 분이 근무하는 걸로 바꿨어요. (원장 2)

- 시간연장보육 교사가 교육 및 개인적인 사유로 근무가 불가피할 경우 대체교사가 지원되어야 함. 그러나 주간보육과 달리 시간연장보육은 야간근무라는 특성으로 대체교사 수급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시간연장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시간연장 대체교사 인력풀 마련이 시급함.

야간 선생님께서 자제분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대체 교사를 구해야 되는데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원장 1)

이 선생님(시간연장 교사)이 승급을 해야 되는데 야간 교사를 죽어도 못 구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 제가 야간에 해서 그냥 불법을 좀 하면 안 됩니까? 제가 그냥 볼게요. 오전에는 대체가 구해지니까 오전에 제 거를 하시라고 하시고... 이렇게 막 하소연을 한 적도 있어요. 결국 그 선생님 승급 못 하셨어요. (원장 1)

7) 시간연장보육 교사 교육의 필요성

- 시간연장보육 교사는 주간 교사와는 다른 역할 수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연장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시간연장보육 교사 직무연수가 필요함.
 - 특히, 시간연장보육은 혼합반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영유아의 연령에 따른 발달적 특성과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함. 또한 시간연장 교사 1인 체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위급상황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보육교사의 대처능력을 필요로 함.
 - 즉, 야간보육과 관련한 체계적인 보육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교사의 질 때문에 시간 연장 기관에 있는 교사들은 따로 세미나라든지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후에 있는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을 거고...
(원장 8)

8) 운영의 어려움

□ 월급여 지원 시간연장반의 경우, 시작시간(19시 30분) 이후 시간연장보육 아동이 2명 이상이고, 해당 시간연장반 전체 아동의 시간연장보육 시간 총 합이 월 20시간 이상인 경우 인건비가 지원됨.

- 국공립어린이집 80%, 민간·가정어린이집 월 10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교사 인건비 지급 시 4대 보험, 경력에 따른 호봉 인정으로 인한 인건비 초과분이 발생하여 이를 어린이집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음.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 받는다고 해도 사실 4대 보험을 포함하기 때문에 보조 받는 비용을 넘어서요. (원장 2)

-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이 민간·가정어린이집보다 인건비 지원액이 적어 운영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조사됨. 이러한 이유로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시간연장보육 운영을 기피함.
- 따라서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액을 민간·가정어린이집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이 공보육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또한 원장 심층면담 결과, 시간연장보육 교사 인건비가 지원되어도 시간연장보육에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료, 냉난방비, 방범서비스 이용비 등 기본 운영비 추가 지출이 발생하여 어린이집 재정 운영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조사됨.

일단 애들도 없는데 계속 불을 다 키고 있는 거예요. 난방비가 한 달에 10만원이 더 들면 일 년이면 100만원이 넘잖아요. (원장 5)

운영비가 지금 1.5배 이거든요, 야간이기 때문에...(중략) 그리고 식단대로 제대로 한다면 비용이 일단은 소량을 한다 하더라도 조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양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계산하게 되면 적어도 월 30, 40만원 이상은 들어간단 말이지요. 들어가게 되면 거기다가 전기하고 난방료, 그런 기타 부대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사실 진짜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안하는 거예요. (원장 2)

□ 시간연장보육을 운영하는 가정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의 한 달 평균 운영비

수입·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표 III-2-6>은 서울시 ○○구에 위치한 가정어린이집의 10월 한 달 시간연장보육 운영에 대한 수입·지출내역서로, 시간연장 이용 아동 11명, 1개월 총 보육시간 371시간을 기준으로 수입·지출액을 산출한 것임.
- － 시간연장보육 교사 인건비 지원과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으로 1,386,260원을 지원받고 있고, 보육료 월 889,373원(11명 기준)과 석식비 90,000원(5명 기준)을 받고 있어 총수입은 2,365,633원임.
- － 이에 반해 지출은 경력인정에 따른 호봉과 퇴직적립금으로 599,850원이 추가 지출되며, 근무수당 교사 인건비와 조리사 수당 35만원이 지출됨. 석식비로 1,000원을 수납하고 있으나 간식비 추가 지출이 발생하여 저녁 급식비로 347,000원이 지출됨. 이 외에도 전기가스/난방/상하수도, 교재교구비 등의 약 20만원 가량의 추가 지출이 발생함.
- － 즉, ○○가정어린이집은 시간연장보육을 운영하기 위하여 매달 13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됨.

〈표 III-2-6〉 ○○가정어린이집 10월 시간연장반 수입·지출내역서

단위: 원

수입		지출	
내역	수입액	내역	지출액
시간연장 교사 지원	1,000,000	교사 급여(3호봉)	1,476,790
서울형 지원	386,260	퇴직적립금	123,060
		시간연장근무수당	200,000
		조리사 수당	150,000
계	1,386,260	계	1,949,850
보육료지원-유아(5명)	448,100	석식-아동: 12*1,300원(간식300원)	321,000
영아반 보육료(6명)	441,273	석식-교사: 1,300원*20일	26,000
계	889,373	계	347,000
석식비(20일 기준, 5명)	90,000	전기·가스/난방/상하수도	100,000
계		계	100,000
식비 면제 7명	0	교재교구비·수용비	100,000
계		계	100,000
총액	2,365,633	총액	2,496,850

- <표 III-2-7>은 서울시 ○○구에 위치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시간연장보육 운영비 수입·지출내역서로, 이용 아동은 총 11명이며 10월 총 시간연장보육 시간은 235

시간임.

- 시간연장보육 교사 인건비 3호봉 80%와 4대 보험과 퇴직금을 지원받고 있고, 보육료 월 634,500원(월평균 235시간)과 석식비 150,000원(5명 기준)을 받아 총 수입이 2,128,287원임.
- 이에 반해 지출은 교사인건비 지원금에 경력인정에 따른 호봉과 퇴직적립금 405,900원이 추가 지출되며, 근무수당 교사 인건비와 조리사 수당 30만원이 지출됨. 저녁 급식비 190,000원과 전기가스/난방/상하수도, 교재교구비 등의 약 20만원 가량의 추가 지출이 발생함.
- ○○국공립어린이집은 시간연장보육을 운영하기 위하여 매달 약 12만원의 운영비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됨.

〈표 III-2-7〉 ○○국공립어린이집 10월 시간연장반 수입·지출내역서

단위: 원

수 입		지 출	
내역	수입액	내역	지출액
급여(3호봉 80%지원)	1,146,080	교사 급여(3호봉)	1,432,600
4대보험	102,200	퇴직금	119,380
퇴직금	95,507	시간연장근무수당	200,000
		조리사 수당	100,000
계	1,343,787	계	1,851,980
시간연장보육료		석식-아동: 1,000원	
2,700원*235시간(월평균)	634,500	아동 간식 : 500원(1500*5*20)	150,000
	634,500	교사 석식	40,000
계		계	190,000
석식비		전기·가스/난방/상하수도	100,000
1인 1,500원*5명*20일	150,000	계	
계	150,000	교재비 및 수용비	100,000
		계	
총액	2,128,287	총액	2,241,980

- 두 기관의 수입·지출내역서를 종합해 보면, 시간연장보육 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출이 한 달 평균 12~13만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교재비 및 수용비, 간식비 등이 과다 산정된 점을 감안한다면, 기관에서 주장하는 운영비 부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봄.

- 각 기관에서는 정원 기준에 따라 저녁급식을 마련하고 있으나 시간연장보육 수요가 매일 일정하지 않아 음식이 남는 경우가 많음. 이는 어린이집 재정운영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조리한 음식은 해당 일에 폐기하도록 관리지침이 마련되어 있어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하고 있음.

시간 연장 보육이 두 명이 있든 세 명이 있든 양이 많으니까 낭비라는 거죠. 저 원장님처럼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식단을 맞춰서 배달을 해 주시든지 해야지 정말 많이 낭비가 되고, 이게 불필요해져서 다 버리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조리된 음식을 선생들이 싸 갖고 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원장 4)

- 한편, 연령별 급식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특히 영영아의 경우 저녁급식으로 분유나 이유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석식비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급간식 기준에 맞추려고 하니까 어린 연령들만 받는 어린이집들은 원장들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중략) 어린 연령이 있어서 이유식, 분유만 먹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매달 기준에 따라 급간식비를 써야 해서 어린 아이들은 다른 기준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통상적으로 몇 명 기준에서 1인당 2700원. 그러니까 0세도 2700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0세 2,700원 이렇게 하지 말고 0세는 분유를 우리가 제공해 갖고 급간식에 포함을 시켜 주든지 해야 될 거 같아요. (원장 3)

- 시간연장보육 이용 아동을 포함하여 어린이집에서 저녁급식을 먹고 귀가하는 아동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1일 1,000원 한도 내에서 석식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부모들이 주간보육처럼 시간연장보육료에 석식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석식비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즉, 시간연장보육료에 석식비를 포함시켜 시간연장 어린이집의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

엄마들이 (급식비는) 안 내죠, 당연히 밥 주는 걸로 알고 있죠. 2,700원 시간연장비에 밥은 당연히... (원장 2)

9) 시간연장보육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 문제

-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은 시간연장보육료도 자동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부모들이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특히, 시간연장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 중에는 저녁만 먹고 하원하는 아동이 있거나, 부모가 집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동을 어린이집에 장시간 맡기는 사례가 늘고 있음.

부모 중에 100% 지원받는 아이가 있는데, 그 집 아이가 셋 있거든요. 엄마가 힘들다고 큰 아이를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시간연장을 해요. 장난감이 집보다 훨씬 좋으니깐 마음껏 놓고 오라는 거죠. 밤에는 애들도 없으니깐 다 자기 차지잖아요. (원장 5)

시간 연장이 필요한 부모, 근로... 같은 취약한 부모님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아이를 맡겨 놓고 쇼핑을 가시더라고요. (원장 1)

- 현재 시간연장보육 대상이 취업모 등 시간연장을 필요로 하는 부모를 위한 정책이지만, 정작 시간연장을 필요로 하는 부모보다는 일시 보육형태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향후 시간연장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게 시간연장보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지금 시간 연장을 타 기관에서 안하는 이유가 아마 그거일 거예요. 직장도 안 다니면서 엄마들이 플레이 타임에 맡기지도 않고 장 보러 가면서 맡기고, 술 마시러 가면서 맡기고, 12월 되면요 진짜 많아요, 연말 모임에 가느라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원장 2)

시간 연장이 필요한 부모, 근로... 같은 취약한 부모님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아이를 맡겨 놓고 쇼핑을 가시더라고요. (원장 1)

오히려 맞벌이 엄마들은 어머니 지금 애가 아파요. ‘오늘은 시간 연장 못하겠으니 오셔야겠습니다’ 하면 엄마들이 부리나케 오세요. 반차를 내거나 아니면 그만둔다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맞벌이 아닌 엄마들이 계시죠. 오히려 그런 분들이 멀리 놀러가서 못 와요. 상황이 그래요. 지금. (원장 2)

10) 부모 대상의 시간연장보육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

- 부모들은 시간연장보육에 대한 인지 수준이 낮은 편임. 특히, 지원대상이나 신청 방법, 이용시간, 보육료 및 석식비 등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부모들이 시간연장보육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발행하는 리플릿이나 안내 책자 등의 홍보가 이루어져야 함.
- 특히, 자녀가 한 달 동안 이용한 시간연장보육료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 보육료 지원 아동과 일반 아동 부모 모두 동일한 반응을 보임. 따라서 매주 또는 매월 시간연장보육 시간과 보육료가 적힌 시간연장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규정이나 지침이 없다보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필요할 때 아무 때나 그렇게 연락해서 ‘오늘 자리 비나요? 봐주시겠어요?’ 이러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지침을 만들면 좋겠어요. (원장 1)

시간연장비로 얼마 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 급식비도 내요. 예전에 이렇게 써서 주셨는데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어요. (부모 4)

11) 시간연장보육료 지원 이용시간 조정

- 소득하위 70%에 대하여 시간연장보육료를 매월 60시간(162,000원)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하는 시간연장보육 시간은 이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됨.
- 조선휘 외(2010)의 시간연장보육 수요조사에 의하면, 시간연장보육 서비스 이용 횟수는 주 3회 이상이 58.0%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나 1~2회도 16.2% 정도 있어 70% 이상이 시간연장보육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 기관유형별로 주 3회 이상은 가정어린이집이 7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주 1~2회는 민간 19.5%를 나타냄. 즉, 가정어린이집 이용률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 1회 평균 이용시간은 2시간 미만이 55.0%로 가장 많고, 2~4시간 36.5% 순으로 시간연장보육 시작시간 19시 30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21시 30분이나 10시 30분 정도까지 시간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 － 기관유형별로는 4시간 이상이 가정어린이집 15.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표 III-2-8〉 시간연장보육 서비스 이용 횟수와 1회 평균 이용시간

단위: %(명)

구분	주 1~2회	주3회 이상	월 1~2회	월3회 이상	계 (수)	2시간 미만	2~4 시간 미만	4시간 이상	계 (수)	평균
전체	16.2	58.0	17.8	8.0	100.0 (338)	55.0	36.5	7.6	100.0 (228)	116.2
국공립	16.3	50.0	25.0	8.7	100.0 (184)	59.9	35.5	4.6	100.0 (152)	96.9
민간	19.5	61.7	11.4	7.4	100.0 (149)	52.2	38.9	8.9	100.0 (90)	132.8
가정	7.3	74.5	10.9	7.3	100.0 (55)	50.0	34.8	15.2	100.0 (46)	138.0
$X^2(df)/F$	19.14**									6.8***

자료: 조선휘 외(2010). 시간연장 보육교사 근무수당 지원 시범사업 효과분석 및 시간연장 보육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 $p < .05$, ** $p < .01$, *** $p < .001$

- 즉, 절반 이상이 1회 평균 2시간 미만 주 3회 이상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절반 이상이 한 달 평균 24시간 정도 시간연

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시간연장보육 이용 시간을 현실화하고 지원액 수준도 실 이용시간에 맞게 조정하여 시간연장보육 운영 내실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12) 시간연장보육 이용 아동 관리체계 문제

- 시간연장보육 서비스 이용 아동 관리 및 보육료 지급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관리됨. 출석부에 아동별 이용시간을 수기로 작성한 후 부모 확인을 받고, 이를 월단위로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음.
 - 행정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시간연장 이용시간을 월단위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이용시간과 등록 이용시간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서 허위 보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 부모들이 시간연장보육 이용 시마다 이용시간을 확인하고 부모 확인란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모들이 이를 귀찮아하고, 조부모가 아이를 데리러 올 경우는 확인란에 서명하지 않은 사례가 많음.
 - 이는 시간연장보육료 부정수급으로 국가 재정 낭비의 원인으로 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의 시간연장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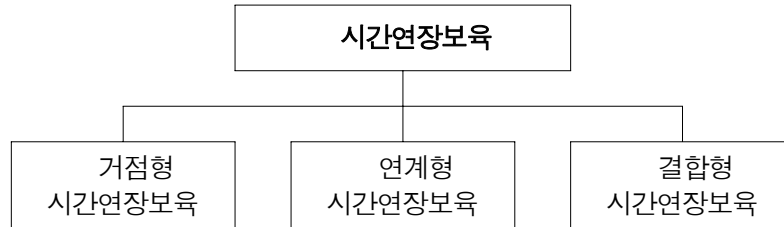
어머님들이 매일하면 귀찮다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만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사인 해 주는 게 불편하시대요. 애기 데리고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그 시간대가 좀 힘들다고... (근무수당 교사 1)

저희는 일반 아동이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데리러 오세요. 그러면 매일 하고 가시는 걸 귀찮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위에다 한번, 중간에다 한번, 쪽 그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 오셔서 그렇게 하세요. (근무수당 교사 2)

3. 시간연장보육 운영 모델

가. 개요

- 모든 어린이집이 신청하도록 개방하여 아동이 소수이어도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현행 시간연장보육 제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거점형 시간연장보육, 연계형 시간연장보육, 결합형(2in1) 시간연장보육 모델을 제안함.



[그림 III-3-1] 시간연장보육 운영 모델

1) 「거점형 시간연장보육」 운영 모델

- 「거점형 시간연장보육」은 종일보육과 시간연장보육 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형태로, 현행 모든 어린이집에서 소수의 아동을 시간연장보육하는 비효율적 운영을 개선하고자 시간연장보육을 상시 이용하는 아동들을 지역 내 거점 어린이집으로 모아 보육하는 것을 말함.
 - 「거점형 시간연장보육」 운영 시 이용 아동이 많아 연령별 반 운영이 가능하고 대부분의 아동이 늦게까지 남아 있어 아동은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음.
 - － 부모의 시간연장보육 서비스 불만 사항에 대한 조사에서 ‘이용 아동 수가 적어서’가 18.5%로 높게 나타났고, ‘프로그램 질’ 12.5%, ‘다양한 아동이 함께 있어야 하는 점’ 11.1%, ‘접근성 낮음’ 7.5%, ‘이용하고 싶은 시간에 이용 못함’ 6.0% 순으로 아동 수가 적을 때 더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남(조선주 외, 2010).
 - － 즉, 또래 집단과 어울릴 때의 심리적인 안정감과 일정 수 이상의 아동이 있을 때 정서적으로 더욱 안심하게 되는 물리적인 안정감을 강화함.
 - 이와 더불어 시간연장보육을 위하여 타 기관으로 이동하는 아동들이 한 기관에서 모든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2010년 12월 현재, 시간연장보육 이용률이 민간·개인 40.4%, 가정 37.2%, 국공립 13.4%, 법인 5.2%, 법인 외 3.1%, 직장 0.6% 순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시간연장보육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해 왔으나, 국공립어린이집 중심의 「거점형 시간연장보육」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국공립어린이집의 취약보육 서비스는 위탁 조건으로 지정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 반면, 거점형 어린이집으로서의 역할 수행은 현재 미비한 실정임.

- 국공립어린이집 중심의 「거점형 시간연장보육」은 보육 서비스의 공적 전달체 계로서 국공립어린이집의 역할 수행 강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판단됨.
- 신나리 등(2009)의 연구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조사결과, 거점형 어린이집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대하여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거점형 시간연장보육」기관은 시·군·구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예: 3개동 1개소, 1개동 1개소)를 결정하고, 일정조건을 갖추어 거점형 시간연장보육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한 기관(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우선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신청 기관이 많을 경우, 1차적으로는 기관 규모나 위치, 시간연장보육 이용 아동 수, 시간연장보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2차적으로 시간연장보육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심사를 통해 거점 기관으로 지정함.
 - 신청 기관이 적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적합한 기관을 임의 지정함.
 - 신설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 운영 하도록 함.
 - 농어촌 지역은 여건 상 국공립어린이집 지정이 어려울 경우 시간연장보육 이용 아동이 많은 민간어린이집을 한시적으로 거점 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예산 확보를 통해 점진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설하여 거점 기관으로 운영해나감.
- 2010년 12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기관 수는 총 2,034개소로 이용률은 89.5%로 집계됨(보육통계, 2010). 그러나 설치 지역의 편차가 크고, 시간연장 이용률이 13.4%로 저조하여 거점 기관으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됨.
 - 국공립어린이집을 거점 기관으로 전환 시 시간연장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기존 종일 보육 이용 아동이 타 기관으로의 이동을 거부하거나, 해당 기관을 계속 이용하고자 필요 없는 시간연장보육을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해당 국공립어린이집 입소를 기다리던 일부 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됨.
 - 국공립어린이집 기관 수가 적은 중소도시나 대도시 지역에서는 거점형 기관이 기존 이용 어린이집보다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을 꺼리거나 부모 불만 등의 문제 발생 소지가 있음.
 - 조선주 외(2010)의 연구에서 가까운 곳(거주동 내)에 시간연장보육을 위한 기관

이 잘 갖추어져 있고, 10명 이상의 아동이 시간연장보육을 상시적으로 하는 어린이집이 있다면 지금 어린이집에서 그 기관으로 옮길 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76.1%가 옮길 의향이 없다고 응답함. 특히, 가정어린이집의 부정적 응답이 82.6%로 많았음.

- 이는 기존에 이용하던 어린이집을 바꾸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거부감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따라서 시간연장보육을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중 시간연장보육 이용 아동수가 많고, 수요가 많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지정할 경우 부모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음. 또한 시간연장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해 접근성이 떨어지더라도 부모 스스로 거점 기관을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함.

□ 「거점형 시간연장보육」 지원은 현행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조건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거점 기관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현행 교사 인건비 지원율을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고,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 등의 지원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이는 본 연구를 위한 심층면담 결과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대상으로 시간연장보육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을 조사한 결과, 추가 인력 인건비 지원이 43.5%로 가장 많고, 기존 인력 인건비 추가 지원 31.7%, 운영비 지원 18.6%, 기능보강비 지원 5.5%로 나타난 결과(신나리 외, 2009)를 기초로 함.
- 시간연장보육 교사 인건비와 운영비, 기능보강비 등의 추가 지원으로 시간연장보육에 대한 재정 지출이 늘겠으나 현행 시간연장보육 운영 제도보다 정책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됨.

2) 「연계형 시간연장보육」 운영 모델

□ 「연계형 시간연장보육」은 인근의 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의 시간연장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보육 형태로, 등·하원 차량으로 인근 기관을 순회하여 시간연장보육 이용 아동을 운영 기관으로 이동시키는 방식(하원은 부모가 직접 담당)을 말함.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하원 후 단절 없이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이동하기보다 등·하원 차량으로 일괄 이동시키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음.

- 본 연구의 부모 심층면접에서 시간연장보육 이용 시 아동이 기관을 이동해야 하는 점을 가장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앞서 시간연장보육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하원시간이 이른 타 기관 이용 아동들의 보육 요구에 대처하기 위하여 「연계형 시간연장보육」은 현행 시간연장보육 시작시간보다 1시간 빠른 18시 30분부터 보육활동을 시작하는 기준 설정함.
 - 이는 ‘기관 내 여유 공간과 시간연장보육 교사가 있을 경우 이용자 부모의 사정에 따라 시간연장보육 기준시간(19:30) 이전에도 보육은 가능하나 시간연장보육료 기산은 19:30부터 시작된다’는 현행 시간연장운영 지침을 근거로 함.
 - 단, ‘19시 30분 이전에는 주간보육 아동 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새로 책정한다’는 현행 운영 지침은 시작시간이 빨라짐에 따라 종일 보육 정원 초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원 외 기준으로 설정한다’로 추후 지침 조정이 필요함.
- 「연계형 시간연장보육」 운영 어린이집은 기관 내에 유휴 공간이 있는 어린이집을 우선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18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종일보육과 시간연장보육 운영이 동시 운영되기 때문에 시간연장보육을 위한 개별 공간 필요함.
 - 본 연구 원장 심층면접에서도 종일보육과 시간연장 이용 아동 통합 보육 시 아동 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됨. 따라서 종일보육 이용 아동과 시간연장 이용 아동은 분리 보육해야 함.
- 「연계형 시간연장보육」 기관은 일정조건을 갖추어 연계형 시간연장보육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한 어린이집(국공립, 민간, 법인)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연계형 시간연장보육」 기관은 인근의 시간연장보육을 운영하지 않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시간연장보육 수요에 따라 성패가 결정되므로 수요 조사가 필수적임.
 - 특히, 인근에 ‘온종일 돌봄교실(17:00~22:00)’을 운영하는 유치원이 있을 경우 이용 아동 수요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음.
 - 신청 기관이 많을 경우, 1차적으로는 유휴 공간 여부, 위치, 인근 기관의 시간연장보육 수요, 등·하원 차량 소유 여부(단, 국공립어린이집은 제외) 등을 검토하고, 2차적으로 시간연장보육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심사를 통해 「연계형

시간연장보육」 지정어린이집으로 정함.

- 연계형 시간연장 어린이집 인근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협력네트워크 구성함.
- 국공립어린이집에 등·하원차량이 없을 경우, 인근 어린이집의 등·하원 차량을 대여하여 운행하고, 차량을 제공한 어린이집에게는 매월 차량운영비를 지급함.
- 신청 기관이 적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연계형 시간연장보육」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기관을 임의 지정함.

3) 「결합형(2in1) 시간연장보육」 운영 모델

- 「결합형 시간연장보육」은 시간연장보육 이용 아동 수가 일일 평균 3명 이하인 어린이집 2개소가 상호 운영하는 형태로, 격월로 보육교사가 시간연장보육 이용 아동과 함께 해당 월의 운영 어린이집으로 가서 시간연장 보육하는 형태임.
 -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 시간연장보육 교사, 주간 교사들의 협력이 필요함.
 - 어린이집 협력 운영을 통한 인적, 물적 자원의 공유로 상호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음.
 - 격월 운영으로 전기료, 냉난방비, 상하수도료 등의 운영비 절감으로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어린이집 2개소 협력운영으로 2명의 교사가 역할 보완 및 책임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음. 특히, 아동에게 안전사고나 위급상황 발생 시 협력 대처가 가능하며, 하원 지도 시에도 나머지 교사가 남아 있는 아동을 돌봄으로서 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음.
- 19시 30분까지는 각 어린이집에서 종일 보육하고, 해당 어린이집에서 도보나 등·하원 차량을 이용하여 운영 어린이집으로 이동함(하원은 부모가 직접 담당).
- 시간연장보육 이용 아동수가 많고 교사 두 명이 함께 근무함으로써 영아/유아반 운영이 가능하고, 늦게까지 남아 있는 아동이 많아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음.
 - 또래 집단과 어울릴 수 있을 때의 심리적인 안정과 일정 수 이상이 있을 경우 더욱 안심하게 되는 물리적인 부분을 보완함.
- 그러나 아동과 시간연장보육 교사가 운영 어린이집으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도보나 차량 이동 시 안전사고 발생의 소지가 있음.

- 부모 입장에서 운영 어린이집이 매월 달라져서 하원 시 혼란을 겪을 수 있으나 운영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매월 정기적으로 안내(예: 가정통신문, 문자서비스 등)함으로써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음.
 - 시간연장보육 교사도 매월 어린이집을 번갈아가며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교사에 따라서는 근무환경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 「결합형 시간연장보육」 기관은 일정조건을 갖추어 결합형 시간연장보육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한 기관들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모형별 세부 내용

1) 「거점형 시간연장보육」 운영 모델

가) 반 편성

- ☐ 시간연장보육반은 주간반을 그대로 유지하여 편성함. 수요에 따라 반을 재편성할 경우 되도록 연령별로 반을 편성하고, 만 0세와 만 2세 영아, 만 2세 이하 영아와 만 3세 이상 유아는 혼합연령반으로 편성하지 않음.
- 시간연장보육은 주간보육과 동일하게 현행 연령별 반 편성 기준을 따름. 단, 혼합연령반 구성 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낮은 연령의 기준을 따름. 장애아가 포함될 경우에는 종사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음.

나) 보육 프로그램

- ☐ 연령별 반 편성에 따라 연령별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또한 주간반 보육계획안과 연계하되 야간보육 특성을 고려한 사회·정서발달 중심의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추후 국가수준의 「시간연장보육 프로그램」이 개발, 보급이 이루어지면, 이를 시간연장보육 운영에 적용함.

다) 교사 및 기타 인력관리

(1) 시간연장반 교사

- ☐ 주간 보육교사와 별도로 시간연장보육 교사를 채용하여 반 별로 배치함.
- ☐ 시간연장 교사의 근무시간은 총 8시간 이내에서(경력인정 감안 6시간 이상 근무) 근무하고 조기출근이 가능하도록 함. 또한 시간연장보육 전후 시간을 적절히 조

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음.

- 시간연장 교사가 보육활동 준비를 위해 1시간 전에는 반드시 근무하도록 함. 즉, 18:30부터~21:30까지는 반드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조기 출근 시 기관별 특성에 따라 보육활동 준비 및 정리, 서류 작성(주간·일일 보육계획안, 보육일지 등) 등의 업무를 담당함.
- 시간연장 교사 단시간 근무제 도입 시 1일 총 6시간 이내에서 근무하고, 시간연장 보육시간 1시간 전인 18:30~21:30은 반드시 근무하도록 함.

(2) 기타 인력

- ☐ 시간연장반 취사부를 주간 취사부와 별도로 배치함.
- ☐ 시간연장반 저녁 급식과 정리시간(18:30~19:30)에는 반드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라) 재정

(1) 보육료

- ☐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기준시간 초과(19:30~24:00) 보육료는 종일 보육과 별도로 수납함.
- ☐ 시간연장보육료는 시간 당 3,000원, 장애아동 4,000원(연령에 관계없이 동일)을 수납함.
 - 시간연장보육료의 매월 지원한도액은 월 45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 시간연장보육료는 식식비가 포함된 단가로 식식비를 별도 청구할 수 없음.

(2) 인건비

(가) 시간연장반 교사

- ☐ 시간연장보육을 위하여 별도로 교사를 채용할 경우에 시간연장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며,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함.
 - 국공립어린이집 시간연장 교사 중 8시간 근무 교사는 월 지급액의 100%를 지원하고, 단시간(6시간) 근무 교사는 80%를 지원함. 민간어린이집은 시간연장보육 교사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함.

〈표 III-3-1〉 시간연장보육 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구분	내용
국공립어린이집	① 8시간 근무: 시간연장보육 교사 월 지급액의 100% 지원 ② 단시간(6시간) 근무: 시간연장보육 교사 월 지급액의 80% 지원
민간어린이집	시간연장보육 교사 1인당 100만원 지원

(나) 기타 인력

- ☐ 시간연장반 취사부는 월 50만원을 지원함.

(3) 운영비

- ☐ 시간연장보육으로 인한 시설보강비 연 100만원과 교재교구비 연 50만원을 지원함.

2) 「연계형 시간연장보육」 운영 모델

가) 반 편성

- ☐ 해당 어린이집 아동과 분리하여 반 편성하고, 어린이집 혼합반 운영 지침(보육사업안내, 2011)에 따라 시간연장 혼합연령반 편성 시 만 0세와 만 2세 영아, 만 2세 이하 영아와 만 3세 이상 유아는 혼합연령반 편성이 불가함.
- 교사 대 아동 비율은 0세 1:3, 1,2세 1:5, 3~5세 1:7을 기준으로 반 편성함. 혼합연령반 편성이 불가피할 경우(예: 0세와 1세 영아 1:3, 만 1세와 2세 1:5) 낮은 연령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기준에 따름. 장애아가 포함될 경우에는 보육교사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음.

〈표 III-3-2〉 연령별 교사 대 아동 비율

아동 연령	교사 대 아동 비율
0세	1:3
1, 2세	1:5
3~5세	1:7

나) 보육 프로그램

- ☐ 혼합연령반 편성에 따라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간반 보육계획안과 연계하되 야간보육 특성을 고려한 사회·정서발달 중심의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추후

국가수준의 「시간연장보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이 이루어지면, 이를 시간연장 보육활동에 적용함.

다) 교사 및 기타 인력관리

(1) 시간연장반 교사

- ☐ 주간 보육교사와 별도로 시간연장 교사를 채용하여 시간연장반에 배치함.
- ☐ 시간연장 교사의 근무시간은 총 8시간 이내에서(경력인정 감안 6시간 이상 근무) 근무하고 조기 출근이 가능하도록 함. 또한 시간연장보육 전후 시간을 적절히 조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음.
 - 시간연장 교사가 보육활동 준비를 위하여 1시간 전에는 근무하도록 함. 즉, 18:30~21:30까지 반드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국공립어린이집 시간연장 교사 단시간 근무제 도입 시 1일 총 6.4시간 이내에서 근무하고, 시간연장보육 시간 1시간 전인 18:30~21:30까지 반드시 근무하도록 함.
 - 조기 출근 시 기관별 특성에 따라 보육활동 준비 및 정리, 서류 작성(주간·일일 보육계획안, 보육일지 등) 등의 업무를 담당함.

(2) 근무수당 시간연장 교사

- ☐ 주간 보육교사(보육교사 겸임 가능한 원장 포함)가 초과근무 형태로 시간연장보육을 실시하는 경우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를 채용하는 형태로 시간연장반의 정원이 초과될 경우 근무수당 시간연장 교사가 근무함.

라) 재정

(1) 보육료

- ☐ 연계형 시간연장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기준시간 초과(19:30~24:00) 보육료는 종일 보육과 별도로 수납함.
 - 시간연장보육료 매월 지원한도액은 월 45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 시간연장보육료는 시간당 3,000원, 장애아동 4,000원(연령에 관계없이 동일)을 수납함. 단, 시간연장보육료는 석식비가 포함된 단가로 석식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음.

(2) 인건비

(가) 시간연장반 교사 인건비

- ☐ 시간연장 보육을 위하여 별도로 교사를 채용할 경우에 시간연장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며,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함.
- 국공립어린이집 시간연장 교사 중 8시간 근무 교사는 월 지급액의 100%를 지원하고, 단시간(6시간) 근무 교사는 80%를 지원함. 민간어린이집은 시간연장보육 교사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함.

〈표 III-3-3〉 시간연장보육 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구분	내용
국공립어린이집	① 8시간 근무: 시간연장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100% 지원 ② 단시간(6시간) 근무: 시간연장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80% 지원
민간어린이집	시간연장보육 교사 1인당 100만원 지원

(나) 근무수당 교사인건비

- ☐ 근무수당 교사는 1일 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간당 15,000원 인건비를 지급함.

(3) 운영비

- ☐ 연계형 시간연장 어린이집 차량운영비로 월 10만원을 지원함.
- 2011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현행 차량운영비 지원은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과 시·도지사가 지정한 정부지원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에 한하며, 개소 당 연 2,400천원(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연계형 시간연장 어린이집은 등원 시에만 운행하므로 현행 차량운영비 기준의 50%만 지급함.

3) 「결합형(2in1) 시간연장보육」 운영 모델

가) 반 편성

- ☐ 혼합연령반 편성 시 만 0세와 만 2세 영아, 만 2세 이하 영아와 만 3세 이상 유아는 필히 분리하여 반 편성함.
- 교사 대 아동 비율은 0세 1:3, 1,2세 1:5, 3~5세 1:7을 기준으로 반 편성함. 0,1세, 2,3세 혼합연령반 편성이 불가피할 경우 낮은 연령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기준에

따름.

- 장애아가 포함될 경우에는 보육교사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음.

〈표 III-3-4〉 연령별 교사 대 아동 비율

아동 연령	교사 대 아동 비율
0세	1:3
1, 2세	1:5
3~5세	1:7

나) 보육 프로그램

- ☐ 혼합연령반 편성에 따라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간반 보육계획안과 연계하되 야간보육 특성을 고려한 사회·정서발달 중심의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추후 국가수준의 「시간연장보육 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되면, 이를 시간연장보육활동에 적용함.

다) 교사 및 기타 인력관리

(1) 시간연장반 교사

- ☐ 주간 보육교사와 별도로 시간연장 교사를 채용하여 시간연장반에 배치함.
- ☐ 시간연장 교사의 근무시간은 총 8시간 이내에서(경력인정 감안 6시간 이상 근무) 근무하고 조기출근이 가능하도록 함. 또한 시간연장 보육 전후 시간을 적절히 조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음.
 - 시간연장 교사가 보육활동 준비를 위해 1시간 전에는 근무하도록 함. 즉, 18:30~21:30까지 반드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국공립어린이집 시간연장 교사 단시간 근무제 도입 시 1일 총 6.4시간 이내에서 근무하고, 시간연장 보육시간 1시간 전인 18:30~21:30까지 반드시 근무하도록 함.
 - 조기 출근 시 기관별 특성에 따라 보육활동 준비 및 정리, 서류 작성(주간·일일 보육계획안, 보육일지 등) 등의 업무를 담당함.

(2) 근무수당 시간연장 교사

- ☐ 주간 보육교사(보육교사 겸임 가능한 원장 포함)가 초과근무 형태로 시간연장 보

육하는 경우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를 채용하는 형태로 시간연장반의 정원이 초과될 경우 근무수당 시간연장 교사가 근무함.

라) 재정

(1) 보육료

- ☐ 연계형 시간연장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기준시간 초과(19:30~24:00) 보육료는 종일 보육과 별도로 수납함.
 - 시간연장보육료의 매월 지원한도액은 월 45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 시간연장보육료는 시간당 3,000원, 장애아동 4,000원(연령에 관계없이 동일)을 수납함. 단, 시간연장보육료는 석식비가 포함된 단가로 석식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음.

(2) 인건비

(가) 시간연장반 교사 인건비

- ☐ 시간연장보육을 위하여 별도로 교사를 채용할 경우에 시간연장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며,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함.
 - 국공립어린이집 시간연장 교사 중 8시간 근무 교사는 월 지급액의 100%를 지원하고, 단시간(6시간) 근무 교사는 80%를 지원함. 민간어린이집은 시간연장보육 교사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함.

〈표 III-3-5〉 시간연장보육 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구분	내용
국공립어린이집	① 8시간 근무: 시간연장보육 교사 월 지급액의 100% 지원
	② 단시간(6시간) 근무: 시간연장보육 교사 월 지급액의 80% 지원
민간어린이집	시간연장보육 교사 1인당 100만원 지원

(나) 근무수당 교사인건비

- ☐ 근무수당 교사는 1일 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간당 15,000원 인건비를 지급함.

4. ‘시간연장보육 운영 다양화 시범사업’ 운영 방안

가. 시범사업 개요

-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 다양화로 시간연장보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간연장 보육 운영의 편의성 및 효율성 강화 방안으로 ‘시간연장보육 운영 다양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시간연장보육 운영 형태

- 「거점형 시간연장보육」: 종일보육과 시간연장보육 서비스를 결합하여 보육서비스 제공
 - 모든 어린이집에서 소수의 아동을 시간연장보육하는 비효율적 운영을 개선하고자 시간연장보육을 상시 이용하는 아동을 지역 내 ‘거점 어린이집’으로 모아지게 하여 보육하는 형태임.
- 「연계형 시간연장보육」: 시간연장보육을 운영하지 않는 인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시간연장보육 이용 아동을 모아 보육서비스 제공
 - 등·하원차량으로 인근 기관을 순회하여 시간연장보육 아동을 ‘연계형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이동시켜 보육하는 형태임.
 - 인근 기관의 하원시간을 고려하여 18:30부터 운영함.
- 「결합형(2in1) 시간연장보육」: 시간연장보육 이용 아동이 1일 평균 3명 이하인 어린이집 2개소가 상호운영으로 보육서비스 제공
 - 격월로 시간연장 교사와 이용 아동이 함께 해당 월의 운영어린이집으로 이동하여 보육하는 형태임.

2) 보육시간

- 시간연장보육 시간은 19시 30분부터 22시 30분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연계형 시간연장보육’은 인근 기관의 하원시간을 고려하여 18시 30분부터 시간연장보육 시작시간을 정함. 보육료 기산은 19시 30분부터 정산함.

3) 시간연장반 편성 원칙

- ☐ 시간연장보육 운영 형태에 따라 반 편성함.
 - 시간연장 혼합반 편성 시 만 0세와 만 2세 영아, 만 2세 이하 영아와 만 3세 이상 유아는 혼합반 편성이 불가함.
 - 혼합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낮은 연령의 기준을 따름.
 - 장애아가 포함될 경우에는 종사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음.

가) '거점형 시간연장보육'

- ☐ 주간반 편성을 따르되, 수요에 따라 재편성할 경우 되도록 연령별 반 편성함. 단, 혼합반 운영이 불가피할 경우 혼합반 편성이 가능함.

나) '연계형 시간연장보육'

- ☐ 교사 대 아동 비율은 0세 1:3, 1,2세 1:5, 3~5세 1:7을 기준으로 반 편성함.

다) '결합형 시간연장보육'

- ☐ 교사 대 아동 비율은 0세 1:3, 1,2세 1:5, 3~5세 1:7을 기준으로 반 편성함.
 - 단,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만 2세아와 유아의 혼합반 편성이 가능함.

4) 교사 배치 및 보육 프로그램

가) 교사 배치

- ☐ '거점형 시간연장보육', '연계형 시간연장보육', '결합형 시간연장보육'기관에는 현행처럼 시간연장보육 교사를 배치함
 - '연계형 시간연장보육'이나 '결합형 시간연장보육'반의 초과인원 발생 시 시간연장 근무수당 보육교사를 추가 배치함.

나) 보육 프로그램

- ☐ 연령별 반 편성에 따라 연령별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또한 주간반 보육계획안과 연계하되 야간보육 특성을 고려한 사회·정서발달 중심의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 추후 국가차원의 「시간연장보육 프로그램」이 개발·보급이 이루어지면, 이를

시간연장보육 운영에 적용함.

5) 인건비 지원기준

- ☐ 시작시간(19시 30분) 이후 시간연장보육 아동 기준이 2명 이상(예외: 국공립 등 정부인건비 지원 비영리법인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 기금지원 기관은 보육아동 1명 이상)이고, 1개반 전체 아동의 시간연장 총 합이 월 20시간 이상일 경우 인건비를 지원함.
- ☐ 월급여 시간연장교사: 시간연장보육 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함.
 - 정부지원기관: 시간연장보육 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함.
 - － 단, 단시간 근무 교사: 6시간 근무 시 80% 인건비를 지급함.
 - － 8시간 근무 교사: 지원금 80%와 나머지 차액은 기관에서 부담함.
 - 민간어린이집: 시간연장보육 교사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함.
- ☐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 교사: 주간 보육교사(보육교사 겸임 가능한 원장 포함)가 초과근무 형태로 시간연장보육을 실시한 경우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 채용한 경우 지원함.
 - 시간연장반 별 월 30만원을 지원함(1시간 15,000원, 1일 최대 2시간 근무).
- ☐ 인건비 지원 교사 수는 시간연장보육 운영 형태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다름.
 - 월급여 시간연장교사
 - － 거점형 시간연장보육: 어린이집 정원에 맞춰 지원함.
 - － 연계형 시간연장보육과 결합형 시간연장보육: 어린이집 정원 범위 내에서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함.
 - 근무수당 시간연장교사: 어린이집 정원에 맞춰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함.

6) 보육료

- ☐ 시간연장보육료는 시간당 3,000원, 장애아동 4,000원(연령에 관계없이 동일)을 수납함. 단, 시간연장보육료는 석식비가 포함된 단가로 석식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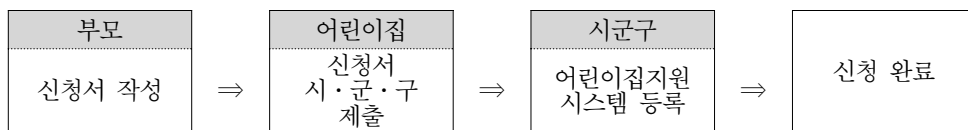
5. 시간연장보육 내실화를 위한 개선 방안

가. 시간연장보육 이용 신청 절차 기준 마련

- 시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한 신청절차 기준을 마련함. 규격화된 신청양식이나 신청절차, 신청시스템 마련을 통해 시간연장보육의 근본 취지를 부모들이 올바르게 인식하고, 시간연장보육료 허위 신고에 따른 국가재정 낭비를 차단함.
- 시간연장보육 신청절차는 신청양식 등록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향을 검토해 볼 수 있음.

1) 신청양식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등록

- 정부에서 제공하는 신청양식(부록 1 참고)을 부모가 작성하면, 각 어린이집에서 신청양식을 스캔한 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군·구에서는 이를 일괄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임.



[그림 III-5-1] 시간연장보육 신청절차

어린이집지원시스템
CHILD CARE SUPPORT MANAGEMENT SYSTEM

이용현황관리

일반 시간연장 휴일보육

작업년월 2011년 12월 현원/퇴소대부 전체 은행 전체 검색

담당교사 :

No	아동명	주민등록번호	보육료지원자격	상태	입소일	퇴소일	확장	결제	+선택	+이용시간	신청서 등록
1		050510-4*****	만5세아	현원	2009.08.18				☐		☐
2		050911-4*****	만5세아	현원	2010.01.18				☐		☐
3		070412-4*****	영유아	현원	2011.03.02				☐		☐
4		071201-4*****	영유아	현원	2010.06.11				☐		☐
5		060215-3*****	영유아	현원	2010.03.02				☐		☐

[그림 III-5-2] 시간연장보육 신청양식 등록 화면(예)

- 신청서를 스캔하여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탑재할 경우, 신청서 용량이 커서 어린이집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로 인하여 어린이집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이용자의 민원이 제기될 수 있음. 서버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이 추가적으로 요구됨.

2) 온라인 신청

- 보육포털을 이용하여 시간연장보육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식임. 부모가 온라인 상에서 아동명, 이용기간과 이용시간, 부모 연락처 등을 직접 작성함으로써 시간연장보육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고, 수요 및 이용 현황 파악, 시간연장보육 예약 문화 정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 컴퓨터나 인터넷 보급률이 낮은 저소득층이나 농어촌, 컴퓨터 사용 능력이 부족한 부모들은 온라인 신청이 용이하지 않아 시간연장보육 이용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나. 시간연장보육료 지원 아동 관리 시스템 개선

- 시간연장보육 서비스 이용 아동과 보육료를 관리하는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의 관리 체계를 개편함. 현행 시간연장보육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은 행정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월단위로 이용시간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시간연장보육료 부담 청구 및 부정 수급, 이용 아동 허위등록 등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월단위에서 주단위 또는 일단위로 이용시간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함(그림 III-5-3 참조).

다. 시간연장보육료 월 지원한도액 축소

- 시간연장보육료 지원한도액을 60시간에서 45시간으로 축소함. 현행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은 시간연장보육료도 지원되어 시간연장이 필요 없는 아동이 장시간 보육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이는 국가재정의 낭비인 동시에 시간연장보육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지원한도액을 현실화하고, 아동이 부모에게 양육될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45시간으로 축소함.

라. 시간연장보육료 현실화 및 저녁급식비 통합

- 시간연장보육료와 석식비를 통합하여 지원함. 주간 보육료와 동일하게 시간연장 보육료에 석식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부모가 많음. 즉, 석식비 수납물이 저조하여 시간연장보육 운영 어린이집의 재정 부담의 원인이 되므로 석식비를 시간연장보육료에 통합시켜 수납함.

마. 국공립어린이집 시간연장보육 교사 단시간 근로제 도입

- 국공립어린이집 시간연장보육 교사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함. 국공립어린이집의 시간연장 교사 인건비는 종전대로 80% 지원하고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시간연장보육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시간연장보육 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함.

어린이집지원시스템
CHILD CARE SUPPORT MANAGEMENT SYSTEM

메인메뉴 [남] | 식재, 변경하면 관계법령(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 보건복지부 | 아이사랑카드

공지사항 | 업무연락 | FAQ | 질의응답 | 제안마당 | 사랑나눔방 | 서식공유(법령, 지침) | 원격지원 | 로그인

이용현황관리

일반 | 시간연장 | 휴일보육

작업년월: 2011년 12월 | 현원/퇴소대부 | 전체 | 변경 | 검색

담당교사:

No	아동명	주민등록번호	보육료지급자격	상태	입소일	퇴소일	확정	결제	선택	이용시간
1		050510-4*****	만5세아	현원	2009.08.18				☐	
2		050911-4*****	만5세아	현원	2010.01.18				☐	
3		070412-4*****	영유아	현원	2011.03.02				☐	
4		071201-4*****	영유아	현원	2010.06.11				☐	
5		060215-3*****	영유아	현원	2010.03.02				☐	

시간연장 이용 날짜 입력

1월 시간연장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체크박스 추가

[그림 III-5-3]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시간연장보육 이용시간 등록 화면(예)

- 국공립어린이집의 시간연장보육 참여율을 높이고, 보육서비스의 공적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강화함.
- 반면, 8시간 근무를 희망하는 보육교사들이나 8시간 근무교사들의 반발이 예상됨.

바. 시간연장보육 프로그램 개발

-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국가 수준의 시간연장보육 프로그램을 개발함. 영유아 모두 장시간 보육에 따른 사회·정서적 문제가 우려되므로 사회·정서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 유아는 모든 영역의 발달에 있어서 집단생활이 가능하여 어린이집에서의 생활이 비교적 쉬운 연령이지만, 영아기는 일과 리듬의 개인적 차이, 단체 생활 규칙 이해의 어려움 등 모든 발달적 특성으로 볼 때 어린이집에서의 생활이 힘든 연령임. 즉, 영유아의 발달적 차이를 고려한 시간연장보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됨.

사. 혼합연령반 연령 기준 마련

- 시간연장보육 혼합반 구성 연령 기준을 마련함. 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주간보육 혼합반 기준과 동일하게 만 0세와 만 2세 영아, 만 2세 이하와 만 3세 이상 유아의 혼합반 편성이 불가하도록 지침을 마련함.
- 교사 대 아동비율도 현행 기준보다 연령을 세분화하여 0세 1:3, 1,2세 1:5, 3~5세 1:7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함.

〈표 III-5-1〉 교사 대 아동 비율

현행	개편	
1:5	0세	1:3
장애아, 0세아는 일부 달리 적용	1, 2세	1:5
유아로만 편성 1:7	3~5세	1:7

아. 시간연장 교사교육 제도화

- 시간연장보육 교사 직무연수를 제도화함. 시간연장보육은 야간보육이라는 특수성

으로 주간교사와는 다른 역할수행이 요구됨. 즉, 발달적 특성이나 요구가 다른 다양한 연령으로 구성된 혼합반 운영, 위급상황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요구되는 대처능력 등 시간연장보육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이나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함.

- 즉, 중장기적으로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중 직무교육에 ‘시간연장보육 직무교육’을 신설, 의무교육화하여 시간연장보육 교사의 보육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 개발시킴.

자. 시간연장 대체교사 인력풀 마련

- 시간연장보육 교사의 처우개선 및 전문성 제고를 지원하는 견지에서 대체교사 인력풀을 마련함. 야간 근로로 인하여 주간 보육보다 대체교사 인력 수급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장기적으로 예산 마련을 통해 야간근무 수당을 지급하여 대체교사 인력 수급을 안정화함.
- 이는 시간연장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시간연장보육 교사의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음.

차. 시간연장보육 이용 부모교육 활성화

- 시간연장보육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부모교육을 활성화함. 시간연장보육은 취업모와 시간연장을 필요로 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부모들이 쇼핑, 문화생활, 여가활동 등 시간연장보육의 근본 취지와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제도의 효과가 떨어짐.
- 시간연장보육의 적절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용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지침을 마련함.

카. 시간연장보육 홍보 확대

- 부모 대상의 시간연장보육 홍보를 확대함. 시간연장보육 비이용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조차 시간연장보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시간연장보육 신청방법, 이용대상, 운영시간, 보육료, 지원조건 등의 정보를 담은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함.

IV. 시간제 일시보육

1. 시간제 일시보육 제도

가. 시간제 일시보육의 개념

- ☐ 시간제보육은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부득이한 경우에 비정기적인 보육을 받는 경우를 의미함.
- ☐ 보호자의 부득이한 사정 및 사적 활동에 의해 긴급 또는 일시적 보육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를 기본대상으로, 일정 시간동안 제공되는 비정형적 보육을 뜻함.

나. 시간제 일시보육의 특성

- ☐ 시간제 일시보육은 다른 보육 서비스들과 다음과 같은 특성들로 구분될 수 있음. 이 특성들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 마련에 어려움을 확인하게 함과 동시에 개선을 위한 방향 설정의 기초를 제공함.
 - 시간제 일시보육의 정의에서 강조하듯 정기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제공되는 비정형적, 비정기적 보육 서비스임.
 - 영영아(만 1세 이전)와 영아(1세~2세)의 수요가 많음. 정기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 연령 아동이 일시적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
 - 수요와 이용이 불규칙함. 보호자의 부득이한 사정, 긴급한 상황에서 비롯되는 보육 서비스로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 예측과 이용의 불규칙성으로 보육 서비스를 준비하기가 어려움.
 - 보육 서비스 수요자와 보육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신뢰로운 관계 형성이 어려움. 교사의 입장에서는 일시로 방문하는 부모와 아동의 특성에 대한 파악이 어렵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교사와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임.
 - 공간적 환경과 더불어 인적 환경에의 배려가 중요함. 갑자기 맡겨지는 아동은

낮선 사람들과 공간에서 당황하기 쉬움. 다른 어떤 보육 서비스보다 가정과 유사한 환경이 준비되어야하며 경험 많은 교사가 필요함.

- 안전과 건강에 취약하기 쉬움. 아동의 건강 상태에 대해 짧은 시간동안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한 낮선 환경에서 아동이 다치기 쉽기 때문임.
- 정규보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일시로 보육되는 아동들의 연령이 다양하고 보육 필요시간도 일정하지 않아, 연령에 맞는 정규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쉽지 않음.
- 취업 어머니만이 아닌 미취업 어머니와 시간제 취업어머니들의 이용이 많음. 고용 유형의 다양화에 따라 이 수요는 증가할 추세임.

2. 시간제 일시보육 현황 및 문제점

- 시간제 일시보육은 그 필요성의 증가와 함께 저출산을 극복하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고자하는 다양한 노력의 일환으로 몇 가지 형태로 운영 중임.
- 시간제 일시보육의 수요가 가장 많고 다양한 유형이 운영 또는 시범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는 다음의 네 가지 유형으로 대표됨.
 - － 첫째, 서울특별시의 보육포털서비스를 통해 신청 가능한 서울형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으로의 시간제 보육
 - － 둘째, 365 열린 어린이집의 시간제 보육
 - － 셋째, 서울특별시의 각 구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영유아플라자와 육아지원센터에서의 시간제 보육
 - － 넷째, 사회적 기업인 YMCA ‘아가야’에서 운영하는 시간제 보육

가. 서울특별시 서울형 어린이집 맞춤형보육으로의 시간제 보육

1) 서울형 어린이집 맞춤형보육으로의 시간제 보육

- 서울형 어린이집이란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 서울특별시가 국공립에 준하는 보조를 해주고 그 만큼의 책임을 지워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해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됨.

-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 받으면 평균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의 10%가 운영비로 주어지고 일정 조건에 부합 여부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과 영아반(만 2세 이하)교사는 인건비의 80%, 유아반 교사는 인건비의 30%, 취사인력은 인건비의 100%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서울형 어린이집’에서의 맞춤보육은 시간연장, 시간제, 휴일, 24시간, 장애아통합, 다문화가정 자녀보육 등을 통칭하며, 이 중 2가지 이상을 실시하는 경우 평가 배점이 높아 현장의 어린이집에서는 이 중 2가지를 선택하는 양상을 보임.
-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시간제 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의 수는 현재 56개소로 휴일보육 83개소, 야간보육 89개소 보다 적은 수가 운영 중임.
- 2009년 이후 많은 어린이집에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함.

〈표 IV-2-1〉 서울형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운영 기관수

단위: 개소

시작년도	2008년 이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무응답	계
기관 수	1	7	24	11	4	9	56

2) 운영현황

가) 서울형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운영과 이용방법

- 서울형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운영과 이용방법은 <표 IV-2-2>와 같음.

나) 서울형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현황

- 서울특별시의 보육포털서비스를 통해 맞춤보육 중 시간제 보육을 선택한 56개 어린이집을 확인하고 전화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을 파악함. 전화 조사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현재 어린이집에서 시간제 보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 현재 시간제 보육 운영 중인 경우
 - 언제부터 시간제 보육 운영을 시작하였는가?

〈표 IV-2-2〉 서울형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운영과 이용방법

구분	서울형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설립목적	여성 행복프로젝트(재취업 위한 준비 돕기 위해서 시간제 보육제공)
지원	- 전담교사 인건비 80%는 서울시에서 지원, 20%는 시간제 보육료로 충당 - 시설 지원비
이용방법	-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 http://iseoul.seoul.go.kr - 인터넷으로만 예약 가능함(회원가입 후 =>보육서비스 예약 =>예약) - 3일 전까지 예약 가능함 (당일 예약 불가함) - 120 다산 콜센터를 통한 안내 제공함
입소연령	이용 아동의 월령 제한이 없음
이용시간	9시~18시(월~금)/ 토요일 9시~ 15시 30분
시간제한	이용시간 제한 없음 (타 어린이집 대기자 이용가능)
비용	후불제(시간당 3000원 / 30분 단위로 계산)
준비서류	생활기록부/ 응급처치 동의서/부모동의서

- 어떤 계기로 시작하였는가?
- 전담교사와 전용공간이 있는가?
- 이용자 수와 평균 1회 이용시간은?
- 시간제 보육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 현재 운영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 시간제 보육 서비스 시작하게 된 계기

- 부모의 요구가 증가해서, 지자체(구청)의 권유로, 시범사업기관으로 지정되어 서울형 어린이집의 맞춤형 보육 중 시간제 보육을 선택하여 등 다양한 응답 중 가장 많은 응답은 서울형 어린이집의 맞춤형 보육으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임.

□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위한 전담교사와 전용공간, 보육 프로그램의 유무

- 전담교사와 전용공간이 없이 정규 보육 서비스와 혼합형으로 어린이집의 보육 정원 범위 안에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이 월등히 많음.
- 시간제 전담교사를 둔 경우도 있으나,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이용이 규칙적이지 않아 보육포털서비스에서 예약이 확인되면 시간제 전담교사를 시간제로 고용하는 경우도 있음.
- 시간제 보육을 위한 전용공간을 설치하는 곳보다는 혼합형으로 자기 또래의 연

령 교실에서 함께 지내는 경우가 많았고, 교사실이나 당직실을 시간제 교실로 전용하는 경우도 있음.

〈표 IV-2-3〉 서울형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전담교사와 전용공간, 보육 프로그램의 유무

단위: 개소

구분	시간제 전담교사		시간제 전용공간		전용 프로그램		무응답	계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기관 수	18	31	14	35	9	40	7	56

☐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 가능시간

-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는 오전 7시 30분에서 저녁 7시 30분까지 이용 가능함. 민간어린이집의 경우는 더 융통성 있게 이용 가능함.

☐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 아동 수와 이용시간

- 이용아동의 수는 기관마다 차이가 크나 주당 3~4명이 가장 많았고, 이용아동이 거의 없다고 응답한 기관도 전체 56개 기관 중 25%를 넘음. 이용시간은 평균 4시간 정도가 가장 많았음.

3) 문제점

가) 시간제 보육 서비스 수요 예측이 어려움

- ☐ 보육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 보육 서비스의 하나로 시간제 보육을 실시한다고 하나 실제 이용은 극히 제한적인 상황임.
- ☐ 보육포털서비스를 통한 예약제로 운영하나 수요의 편차가 크고 예약 후 실제 이용이 없는 경우도 많음. 기관의 보육 정원의 일부를 시간제 보육으로 늘 남겨두기도 사실상 어려움.

나) 영영아와 영아의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이 어려움

- ☐ 어린이집의 정원 범위에서 빈자리가 있는 경우에 이용이 가능하여, 영영아(생후 1년 미만)반과 영아(만 2세 미만)반의 경우는 사실상 시간제 일시보육의 이용이 불가함. 현장에서는 아이돌보미 제도를 대안으로 부모에게 알려줌. 그러나 부모는 아이돌보미 제도를 처음 이용 시 제출하고 작성해야 하는 것이 많아 제도 이

용의 문턱이 높게 인지하고 있음. 또한 보육담당자가 이용자의 집으로 오는 것을 부모가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영영아와 영아를 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 강화가 필요함. 3세 이상의 아동들은 다른 기관에 등록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시간제 일시보육의 수요는 영아를 자녀를 둔 미취업모의 비율이 높음.

다) 건강과 안전의 문제

- 일시로 방문하는 경우이므로 개별 아동의 특성 파악이 어렵고, 낯선 환경에서 아동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높음.
- 수족구나 감기 등의 전염성 질병에의 노출 가능성이 있으며, 영아의 경우 돌연사에 대한 염려로 어린이집에서는 시간제 일시보육을 기피하는 부분이 있음.

라) 이용 아동의 적응의 문제/라포의 형성

-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아동이 일시적 방문 상황으로 양육자와의 신뢰적 관계 형성이 안 되어 있어서 불안해하며 우는 경우가 많음. 이런 상황은 시간제 일시보육 이용 아동 개인에게는 부적절한 보육 경험으로 오랫동안 기억되고, 기관 내의 다른 아동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함.

마) 긴급히 발생하는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 보육포털서비스에는 시간제 이용 가능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사실상 어린이집의 정원 안에서 빈자리가 있는 경우에 시간제 아동의 수용이 가능함으로 어린이집의 보육 정원이 모두 찬 경우에는 이용이 불가함. 특히 영아의 경우는 거의 정원이 포화 상태라 실질적인 이용이 힘든 상황임.
- 현재의 보육포털서비스를 통해 예약은 이용 이틀 전에 예약해야함.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보육수요에 대비하기 어려움.

바) 운영 상의 어려움

- 시간제 전담교사를 구하기 힘들. 시간제 보육료는 평균 시간당 3,000원임. 맞춤형 보육 중 시간제 보육을 선택한 어린이집 중에는 보육포털서비스를 통해 이용이 예약되어 있으면 시간제 담당교사를 시간제로 고용하는 경우가 있음. 이런 경우 시간제 교사의 시간당 임금은 최저 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임.

- 시간제 보육을 위한 서류작성이 어려움. 이용 아동의 정보에 대한 서류, 보육일지 등의 문서 구성 기준이 필요함. 긴급하게 찾아오는 경우에 부모의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을 확인하기는 하나, 통일된 기준이 필요함.
- 부모와 의사소통이 어려움. 일시로 이용하기에 기관과 부모 사이에 신뢰가 쌓이기 힘들.

나. 서울특별시 365 열린 어린이집

1) 개요

- 예정된 일시보육 또는 긴급한 일시보육이 필요한 서울시민의 자녀를 돌보아 주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 9월 1일부터 5개의 '365 열린 어린이집'이 시범운영 중임(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
 - 서울특별시는 자정까지 운영되는 어린이집을 오는 2014년까지 모두 25곳으로 확대할 계획임.
- 부모들의 다양한 근로형태 변화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시간의 한계를 보완하고 맞벌이 부부 및 일시보육이 필요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24시간 전일 시간제 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 보육운영 시간을 다양화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서비스임.
- 현재 365 열린 어린이집이 시범 운영되는 곳은 5군데이나 강남구의 경우 3곳을 더 지정하여 지자체에서 지원 중임.
 - 관악구 성현햇살 어린이집, 마포구 열린 어린이집, 양천구청 직장 어린이집, 광진구 아이들세상 어린이집, 노원구 상계5동 어린이집, 청담 어린이집, 압구정 아람 어린이집, 역삼 가에 어린이집, 보람 어린이집 등 8곳이 있음.

2) 운영현황

가) 365 열린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운영과 이용방법

- 365 열린 어린이집은 먼저 운영해 온 서울형 어린이집의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 공에서의 문제점으로 여겨지는 부분들에 대한 부모와 어린이집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된 부분이 있음.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서울형 어린이집의 시간제 보육 서비스에서는 이용 아동의 연령에 제한이 없어 너무 어린 영아를 돌봄으로 파생되는 안전의 문제가 있었음. 이를 고려하여 365

열린 어린이집에서는 영아의 경우 6개월 이후 이용 가능하도록 규정함.

- 이용시간에 대한 규제가 없어 시간제 일시보육을 너무 길게 오용함을 막기 위해 월간 총 96시간으로 이용시간의 제한을 둠.
- 인터넷을 통한 예약만 해두고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 이런 문제의 개선을 위해 예약을 사전 예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침을 세움(사전 연락 없는 취소 시 미 환불/총 이용가능시간에서 이용한 것으로 제함).
- 아동을 데려갈 때 지불하던 후불제 결제를 예약 시 비용을 결제하도록 하는 선불제 방식을 적용하여 예약 실현 비율을 높이려함.
- 시간제 일시보육의 정원을 채울 경우 긴급한 일시보육의 수용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여 긴급 일시보육 수요에 대비하러 정원의 20% 범위에서 상시 비워둠.

□ 365 열린 어린이집의 운영과 이용방법은 <표 IV-2-4>와 같음.

<표 IV-2-4> 365 열린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운영과 이용방법

구분	365 열린 어린이집
설립목적	- 예정된 일시보육 또는 긴급한 일시보육이 필요한 부모를 돕기 위해
지원	- 전담교사 인건비 100% 지원/100만원 운영비 지원
이용방법	- http://www.gncare.go.kr/24/ 회원가입 후=> 귀가동의서, 응급처치 동의서, 생활기록부 등을 문서로 작성 - 1일 전까지 온라인 예약가능/ 긴급보육 시 당일 예약 가능함 - 1544-8256/하루 긴급 2명까지 가능함
입소연령	- 6개월 이상 영아부터(6개월~만5세)
이용시간	- 7시 30분~ 21시 30분(월~금)
시간제한	- 영유아 1인당 매월 최소 3시간부터 최대 10회까지 이용(1회 최대 24시간) - 월간 96시간으로 제한
비용	- 선불제(입소 전일 오후 2시까지 해당 어린이집으로 선불 입금해야 함) - 시간당 3000원/30분 단위로 계산, 5만원/일 (식대별도: 1식당 1,000원) - 예약 후 당일에 이용안할 시에는 20% 차감/96시간 중 차감함.
준비서류	- 생활기록부/응급처치 동의서/귀가동의서/주민등록등본 1부(긴급 보육 시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대체)
기타	- 이용요금 환불은 예약일 1일전까지 예약 취소 시 100% 환불, 예약당일 1시간 전까지 전화 취소 시 50%만 환불함(사전 연락 없는 취소 시 미 환불) - 최초 이용부터 아이가 적응할 때까지는 예약시간 30분전 기관 도착요함. → 보호자는 보육실에서 아이와 놀아주며 적응시간을 함께 하기(적응시간은 이용시간에 미포함)

나) 365 열린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현황

- <표 IV-2-5>는 2011년 9월부터 시행된 시간제 일시보육을 포함하는 24시간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서울특별시(보육담당)를 통해 확인한 11월 말까지의 이용 현황임.
- 365 열린 어린이집 이용자에게 만족도와 일반적 사항, 개선점 등을 포함하는 설문지를 수집하였고 그를 토대로 연령별 이용횟수를 추정함.
 - 이용 아동의 연령을 중심으로 보면 3세 미만 아동의 이용이 활발함으로 파악됨.

〈표 IV-2-5〉 365 열린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이용현황

구분		9월(4개 기관)	10월(5개 기관)	11월(5개 기관)
총 이용아동 수		71 명	99 명	95 명
총 이용 횟수		143 회	231 회	194 회
만족도 설문응답자수		61 회	141 회	103 회
연령별 이용 횟수	6개월~1세	13 회	25 회	19 회
	2세	21 회	40 회	41 회
	2~3세	13 회	44 회	27 회
	3세~5세	14 회	32 회	16 회

3) 문제점

가) 365 열린 어린이집의 수요예측이 어려움

- 2011년 9월 이후 시행된 365 열린 어린이집은 보육포털서비스를 통한 예약제로 운영하며, 20% 정도의 현장 긴급 일시보육의 수요를 비워두고 있음. 이용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통계자료 수집을 통해 수요 예측을 위한 방안마련이 요구됨.

나) 365 열린 어린이집에 대한 이용이 예상보다 저조함

- 365 열린 어린이집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수요자의 이용이 저조함.
-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나 ‘다산 콜센터 120’ 등을 통해 365 열린 어린이집을 안내하고 있음. 예비수요자를 위해 그 마련 취지와 이용 방법, 운영되는 어린이집의 위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가 필요함.

다. 영유아플라자와 육아지원센터 시간제 일시보육

1) 영유아플라자의 시간제 일시보육

- 영유아플라자는 서울특별시에서 2007년 7월부터 추진 중인 여행프로젝트(女幸,

women friendly city project)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육 토털 서비스 센터임. 육아경험이 없는 젊은 부모들이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도움을 주고자, 통폐합된 동사무소, 보육정보센터를 활용하여 보건소, 병원, 어린이집, 어린이도서관, 아동센터 등 전문기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함.

- ☐ 서울특별시의 각 구청을 중심으로 구민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영유아플라자 또는 육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2) 운영현황

- ☐ 서울특별시에 구 단위로 설립된 총 20개의 보육정보센터를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11곳에서 영유아플라자를 통한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각 구별로 시간제 일시보육의 운영방법, 운영시간 및 이용 빈도에 차이가 있음. 서울특별시의 11곳의 영유아플라자에서의 시간제 일시보육 운영현황은 <표 IV-2-6>과 같음.
- ☐ 영유아플라자는 구 별로 시간제 보육 이용현황에 차이가 크게 나타남. 강남구, 은평구, 성북구, 강서구 등은 시간제 보육의 이용이 활성화된 반면, 종로구, 서대문구, 금천구 등은 이와 대조를 이룸. 이는 상업시설과 주거지역의 분포 정도나 인구 밀집도 등 구의 특성에 따른 보육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 운영시간은 9시 30분~17시 정도로 운영되나 점심시간에 이용이 어려운 곳이 많음. 간식이나 점심 제공여부는 기관에 따라 차이를 보임. 이용시간에 제한이 있어 1일 3시간으로 한정하는 곳이 많음. 보육비용은 시간당 3,000원으로 동일함. 예약 방법은 온라인 예약이 주류를 이룸.

3) 문제점

가) 각 구별 영유아플라자의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 운영에 차이를 보임

- ☐ 각 구의 특성이 다르고, 보육 수요에도 차이가 큼. 상업시설과 도심 지역에서의 시간제 일시보육의 수요가 적은 반면, 주거시설이 밀집한 지역에서의 수요는 큰 편임.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보육 수요를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함.

〈표 IV-2-6〉 영유아플라자 시간제 보육 운영현황

구분	강남구	강서구	금천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서초구	성북구	종로구	은평구	서대문구
시간제보육 시작(년.월)	2010. 05	2010. 03	2011. 09	2006. 04	2009. 11	2011. 07	2008. 03	2009. 07	2011. 01	2010. 07	2011. 03
운영시간	화~금 9시30분 ~16시30분	월~금 9시30분 ~17시30분	화~금 9~18시 토 10 ~17시	월~금 9 ~17시	월~금 10 ~18시	월~금 9시 ~17시30분	월~금 9시30분 ~17시	월~금 9시30분 ~18시	배주 화 13 ~17시	월~금 10 ~18시	월~금 9 ~17시 2/4 토
전담교사	있음	없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전용공간	없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없음	있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이용장원	18명	11명	3 명	7 명	5 명	10명	5 명	13	10 명	5 명	3
이용신청 방법	전화 + 방문예약 (월단위 예약제)	홈페이지 이용한 사전예약 사진예약	홈페이지 이용한 사전예약, 현장접수	홈페이지 이용한 사전예약	홈페이지 이용한 사전예약+ 전화 +방문신청	전화+ 방문신청	전화+ 방문신청	홈페이지 이용한 사전예약 현장접수	홈페이지 이용한 사전예약	홈페이지 이용한 사전예약+ 전화 +방문신청	홈페이지 이용한 사전예약
이용시간 제한	하루 3시간/ 주 3회	없음	1일 3시간	1일 3시간	없음	사당:15시간 신대방:월24 시간	1일 4시간	1일 4시간	1일 4시간	1일 3시간	1일 3시간
보육비용/시간	3000원	3000원	3000원	3000원	3000원	3000원	3000원	3000원	3000원	3000원	3000원
연령별 이용 현황	~1세 0 ~2세 491 ~3세 1137 ~4세 98 ~5세 115 전체 1841	0 2 167 41 21 237	0 0 0 0 1 1	0 1 40 38 18 97	34 36 32 6 1 109	1 20 87 26 2 136	0 31 31 16 37 115	0 82 218 144 87 531	0 5 2 0 0 7	통 계 없 음	0 3 12 0 0 1381

나) 영유아플라자의 시간제 일시보육의 운영시간이 짧음

- 운영시간을 보면 9시 30분~17시까지가 가장 많음. 그러나 이용시간을 3~4시간으로 제한을 둔 곳이 많고, 또 점심시간에는 운영하지 않는 곳도 있어 이용에 제약이 따름.
- 간식이나 점심을 제공하지 않는 기관이 많아 점심시간을 중간에 끼고 이용할 경우 어려움이 있음.

다) 영유아플라자의 시간제 일시보육 공간 적절성의 문제

- 구 마다 편차는 있으나 보육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하고 시간제 보육을 제공하기 보다는 보육정보센터의 일부 공간, 구청의 공간, 대학의 도서관 등을 전용하는 경우가 있어 공간 확대뿐만 아니라 보육공간으로의 안전과 적절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향을 보임. 또한 설비 및 교재교구 마련 등 개선이 필요함.

라) 이용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홍보가 부족함

- 영유아플라자 중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수도 많지 않지만 그 이용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홍보가 부족함. 영유아플라자를 이용하는 부모가 토로하는 어려움 중 하나는 접근성의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따라서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고(자가용 이용, 가까운 지역 거주), 영유아플라자에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가 제공됨을 아는 부모들만 반복해서 이용하는 상황임. 이미 설치되어있는 기관의 이용률을 높일 방안의 모색이 요구됨.

라. YMCA ‘아가야’의 시간제 일시보육

1) ‘아가야’의 시간제 열린 육아센터

- ‘아가야’는 YMCA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육서비스로 2006년 6월부터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지원으로 SK에너지와 시작한 사업임. ‘아가야’사업은 돌봄 제공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에게는 고용을 창출하는 양가적 의미를 지님.
- ‘아가야’는 2009년 통합 돌봄을 지원하고자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변화하여 23개까지 확장되었으나 현재는 전국에 9개의 ‘아가야’센터가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운영 중임. ‘아가야’는 가정에 보육인력을 파견하는 파견보육과 보육공간을 마련

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 열린육아센터로 구분하여 운영함.

- ‘아가야’의 시간제 열린육아센터는 주부가 자기계발과 사회참여가 필요할 때, 친구모임에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을 때,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에서 아이가 즐겁게 머무를 장소가 없을 때,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도 아이의 놀이 공간이 필요할 때, 재택근무, 야근, 출장, 몸이 아플 때 등 부모의 다양한 상황과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간 보육을 추구함.

2) 운영현황

가) ‘아가야’ 시간제 열린 육아센터의 운영과 이용방법

- ‘아가야’의 시간제 열린 육아센터 운영과 이용방법은 <표 IV-2-7>과 같음.

<표 IV-2-7> ‘아가야’ 시간제 열린 육아센터 운영과 이용방법

구분	내용
설립목적	- 취업취약계층 여성에게 일자리 지원 - 보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유아, 아동에게 안전하고 전문적인 돌봄 제공 - 부모에게 자유롭고 편안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의 공공성 강화 - 돌봄을 기반으로 한 사업의 다각화와 전문화를 통해 자립운영의 기틀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지향
지원	- 노동부의 일자리 창출 지원금으로 교사 임금의 50% 지원
이용방법	- 온라인 통한 예약, 전화 예약, 현장 접수 가능
입소연령	- 20개월 이상 영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까지 가능함
이용시간	- 8시 ~ 20시 (월~토)
시간제한	- 없음
비용	- 공간보육의 경우: 2500원~ 5000원(1시간 기준: 지역과 연령에 따른 차이) 차상위 계층 자녀는 할인혜택 제공함
준비서류	- 등록 시에 이용신청서 작성
기 타	- ‘아가야’의 시간제 열린육아센터는 연령통합 교육 프로그램 실시함. - 영유아대상의 자연친화적 환경구성과 교구를 사용하며, 건강한 먹을거리를 강조함. 맞벌이 가정을 위한 유치원 어린이집 방학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함. 초기적응상담을 통해 이용초기 아동에 대한 ‘아가야’공간 적응 노력 강화하도록 하며, 세시풍속, 전래놀이 등 생태활동과 극놀이, 공동체 놀이 등 몸놀이와 예술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함.

나) '아가야'의 시간제 열린 육아센터 이용현황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서울 '아가야'의 연도별 이용 현황은 <표 IV-2-8>과 같음.
- 보육 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는 파견 돌봄보다 이용자가 열린육아센터로 찾아와 이용하는 공간 돌봄의 이용이 더 많음.
 - 해마다 '아가야'의 시간제 일시보육 이용이 증가하는 이용 통계를 통해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함. 공간 돌봄의 경우 2007년 이용아동 수가 1,296명에서 2010년 4,589명으로 3.5배로 증가하였음.

<표 IV-2-8> '아가야' 시간제 열린 육아센터 연도별 이용현황

단위: 명

년도	공간돌봄 인원	파견돌봄 인원	합계	비고
2006년	624	271	895	6개월
2007년	1,296	1,078	2,374	12개월
2008년	2,188	792	2,980	"
2009년	4,298	1,570	5,868	"
2010년	4,589	2,341	6,930	12개월

- '아가야' 시간제 열린 육아센터의 이용아동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4세 아동의 이용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초등학생, 5세, 6세와 7세, 24개월 이하의 순서로 나타남(표 IV-2-9 참고).

<표 IV-2-9> 2010년도 '아가야' 시간제 열린 육아센터 공간보육 연령별 이용현황

단위: 명

유료 이용인원	공간보육					합계
	24개월 이하	4세	5세	6~7세	초등	
전월까지 누계	264	1,772	509	375	1,234	4,154
당월 이용인원	46	220	17	33	119	435
합 계	310	1,992	526	408	1,353	4,589

- 서울 '아가야' 센터에서 센터장과의 심층면접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노동부의 일자리 창출 지원금으로 교사 임금의 50% 지원받아 운영 중임.
 - '아가야'는 돌봄을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범을 제공하며, 목적의 순수성을

유지하려 노력함.

- 시간제 보육이용에 지역별로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차이를 보임. 대도시는 토요일 시간제 보육이 감소하여 주 5일 근무가 보편화됨을 보여주나, 중소도시는 토요일에 1.5배~2배 정도 증가함.
- ‘아가야’는 보육료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 있는 부모들이 이용하는 상황임.
- ‘아가야’는 20개월~4세 유아들이 주 이용대상임. 어린이집에 가기 전에 적응을 위해 오는 경우(엄마와 떨어지는 경험/또래와 어울리는 경험)나 어린이집에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오기도 함. 열린 공간의 개념으로 아이와 함께 부모가 머무는 것도 허용함.
- 이용아동의 2/3는 고정이용 아동이며, 1/3은 처음 또는 비정기적 이용 아동임. 다양한 연령 아동이 이용하며, 교사 대 아동비율은 1:3으로 유지함.
- 돌봄에 주력함.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운영하나 이용 아동이 원하지 않을 경우 참여를 권하지 않음. 가능한 한 가정과 같은 분위기 마련하려함. 비자극적 환경, 산책, 지렁이 키우기, 마당놀이 등 통해서 정서함양과 감수성을 기르도록 배려함.
- 혼합 연령으로 운영함. 아동이 혼합연령 상황에서 리더십을 키우기도 하고 대리 학습이 일어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연령에서의 경험을 하게 됨.

3) 문제점

가) 보육료 수입으로 운영이 어려움

- ☐ 공간 유지비용과 교사 인건비 등을 고려할 때 시간제 등록비용으로 유지하기는 힘든 상황임. 정규 보육 부적응 아동이나 시간제 일시보육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대안적 접근이 필요함.

나)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운영되어 보육사업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움

- ☐ ‘아가야’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가 받은 어린이집이 아니므로 구청 등의 지자체나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아 보육의 질적 측면의 제고가 어려움.

마. 시간제 일시보육 수요자와 공급자의 요구

-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의 보육품질 개선을 위한 모형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보육 서비스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또한 잠재적인 보육 수요자의 이용확대를 위해 보다 정교한 시행 계획과 전략 모색이 필요함.
- 이상에 살펴본 서울특별시의 다양한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 유형 조사에 기초하여 수요자와 공급자의 어려움을 도출함(표 IV-2-10 참고).
- －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의 수요자와 공급자의 요구를 중심으로 각각의 대안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모형 마련의 기초가 되는 중심점을 찾고자 함.

〈표 IV-2-10〉 시간제 일시보육 수요자와 공급자의 요구와 고려되는 대안

수요자	공급자	대안
- 갑자기 어디에 맡겨야 할지 모르겠음	- 일시보육의 수요예측이 어려움.	- 부모에게 일시보육 서비스와 이용 가능한 기관에 대한 홍보 - 일시보육 이용에 대한 지역별, 월별, 시간대별 통계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수요와 이용경향 예측
- 긴급한 일시보육 상황에 이용이 어려움	- 갑작스런 일시 보육을 위해 정원을 예상해 비워 둘 수 없음. - 정원이 외의 아동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운영 기관에서는 정원에 비례하는 일정 비율을 설정(5~10%)하여 일시보육위한 정원의 융통성을 부여하는 방법 - 일시보육 전담어린이집의 설치
- 예약제 쉽지 않음	- 예약 후 이용하지 않는 경우의 손실이 있음.	- 예약제의 효율성 증진 위해 예약 시점에 따른 차등 요금제와 선불제 실시
- 영영아나 영아는 맡기기가 어려움	- 영아를 맡을 수 있는 정원은 늘 채워있는 상태임(대기자도 많은 상황).	- 아이돌보미 제도의 홍보와 연계의 활성화 - 일시보육 전담어린이집에 영아를 위한 공간과 교사배치
	- 영아는 안전과 돌연사 같은 염려와 사고의 책임 부담	- 병원(의원)과의 긴급연락망 구성 - 보험 등을 이용해 사고 상황에 대한 준비
	- 일시보육 위한 교사: 아동의 비율은 1:3 이나 영아를 돌보기 위해서는 교사:아동 비율이 고려되어야 함.	- 일시보육 이용 아동의 연령을 반영한 교사:아동 비율과 지원 기준 조절
	- 일시보육 이용 아동의 연령에 따른 보육료 차별화	- 일시 보육료의 연령별 차별화 고려

(표 IV-2-10 계속)

수요자	공급자	대안
- 낮은 장소에서 아동이 부모와 떨어지기 힘들.	- 낮은 상황과 장소, 사람을 만나 적응의 어려움 보이는 아동을 보육하기 힘들. 경력이 많고 상호작용을 잘할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함.	- 일시보육 전용 공간과 경험 많은 일시보육 전담 교사 확보
-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함.		- 이용자의 접근성 고려한 기관의 설치(지하철 역사의 유휴공간이나 통폐합된 동사무소 공간을 일시보육 장소로 활용) - 교통편의 제공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원함.	- 기존 기관에서는 전용공간확보가 어려워 교사실이나 상담실 등을 일시보육 장소로 전용하여 사용함.	- 가정과 같은 분위기 형성위한 일시보육 어린이집 기준 제시 - 전용공간 또는 전담어린이집 마련
	- 아동의 건강, 병력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	- 아기 수첩 등을 활용하는 방법. 일시보육 등록 시 아동이 이용하는 병의원 정보를 기록하도록 함.
	- 일시보육 전담교사를 구하기 힘듦.	- 일시보육 전담교사 풀을 구성
	- 일시보육교사의 보육경력이 인정되지 않음.	- 일시보육 전담기관을 두어 전담교사의 경력을 산출 가능하게 하는 방법 모색
	- 일시로 보육되는 아동이 부적응, 건강 등의 측면에서 기존 보육 중인 아동들에게 영향을 미침.	- 일시보육 아동과 정규보육 아동의 분리 보육 방법 - 전용공간과 교사를 배치
	- 일시보육의 경우 혼합 연령으로 구성되어 보육 프로그램 운영이 힘들.	- 전담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연령별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할 것임.

3. 시간제 일시보육 운영 모형

- ☐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다음 세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그 방법을 모색함.

- 첫째, 시간제 일시보육의 수요를 고려하여 기존 어린이집의 운용에 변화를 주는 방법
- 둘째, 어린이집 이외의 기관으로 현재 시간제 일시보육 제공하고 있는 기관의 활성화를 고려하는 방법
- 셋째, 시간제 일시보육을 위한 전담어린이집을 신규 설치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

기존 어린이집 운영변화	모형1: 권역별 시간제 일시보육 거점 어린이집 지정
	모형2: 시간제 일시보육을 위한 정원의 융통성 부여
어린이집 이외 기관 활성화	모형3: 영유아플라자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 확대
	모형4: 시간제 일시보육을 실시하는 사회적 기업 활성화
신규기관 설치 및 제도 마련	모형5: 시간제 일시보육을 위한 전담어린이집의 신규설치
	모형6: 시간제 일시보육을 위한 전담 가정 제도 도입
	모형7: 24시간 시간제 일시보육을 위한 기관 신규설치

[그림 IV-3-1] 시간제 일시보육 모형 요약

가. 기존 어린이집을 이용한 시간제 일시보육

(시간제 일시보육의 수요와 서비스 이용 빈도를 고려한 접근)

- ☐ 기존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법은 일시보육의 수요를 감안하여 두 가지의 차별화된 접근이 고려됨.
- 시간제 일시보육에 대한 수요와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에는 권역별로 시간제 일시보육을 위한 거점 어린이집을 지정하고 지원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효과적으로 판단됨.
 - 또한 시간제 일시보육 수요가 매우 불규칙하고 이용 빈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기존 어린이집의 정원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1) 모형 1: 권역별 시간제 일시보육 거점 어린이집 지정
(시간제 일시보육의 수요와 빈도가 높은 지역에 적합)

가) 모형의 내용

- ☐ 시간제 일시보육 이용이 활발한 지역에는 수집된 통계를 토대로 수요를 예측하고, 일정 권역별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택하여 시간제 일시보육 전담 거점 어린이집을 지정하는 방법임.
 - 즉, 구나 동을 중심으로 1~2곳의 어린이집을 정하고 시간제 일시보육을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임.
- ☐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를 위한 전담교사, 전용공간 설치 등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임. 혼합형으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의 적응상의 어려움이 다른 기존 정규보육 이용 아동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기존 국공립어린이집에 별도의 분리된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전담교사를 두는 방법임.
- ☐ 긴급한 일시보육, 영영아와 영아를 위한 일시보육 등 그동안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가 어려워했던 상황에 대응 가능한 방법임. 운영 중인 어린이집을 지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비해 부담이 적고, 지원의 효율성이 개선 가능함. 이는 초기에는 이용자의 '접근성'이 문제로 고려되나 장기적으로는 시간제 일시보육이 필요한 아동이 자연스럽게 거점어린이집으로 모여 그 이용의 활성화가 기대됨.
- ☐ 아동 연령
 - 이용 아동의 연령은 생후 3개월에서 만 5세까지로 함. 지정된 거점 어린이집 안에 시간제 일시보육 전담교실에서 혼합연령으로 반을 구성함.
 - 시간제 일시보육의 수요가 충분할 경우는 0~2세, 3~5세로 구분 설치함.
 - － 0~2세 영아반의 구성: 아동 3인당 1명의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영아를 위한 환경을 마련함.
 - － 3~5세 유아반의 구성: 아동 5명 당 1명의 전담교사 배치함.
 - 권역별 시간제 일시보육 거점 어린이집을 지정할 때 기관자체를 영아 전담과 유아 전담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음.

□ 이용시간 및 이용 방법

- 긴급한 일시보육 서비스의 필요 시 이용가능 하도록 고려함.
- 시간제 일시보육의 서비스 시간은 월요일~토요일 7시 30분~21시 30분까지 운영을 원칙으로 함. 1회 이용 시간을 최대 4시간으로 정함. 부득이한 경우 연장 이용이 가능함.
- 이용예약은 인터넷, 전화, 당일 방문의 방법을 모두 가능하도록 함.
 - － 인터넷을 통한 예약: 보육포털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회원가입한 뒤에 예약하는 방법임.
 - － 전화예약: 전담 어린이집으로 직접 전화하거나 보육정보센터, 다산 120센터 등을 이용해 사전예약 하는 방법임.
 - － 당일방문예약: 긴급하게 이용할 경우에도 거점 어린이집에 당일 방문하여 이용 가능 하도록 함.
- 비용은 후불제로 하원 시 정산함. 시간 당 3,000원이 거의 표준으로 책정된 상황임.
- 이용 아동의 신상과 건강에 대한 정보수집이 필요함.
 - － 생활기록부/응급처치 동의서/귀가동의서(예약 시 기록 또는 현장에서 기록)
 - － 주민등록등본 1부(긴급보육 시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대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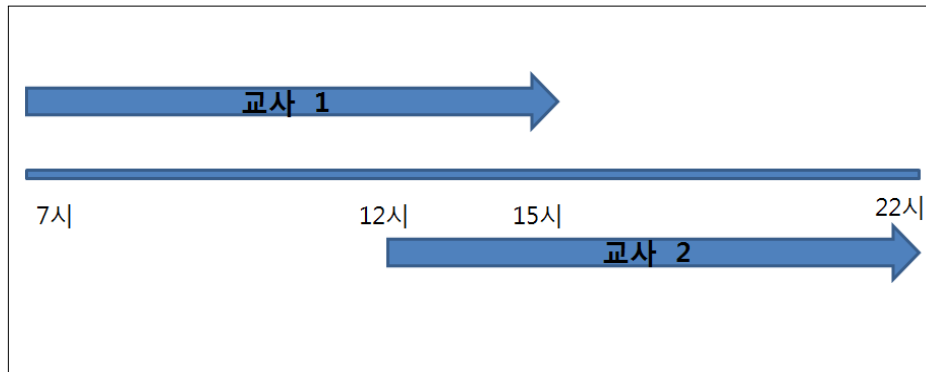
□ 보육 프로그램

- 시간제 일시보육을 위한 보육 프로그램은 교육 경험을 강조하기보다는 이용아동이 신체적 정서적 안정감을 경험하도록 하는데 주력해야함.
- 표준보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보다는 혼합 연령에 적절한 자유선택활동 중심으로 개별 아동이 흥미에 맞는 놀이를 선택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함이 필요함.
- 이용아동의 수가 충분할 경우 연령별로 프로그램을 특성화 가능함.
 - － 영아를 위한 감각 경험 중심의 놀이 환경 구성
 - － 유아를 위한 자유놀이 환경 구성

□ 교사 및 기타 인력 관리

- 교사의 주당 40시간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전담교사의 운영을 편성함.
 - － 월요일~금요일까지 두 명의 교사가 교대하나 이용 아동 수가 가장 많을 것으

로 예상되는 시간에 두 교사가 함께 근무하는 방법. 토요일에는 토요 전담교사가 매주 근무함.



[그림 IV-3-2] 시간제 일시보육 교사 근무시간 운영 모형

□ 예산 지원

- 시간제 일시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100% 지원함.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신나리 외, 2009)에 따르면 일시보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중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가장 원하고 있었음.
- 시간제 일시보육 전담교실 설치비용을 지원함. 시간제 일시보육 제공을 위한 교실마련 위한 기능 보강비를 지원함.

나) 장점

□ 시간제 일시보육 위한 지원의 효율성이 증대됨.

- 시간제 일시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이 모여 양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교사나 기관 지원에의 효율성이 증대됨.

□ 기존 어린이집의 이용으로 기관 투자에 대한 비용 절감 가능함.

- 국공립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거점을 지정하고 기관의 설비를 보충함으로 완전히 새로운 기관을 설치하는 것 보다 비용절감이 가능하여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법으로 고려됨.

□ 영영아와 영아의 일시보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방법이 마련될 수 있음.

- 기존에 설정된 정원 안에서 소수가 이용 가능했고, 영아의 경우 현실적으로 이용이 어려웠던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를 전담 어린이집을 지정하고 정원을 상시 확보함을 통해 영영아와 영아의 시간제 일시보육 이용의 문이 넓어질 것임.
- 시간제 일시보육 이용 아동이 많을 경우에는 연령별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음.
 - 이용하는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혼합연령이 아닌 연령별 반 구성을 기대할 수 있고 연령에 적절한 환경과 프로그램의 제공이 가능함.
- 교사수급의 어려움 완화 효과가 기대됨.
 - 시간제 일시보육 전담교사로 배치됨으로 시간제 보육교사가 지닌 고용의 불안정성을 해소 가능하고, 어린이집에서는 교사의 수급이 수월해질 것임.

다) 단점

- 가까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보다는 시간제 일시보육 이용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음. 이 문제는 시간제 일시보육 전담 어린이집의 홍보가 확산되면 점진적으로 해결되리라 예상됨.
- 전용 공간과 전담 교사가 있으나 시간제 일시보육 아동의 부적응이나 건강의 문제가 정규보육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움.

2) 모형 2: 시간제 일시보육 위한 어린이집 정원에 융통성 부여 (시간제 일시보육의 수요와 빈도가 낮은 지역에 적합)

가) 모형의 내용

- 시간제 일시보육의 수요가 일정하지 않지만 긴급한 일시보육의 수요는 늘 발생할 수 있음. 갑작스런 일시 보육이나 수요예측이 어려운 일시보육을 위해 정원을 예상해 비워 둘 수 없음을 고려한 방법임.
- 시간제 일시보육 수요가 매우 불규칙하고 이용 빈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기존 어린이집의 정원을 융통성 있게 운용하는 방안으로,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에 인가된 정원의 5~10% 정도를 일시보육을 위해 더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임. 대안적 운영방안으로 3시 30분 이후에 집으로 돌아간 정원만큼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 시간제 일시보육을 위한 전담교실이나 전담 교사가 없이 시간제 일시보육과 정규보육이 함께 제공되는 형태임.
- ☐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를 지원하기 희망하는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고 보육포털 서비스 등을 통해 이용자와 연결하는 방법임. 현재 서울형 어린이집의 경우처럼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원하는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고 기관의 규모를 반영하여 시간제 일시보육 위한 초과가능 정원을 산정해야함.
- ☐ 아동 연령
 -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에서 아동의 연령에 맞는 반으로 통합되어 보육되는 형태임. 어린이집의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혼합연령으로 구성될 수도 있음.
- ☐ 이용시간 및 이용 방법
 -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에 맞추어 이용 가능함.
 - 인터넷, 전화, 당일 방문의 방법을 모두 가능하도록 함.
 - 비용은 후불제로 데려갈 때 정산함.
 - 이용 아동의 신상과 건강에 대한 정보수집이 필요함.
- ☐ 보육 프로그램
 -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보육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는 형태임.
- ☐ 교사 및 기타 인력 관리
 - 시간제 일시보육 전담교사가 없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담당함. 이 경우 교사에게 정규보육 아동의 일상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시간제 일시보육 아동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됨.
- ☐ 예산
 - 시간제 보육료 시간당 3,000원이 일시보육을 수용하는 부담에 비해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간제 일시보육 이용자의 수에 비례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음.

나) 장점

- ☐ 시간제 일시보육을 위한 융통성이 부여된 정원이 있어 갑작스런 일시보육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음.
- ☐ 시간제 일시보육 이용의 접근성이 좋음. 집 가까이에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음.
- ☐ 기존 어린이집을 이용함으로써 기관 투자에 대한 비용절감이 가능함.

다) 단점

- ☐ 보육정원의 융통성 부여로 인해 보육의 질적 저하 가능성이 제기됨.
 - 교사가 담당하는 아동의 수가 증가함. 상시 시간제 일시보육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는 다른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 혼합형으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규보육 아동과 시간제 일시보육 아동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이 예상됨.
 - 낮선 아동의 등장으로 정규보육 아동의 안정감과 집중을 해칠 수 있음.
 -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의 적응이 어려움.
- ☐ 시간제 일시보육 아동의 부적응이나 건강의 문제가 정규보육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나. 어린이집 이외의 기관을 이용한 시간제 일시보육

- ☐ 현재 시간제 일시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이외 기관인 지자체 보육정보센터의 영유아플라자, 육아지원센터 더 나아가 시간제 일시보육 위한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시간제 보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음.
 - 어린이집은 아니지만 이미 시간제 일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이용하여 운영을 지원,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신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보다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됨.

1) 모형 3: 보육정보센터의 영유아플라자/육아지원센터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 확대

- ☐ 지자체별(구 단위)로 운영 중인 육아지원기관의 시간제 일시보육 이용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법임. 현재 지자체 단위로 보육정보센터의 영유아플라자 또는 육아지원센터 시간제 일시보육의 운영 유무와 그 이용시간에는 차이가 있음.

- 영유아플라자 또는 육아지원센터 등에서 제공되는 시간제 일시보육의 정원과 이용시간 등을 늘려 그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임. 영유아플라자 또는 육아지원센터의 위치가 부모가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좋을 수 있음.

가) 모형의 내용

- ☐ 지자체 단위로 영유아플라자 또는 육아지원센터 시간제 일시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지 않는 구에는 시간제 일시보육 어린이집의 설치를 권유함(서울특별시 에 구 단위로 설립된 총 20개의 보육정보센터 중 현재 11곳에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 중임).
- ☐ 시간제 일시보육 정원을 확대하는 방법을 모색함. 영유아플라자에서 시간제 일시보육이 제공되고 있음을 홍보하며, 현재의 정원이 매우 적은 곳은 그 정원을 늘리는 방법을 고려함.
- ☐ 운영시간의 확대 방안을 모색함. 현행 영유아플라자 또는 육아지원센터 시간제 일시 보육의 이용시간은 매우 제한적이므로 이용가능 시간을 확대하는 방법임.
- ☐ 현재 시간제 일시보육을 위한 전용공간에 대한 안전 및 기관 기준에 대한 제고가 필요함. 영유아플라자와 육아지원센터의 공간이 보육을 위해 처음부터 고려된 공간이 아닌 경우가 많음을 감안할 때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을 위한 기준 마련이 요구됨.
- ☐ 아동 연령
 - 현재는 대부분의 영유아플라자는 혼합연령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용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활성화되면 0~2세, 3~5세로 구분 가능함.
 - 공간이 영아를 위한 보육환경으로 적절하지 못 할 수 있으므로, 영아의 이용 위한 환경적 보완이 필요함.
- ☐ 이용시간 및 이용 방법
 - 운영시간의 확대 방안을 모색함. 현재 영유아플라자의 운영시간은 9시 30분~17시까지가 가장 많음.

- 인터넷, 전화, 당일 방문의 방법을 모두 가능하도록 함.
- 비용은 후불제로 데려갈 때 정산함.
- 이용 아동의 신상과 건강에 대한 정보수집이 필요함.

☐ 보육 프로그램

- 이용아동이 신체적, 정서적 안정감을 경험하도록 하는데 주력해야함.
- 표준보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보다는 혼합 연령에 적절한 자유선택활동 중심으로 개별 아동이 흥미에 맞는 놀이를 선택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구성이 필요함.

☐ 교사 및 기타 인력 관리

- 영유아플라자의 시간제 일시보육 전담교사가 없는 경우 전담교사의 확보가 전용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전용공간의 확보가 필요함.

☐ 예산

- 중앙정부의 예산보다는 지자체의 예산으로 지원 가능할 수 있음.
- 시설 지원금을 지급함. 영유아플라자가 대학 도서관이나, 보육정보센터의 일부 공간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 장소로 적절한 요건을 갖추도록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기능 보강을 위한 시설비를 지원함.
- 전담교사 인건비를 지원함. 시간당 3,000원의 보육이용료로 운영이 어려울 것임.

나) 장점

- ☐ 이미 운영 중인 시간제 일시보육 운영을 개선하고 지원하는 방안으로 확보된 공간이 있음.
- ☐ 기존 기관의 이용으로 시설 투자에 대한 비용 절감 가능함.

다) 단점

- ☐ 영유아플라자와 육아지원센터의 시간제 일시보육 공간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 ☐ 지자체별 특성을 파악하고 그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접근이 고려되어야함. 예를 들어 시간제 일시보육 수요가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의 운용에 차이를 두어야 함.

2) 모형 4: 시간제 일시보육을 실시하는 사회적 기업 활성화

가) 모형의 내용

- ☐ 현재 시간제 일시보육을 위한 사회적 기업인 아가야 등과 같은 기관의 활성화를 통해 일시보육의 수요를 보조적으로 충족함. 공간 유지비용과 교사 인건비 등을 고려할 때 시간제 등록비용으로 유지하기는 힘든 상황임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원을 함으로 '아가야'가 지닌 장점을 살린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를 활성화 하 고자 하는 방법임.
- ☐ 긴급한, 또는 주기적인 시간제 일시보육 뿐만 아니라 정규 어린이집 입소를 대기, 또는 부적응 문제로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아가야' 등을 통해 정규 보육 부적응 아동이나 시간제 일시보육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대안적 접근이 필요함.
- ☐ 시간제 일시보육의 보육료 수입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임.
- ☐ 현재 일시보육을 위한 전용공간에 대한 안전 및 시설 기준에 대한 제고가 필요함.
- ☐ 아동 연령
 - 현재 '아가야'는 혼합연령으로 운영되고 있음. 일정 규모까지는 혼합반 운영이 장점이 있음.

나) 장점

- ☐ 이미 운영 중인 시간제 일시보육 운영을 개선하는 방안이므로 확보된 공간이 있음.
- ☐ 시간제 일시보육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일자리 창출 기 능도 함께 도모할 수 있음.

다) 단점

- ☐ 보육 서비스의 품질 관리가 어려움. 사회적 기업으로 인가 받은 '아가야'는 어린 이집이 아니므로 지자체나 보건 복지부의 어린이집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아 보 육의 질적 측면의 평가와 규제가 어려움.
- ☐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지만 보육 서비스를 통한 이윤의 추구가 사회 정서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다. 시간제 일시보육 전담어린이집 신규 설치/지정 (시간제 일시보육의 문제점 개선에 초점을 둔 접근)

- ☐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에 추가로 시간제 일시보육을 운영하기가 어렵고 부모들의 경우에는 집으로 와서 돌보아주는 방법을 선호하지 않으므로 시간제 전담 어린이집을 신규로 마련하는 방법을 통한 시간제 일시보육 품질의 개선을 살펴봄.
- 수요자와 공급자의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준비된 시간제 일시보육 전담이라 지칭될 수 있는 어린이집의 신규설치 방법과 소규모 시간제 일시보육 전담 가정 제도 도입을 통해 시간제 일시보육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이 가능함.

1) 모형 5: 시간제 일시보육을 위한 전담 어린이집의 설치

가) 모형의 내용

- ☐ 시간제 일시보육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의 요구를 담은 새로운 전담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장소를 마련하고 전담교사를 확보하여 운영하는 방법임.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동사무소가 통폐합된 공간이나, 지하철 역사의 유휴 공간, 초등학교의 빈 교실 활용하는 방법 등이 고려됨.
- ☐ 갑작스런 일시보육 뿐만 아니라,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취업 어머니뿐만 아니라 미취업 어머니를 위해 시간제 일시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 일시보육의 확대가 필요함.
- ☐ 처음 계획 시에 영영아와 영아를 위한 시간제 일시보육이 가능하도록 배려함으로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음.
- ☐ 아동 연령
 - 이용 아동의 연령은 생후 3개월에서 만 5세까지로 함. 계획 단계부터 영아(0~2세)와 유아(3~5세)를 구분하여 구성함.
 - 0~2세 영아반의 구성: 아동 3인당 1명의 전담교사를 배치함. 영아를 위한 전용 공간을 마련함.
 - 3~5세 유아반의 구성: 아동 5명 당 1명의 전담교사 배치함.

- 이용 아동의 연령을 고려한 환경구성과 프로그램의 계획과 운용이 가능함.

□ 이용시간 및 이용 방법

- 시간제 일시보육의 서비스 시간은 정규보육 시간과 같은 월요일~토요일 7시 30분~21시 30분으로 운영을 원칙으로 함.
- 인터넷, 전화, 당일 방문의 방법을 모두 가능하도록 함.
 - － 인터넷을 통한 예약: 보육포털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회원가입한 뒤에 예약하는 방법임.
 - － 전화예약: 전담 어린이집으로 전화하거나 보육정보센터, 다산 120센터 등을 이용해 사전 예약하는 방법임.
 - － 당일방문예약: 긴급하게 이용할 경우에도 당일 방문하여 이용가능 하도록 함.
- 비용은 후불제로 하원 시 정산함. 보육료는 시간 당 3,000원임.
- 이용 아동의 신상과 건강에 대한 정보수집이 필요함.
 - － 생활기록부/응급처치 동의서/귀가동의서(예약 시 기록 또는 현장에서 기록)
 - － 주민등록등본 1부(긴급보육 시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대체)

□ 보육 프로그램

- 시간제 일시보육을 위한 보육 프로그램을 영아반과 유아반으로 구분하여 운영함. 교육 경험을 강조하기보다는 이용아동이 신체적 정서적 안정감을 경험하도록 하는데 주력해야 함.
 - － 영아를 위한 감각 경험 중심의 놀이 환경 구성
 - － 유아를 위한 자유놀이 환경 구성

□ 교사 및 기타 인력 관리

- 교사의 운용은 모형 1과 같음.

□ 예산 (인건비/운영비 등)

- 시간제 일시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 시간제 일시보육 전담교실 설치비용

나) 장점

- ☐ 시간제 일시보육을 정규보육과 혼합 운영함으로 비롯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배려와 해결이 가능함.
- ☐ 시간제 일시보육 이용 아동의 증가가 예상됨.
- ☐ 기존의 적은 수요에 대비한 산발적 지원 형태보다 오히려 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음.
- ☐ 전용 공간과 전담 교사의 확보로 시간제 일시보육의 질적 향상이 기대됨.
- ☐ 충분한 시간제 일시보육 아동 수의 확보로 연령별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할 것임. 특히 영영아와 영아를 위한 시간제 일시보육 제공이 가능할 것임.
- ☐ 시간제 일시보육 교사의 확보와 충원이 가능함. 안정된 고용을 창출할 수 있어서 우수한 교사의 확보가 가능하게 되고, 교사의 경력 산정의 불평등도 해소 가능함.
- ☐ 전담 어린이집이므로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적극적 대안 마련이 가능함. 설치 시 안전을 위한 기준을 충족하고, 초등학교의 빈 교실 활용할 경우는 간호 교사와 영양사, 조리사 등의 공동 이용이 가능할 수 있음.

다) 단점

- ☐ 이용자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음.
- ☐ 기관 확보를 위한 예산이 필요함.
- ☐ 시간제 일시보육 전담제와 새로운 기관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2) 모형 6: 시간제 일시보육을 위한 전담 가정 제도 도입

가) 모형의 내용

- ☐ 보육 수요자와 공급자의 요구를 담은 새로운 시간제 보육제도의 도입이 고려됨.
 -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에서는 정원 부족, 건강과 안전, 정규보육 아동에의 영향 등을 이유로 시간제 일시보육을 원하지 않는 상황임.
 - 아이돌보미 제도의 경우는 집으로 돌보미 교사가 파견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부모들이 있음.

- ‘아가야’ 같은 민간 시간제 일시보육 전담 어린이집의 경우, 극히 소수의 장소가 공간형 시간제 일시보육을 제공하고 있어 이용의 접근성이 떨어짐.
- 시간제 일시보육의 필요와 지역의 육아의 경험이 있는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확보를 연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지역 주민 센터가 그 중간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 가정에서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원하는 지원자의 보육교사 자격 소지여부와 경력, 품성, 가정의 보육환경으로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시간제 일시보육 전담 가정을 지원받고 보육포털을 통해 연결하는 방법임. 전담 지원자는 자가에서 소규모의 시간제 일시보육을 제공하는 것임.
 - 이는 보육 서비스 제공자의 자가에서 돌봄을 제공하므로 시간제 일시보육 수요자의 가정으로 방문하는 아이돌보미 제도와 구분됨.
 - 이는 보육 서비스 제공자가 최대 2명의 영유아를 돌봄으로 소규모 가정어린이집과 구분됨.
- 지원자의 보육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경력, 품성, 가정의 보육환경으로의 적절성 확인을 위한 장치가 필요함.
 - 경력은 보육교사 자격증(3급까지)의 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 시간제 일시보육 특성과 영아보육에 대한 내용을 담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이수하도록 함.
 - 보육 서비스 제공 가정의 보육환경으로의 적절성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심사 후 인가하는 방법임.
 - 아동의 안전과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는 가까운 병의원의 정보와 갑자기 발생하는 사고에 대처하는 응급 교육이 요구됨.
- 아동 연령
 - 아동의 연령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나 보육교사 1인이 자가에서 제공하는 보육 형태이므로 최대 두 명까지 보육 아동 수를 제한함이 고려됨. 특히 영아의 보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이 필요함.
- 이용시간 및 이용 방법

- 전화를 이용한 사전 예약 후 이용하는 방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사와 이용 희망자와의 선약을 기초로 함.
- 이용 아동의 신상과 건강에 대한 정보수집이 필요함.
- ☐ 보육 프로그램
 - 정해진 프로그램의 운영보다는 돌봄에 중점을 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
- ☐ 현재 시간당 3,000원인 시간제 일시보육료에 어느 정도 융통성을 부여함이 바람직함(상한선 설정).
 - 영아와 유아 사이 차등 보육료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 예산
 - 전담가정 보육교사 신청자가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는데 예산이 소요될 것임.

나) 장점

- ☐ 가정과 가까운 이웃의 보육자 가정을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함.
- ☐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의 제공이 가능함. 자신의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일자리를 갖게 되는 것임.
- ☐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이용하므로 아동의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음.

다) 단점

- ☐ 보육의 질적 부분에 대한 진단과 점검이 어려움.
- ☐ 보육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사이의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중재가 어려움.
- ☐ 아동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대비와 책임의 문제가 대두됨.
- ☐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의 반발이 있을 수 있음.

3) 모형 7: 24시간 시간제 일시보육을 위한 기관 신규 설치

가) 모형의 내용

- ☐ 비정형적, 비정기적 일시보육의 특성상 24시간 운영하는 기관의 필요성 대두됨.

- 병원 입원, 상을 당한 경우처럼 피치 못하게 발생하는 야간 일시보육의 상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
 - 다자녀 가정의 경우 한 자녀가 아파서 입원하거나 부모의 갑작스런 부재 상황 시 다른 자녀를 돌보기 어렵고, 한 부모 가정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어려움을 지님.
- 이런 필요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형병원 내에 또는 그 근접지역에 일정공간을 확보하여 24시간 시간제 일시보육을 제공하는 모델임. 식사의 제공을 위해 병원의 영양사, 조리사 등의 공동이용이 가능할 수 있음.
- 아동 연령
- 이용 아동의 연령은 생후 3개월에서 만 5세까지를 원칙으로 함. 경우에 따라서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보육 연령 확대의 필요성도 고려됨.
 - 보육 대상 영유아를 혼합연령으로 보육하는 형태로 함. 충분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령을 기준으로 한 분반이 가능함.
- 이용시간 및 이용 방법
- 특수 상황으로 시간제 일시보육의 서비스 시간은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함.
 - 인터넷, 전화, 당일 방문의 방법이 모두 가능하도록 함.
 - 비용은 후불제로 데려갈 때 정산함. 보육료는 시간 당 3,000원임.
 - 야간 보육을 위한 이용 아동의 신상과 건강에 대한 정보수집 필요성이 증가함.
 - － 생활기록부/응급처치 동의서/귀가동의서(예약 시 기록 또는 현장에서 기록)
 - － 주민등록등본 1부(긴급보육 시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대체)
- 보육 프로그램
- 규칙적인 이용이 예상되기보다는 급박한 일시보육이므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돌봄을 제공하는데 주력함.
 - 안전과 건강에 중점 두고 부모로부터 일시 분리되어 낯선 환경에서의 정서적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배려가 필요함.
 - 환경 구성에 잠잘 수 있는 공간과 용품이 비치되어야함. 가정과 유사한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공간구성에 주력해야 함.
 - 24시간 보육을 위해서는 일시보육이라도 영유아에게 식사를 제공해야 함. 이는

병원의 식당과 협력함이 바람직해보임.

☐ 교사 및 기타 인력 관리

- 교사의 운용은 1일 3교대 근무로 설계함.
- 예시) 교사 1(06시~14시), 교사 2(14시~22시), 교사 3(22시~06시)
- 수요의 예측이 어려우나 교사 1인당 영유아의 비율은 1:3으로 함이 바람직함.

☐ 예산(인건비/운영비 등)

- 시간제 일시보육 전담교실 설치비용은 대형병원과 협의하여 조정함. 병원의 홍보와 병원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의 측면이 있으므로 병원과 부담을 공유함이 형평성이 있다고 고려됨.
- 시간제 일시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나) 장점

- ☐ 피치 못 할 급박한 일시보육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음.
- ☐ 대형병원처럼 설치로 인해 유익이 발생하는 대상과 협상을 통해 예산 부담을 줄인 보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수 있음.

다) 단점

- ☐ 이용자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음.
- ☐ 새로운 일시보육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4.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 ☐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적 모형을 제시함과 더불어 그 모형들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을 제언함.

가.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 제공에 대한 홍보 강화

- ☐ 저출산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에서 시간제 일시보육의 활성화는 취업모와 미취업모 모두에게 자녀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경험하게 할 것임.

-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 부모에게 일시보육 서비스 제도 자체와 집 근처의 이용 가능한 기관, 이용방법에 대한 홍보를 통해 시간제 일시보육의 수요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음.
 - 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주민센터, 소아과 등의 시설에의 홍보지 부착.
 - 온라인을 통한 홍보 방법을 이용할 수 있음(영유아가 자녀의 육아정보를 나누는 파워 블로거 등을 통한 홍보도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됨).

나. 시간제 일시보육 등의 보육수요와 이용에 대한 통계 자료의 공유

- 현재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현황을 지역별, 월별, 시간대별, 이용아동의 연령별 이용 특성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에 대한 통계를 자료화함으로써 누적된 자료 공유를 통한 보육 수요와 이용 경향 예측이 가능할 수 있음.
- 누적된 자료 분석을 통해 더 수요자의 보육 필요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적인 보육지원정책을 준비할 수 있음.
- 누적된 자료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보육 지원의 효율성 증진 효과 창출 가능함.

다. 시간제 일시보육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낯선 환경과 사람들 사이에서 일시보육 시 아동이 경험하기 쉬운 불안한 보육경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서지원이 강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수 과제임.
- 시간제 일시보육의 수요가 충분할 경우에는 표준보육과정, 누리과정과의 연계 속에 시간제 일시보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지나치게 구조화된 프로그램보다는 혼합연령 상황에서 가정과 유사한 분위기에 서 자유선택 놀이를 중심으로 한 방법이 적절함.

라. 시간제 일시보육 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 대응 매뉴얼 개발

-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안전에 대한 책임 소재와 대처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마련이 요구됨.

- 시간제 일시보육이 지니는 긴박성, 안전과 건강에 대한 취약성, 부모-교사의 신뢰로운 관계형성의 어려움 등 고려되는 특성들을 반영한 대응 행동 기준의 설정이 필요함.
- 시간제 일시보육은 보육 서비스의 이용시간이 다양함. 2시간 이내, 2시간~4시간 등으로 이용시간을 중심으로 구분하고 그에 맞는 보육 상황 매뉴얼을 개발함이 효과적일 것임.

마. 시간제 일시보육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

- 교사의 처우는 보육 서비스의 질과 긴밀한 관련이 있음. 현재 시간제 일시보육의 이용 빈도가 높지 않은 기관에서는 예약이 있을 시에만 고용되는 시간제 교사가 일시보육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음. 교사에 대한 처우가 열악한 상황임. 이는 시간제 전담 기관을 운영할 경우에는 훨씬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시간제 전담교사를 구하기 상황에 대한 대안이 필요함. 시간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과 함께 시간제 교사 근무경력에 대한 산정 기준이 마련되어야함. 또한 예약제로 운영되는 시간제 보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체보육교사를 지원하듯 경험 많은 시간제 전담교사의 인력풀(pool)을 구성하고 수요 발생 시 기관에 파견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음.

V. 토요보육

1. 토요보육 제도

- 우리나라 법정 보육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하루 12시간씩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72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기존 보육시간 (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기관을 시간 연장 어린이집이라 함. 이 규정에 따라 토요일에 제공되는 토요보육 서비스는 정규 보육시간에 포함됨.
- 토요일은 정규 보육시간에 속하나, 어린이집의 상황에 따라 희망 보육인원이 소수일 경우 오후 운영시간을 줄일 수 있음. 이에 따라 토요일에는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오후 일정시간까지만 소수의 영유아를 돌봐주고 있는 형편임. 토요보육이 정규 보육시간에 포함되므로 토요일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는 추가 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토요보육에 참여하는 영유아가 소수이므로 원장과 보육교사들이 한 두명씩 순환근무를 하고 있음.

2. 토요보육 운영 현황 및 문제점

가. 토요보육 운영현황

- 토요보육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1,236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설문지 조사대상 어린이집과 실제 조사에 참여한 어린이집의 수는 <표 V-2-1>과 같음.
- 전체 조사대상 4,000개원 중 조사에 참여한 어린이집은 1,236개소임. 가정어린이집이 363개소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민간어린이집이 341개소, 법인 어린이집이 212개소, 국공립 어린이집이 198개소, 직장어린이집 111개소, 부모협동 어린이집이 8개소 응답하였음.

〈표 V-2-1〉 조사대상 대비 실제 조사참여 비율

단위: %(개소)

구분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무응답	전체
조사대상	(356)	(376)	(1,252)	(1,722)	(62)	(232)	(-)	(4,000)
조사참여	16.0	17.2	27.6	29.4	0.6	9.0	0.2	100.0 (1,236)

1) 토요보육 운영 여부

- ☐ 토요일에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전체 조사 참여기관의 82.2%(997개소)로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토요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2〉 토요보육 운영 여부

단위: %(개)

구분	계
전체	100.0(1,213)
토요일에 어린이집을 운영함	82.2
토요일에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음	17.8

- ☐ 조사지역별로 토요일 어린이집 운영여부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집단 간 차이가 있었음(표 V-2-3 참조). 지역별로 농어촌에 위치한 어린이집보다는 대도시나 중소도시에서 토요보육을 실시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표 V-2-3〉 지역별 토요보육 운영여부

단위: %(개)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체	χ^2
운영함	40.6	34.6	24.8	100.0(997)	13.68**
운영하지 않음	44.0	42.6	13.4	100.0(216)	(df=2)

** $p < .01$.

- ☐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토요일 어린이집 운영여부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집단 간 차이가 있었음(표 V-2-4 참조). 어린이집 유형별로 국공립, 법인, 직장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보다 민간어린이집의 실시비율이 높았고, 가정어린이집의 실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4〉 어린이집 유형별 토요보육 운영여부

단위: %(개)						
구 분	국공립	법인	민간·부모협동	가정	직장	전체
운영함	19.1	19.7	29.8	25.3	6.1	100.0(1,011)
운영하지 않음	2.3	5.9	21.6	48.2	22.1	100.0(22)
						χ^2 140.38*** (df=4)

*** $p < .001$.

2) 토요보육 운영 시간

- 한 달을 기준으로 몇 회 정도의 토요보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토요보육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어린이집(80.3%)은 매주(4~5회) 토요일에 어린이집을 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평균 한 번만 토요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은 거의 없었음.

〈표 V-2-5〉 토요보육 운영 횟수별 분포

단위: %(개)					
토요보육 월평균 운영횟수	1회	2회	3회	4~5회	전체
분포	3.2	8.1	8.3	80.3	100.0(997)

- 토요보육 운영 횟수별 지역분포를 살펴본 결과, 조사지역에 따라서는 집단 간 차이는 없었음(표 V-2-6 참조).

〈표 V-2-6〉 토요보육 운영 횟수별 지역규모 분포

단위: %(개)				
구 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체
1회	40.6	43.8	15.6	100.0(32)
2회	28.4	44.4	27.2	100.0(81)
3회	31.3	37.3	31.3	100.0(83)
4~5회	42.8	33.0	24.2	100.0(801)
				χ^2 12.35 (df=6)

- 토요보육 운영 횟수별 어린이집 유형분포를 살펴본 결과, 집단 간 차이가 있었음(표 V-2-7 참조).
-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어린이집은 토요일에 4~5회를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가장 많았고, 민간·부모협동 어린이집은 2회, 가정 및 직장어린이집은 1회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가장 많았음. 국공립이나 법인어린이집은 매주 토요일에 어린이집을

열어두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임. 민간어린이집은 초등학교 놀토인 날은 가끔 토요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짐작됨. 가정어린이집은 토요보육을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임.

〈표 V-2-7〉 토요보육 운영 횟수별 어린이집 유형 분포

단위: %(개)

구분	국공립	법인	민간·부모협동	가정	직장	전체	χ^2
1회	3.1	15.6	15.6	40.6	25.0	100.0(32)	
2회	9.6	9.6	34.9	39.8	6.0	100.0(83)	75.39***
3회	10.5	15.1	22.1	38.4	14.0	100.0(86)	(df=12)
4~5회	21.6	21.4	30.6	21.9	4.6	100.0(810)	

*** $p < .001$.

- ☐ 토요일에 어린이집을 열 경우 운영시간이 통상 언제까지인지 조사한 결과, 오후 1시~3시 반까지 운영한다고 응답하는 어린이집이 대부분이었음. 응답 기관 중 17.5%(735개소)은 토요일에도 오후 3시 반 이후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8〉 토요보육 운영시간

단위: %(개)

운영시간	12:00 까지	13:00 까지	14:00 까지	15:30 까지	15:30 이후	전체
분포	6.3	27.3	22.1	26.8	17.5	100.0(4,207)

3) 토요보육 이용 아동

- ☐ 토요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은 시설별로 영아는 평균 1.61명, 유아는 평균 1.82명으로 적은 편이었음.

〈표 V-2-9〉 토요보육 이용 아동

단위: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응답 시설 수
영아	1.61	3.16	0.0	60.0	1,000
유아	1.82	3.43	0.0	40.0	1,000

- ☐ 조사지역에 따라 토요일에 어린이집을 이용한 전체 아동의 수를 살펴본 결과, 대

도시는 평균 3.06명, 중소도시는 평균 4.33명, 농어촌은 평균 2.92명이었음.

- 조사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집단 간 차이가 있었음. 중소도시의 경우 토요일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대도시와 농어촌의 경우보다 많았음(표 V-2-10 참조).
-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토요보육 이용 전체아동 수를 살펴본 결과, 국공립어린이집은 평균 3.68명, 법인어린이집은 평균 4.60명이었고, 민간·부모협동어린이집 평균 4.01명, 가정어린이집은 평균 1.63명, 직장어린이집은 평균 3.96명이었음.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있었고 가정어린이집에서 토요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이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에서보다 적었음(표 V-2-10 참조).

〈표 V-2-10〉 지역 및 어린이집 유형별 월간 토요보육 이용 아동의 차이

단위: 명(%)

구분	사례수	평균(사후검증)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전체	997	3.47	5.80	0.0	100.0	
대도시	405	3.06(a)	6.01	0.0	100.0	6.01**
중소도시	345	4.33(b)	5.99	0.0	38.2	
농어촌	247	2.92(a)	5.02	0.0	47.0	
전체	1,011	3.46	5.77	0.0	100.0	
국공립	193	3.68(a)	5.21	0.0	47.0	9.56***
법인	199	4.60(a)	6.57	0.0	38.2	
민간·부모협동	301	4.01(a)	7.19	0.0	100.0	
가정	256	1.63(b)	2.42	0.0	20.0	
직장	62	3.96(a)	5.19	0.0	18.0	

** $p < .01$, *** $p < .001$.

- 조사지역에 따라 토요보육을 이용한 영아 수를 살펴본 결과, 대도시는 평균 1.43명, 중소도시는 평균 2.02명, 농어촌은 평균 1.33명이었음. 조사지역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있었고 중소도시보다 농어촌지역 토요보육 이용 영아수가 적었음(표 V-2-11 참조).
-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토요보육 이용 영아수를 살펴본 결과, 국공립어린이집은 평균 1.59명, 법인어린이집은 평균 1.73명이었고, 민간·부모협동어린이집은 평균 1.74명, 가정어린이집은 평균 1.29명, 직장어린이집은 1.97명이었음.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집단 간 차이는 없었음(표 V-2-11 참조).

〈표 V-2-11〉 지역 및 어린이집 유형별 월간 토요보육 이용 영아의 차이

단위: 개(%)						
구분	사례수	평균(사후검증)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전체	986	1.61	3.17	0.0	60.0	4.41*
대도시	402	1.43(ab)	3.54	0.0	60.0	
중소도시	339	2.02(a)	2.99	0.0	21.2	
농어촌	245	1.33(b)	2.71	0.0	26.4	
전체	1,000	1.61	3.17	0.0	60.0	1.05
국공립	192	1.59	2.92	0.0	26.4	
법인	197	1.73	3.09	0.0	21.2	
민간·부모협동	299	1.74	4.17	0.0	60.0	
가정	252	1.29	1.84	0.0	13.0	
직장	60	1.97	2.72	0.0	11.0	

* $p < .05$.

□ 지역에 따라 토요일 어린이집을 이용한 유아 수를 살펴본 결과, 대도시는 평균 1.60명, 중소도시는 평균 2.30명, 농어촌은 평균 1.56명이었음. 조사지역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있었고 중소도시에서 토요일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 수가 많았음(표 V-2-12 참조).

□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토요보육 이용 유아 수를 살펴본 결과, 국공립어린이집은 평균 2.09명, 법인어린이집은 평균 2.80명이었고, 민간·부모협동어린이집 평균 2.26명, 가정어린이집은 평균 0.28명, 직장어린이집은 평균 1.95명이었음.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있었으며, 가정어린이집에서 토요일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가 다른 유형 어린이집의 유아보다 적었음(표 V-2-12 참조).

〈표 V-2-12〉 지역 및 어린이집 유형별 월간 토요보육 이용 유아의 차이

단위: 개(%)						
구분	사례수	평균(사후검증)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전체	986	1.83	3.45	0.0	40.0	4.87**
대도시	402	1.60(a)	3.05	0.0	40.0	
중소도시	339	2.30(b)	4.08	0.0	30.8	
농어촌	245	1.56(a)	3.05	0.0	20.6	
전체	1,000	1.82	3.43	0.0	40.0	19.64***
국공립	192	2.09(a)	3.15	0.0	20.6	
법인	197	2.80(a)	4.32	0.0	30.8	
민간·부모협동	299	2.26(a)	3.83	0.0	40.0	
가정	252	0.28(b)	1.22	0.0	15.0	
직장	60	1.95(a)	3.19	0.0	11.8	

** $p < .01$, *** $p < .001$.

4) 토요보육 근무 교직원 현황

- ☐ 토요보육을 위해 근무하는 교직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표 V-2-13>과 같음. 토요일의 어린이집 출근인원은 이용하는 아동이 없을 경우에도 출근한 경우에도 작성하도록 조사한 것임. 평균적으로 토요일에 출근하는 인원은 1.77명으로 주로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V-2-13〉 토요일 한 달 평균 출근인원

구분	단위: 명				
	총 인원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기타
사례수	1,234	1,216	1,216	1,216	1,216
평균	1.77	0.38	1.11	0.19	0.09
표준편차	1.69	0.40	1.20	0.35	0.27

나. 토요보육 운영 및 문제점에 관한 의견

- ☐ 토요보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어린이집 원장, 원감, 교사 등 보육 교직원 4명을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토요보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안을 살펴봄.

1) 보육교사 근무시간에 대한 의견

- ☐ 현행 영유아보육법의 정규 보육운영시간인 주 6일 평일 12시간 보육의 적정성

주5일 근무로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해요. (원감 1)

현재의 법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점심시간 포함해서 9시간인데 점심시간 없이 아이들을 봐야하고, 낮잠시간에도 보육일지 등을 써야 하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시간연장이라고 하면 6시 반부터 9시 반으로 생각하니 시간연장 시간의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통 회사의 6시 퇴근시간과 그 이후 연장근무의 시간이 맞지 않고... (교사 2).

- ☐ 올해 7월부터 주 40시간 근로제 전면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어린이집에서의 대안

근로자 근무시간은 교사가 5인 이상이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어린이집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내용일 수 있어요(원장이 교사로 근무하면서 많은 부분을 메꿔가고 있음). (원장 2)

시간연장 선생님의 근무시간을 늘리는 것은 좋은데 시간을 앞으로 당겨서 40시간..., 추가수당을 주도록 해서 하면 어떨지? 현재는 6시간 근무를 하나 8시간으로 근무하고 추가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해도 좋을 듯. (교사 1)

복수교사제는 파트타임으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4시까지만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면 종일반 선생님만 혼자 아이를 보게 되는 시간이 어려워요. 역할분장의 어려움으로 복수교사, 파트타임교사와의 갈등이 야기되고요. (교사 1)

2) 토요보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토요보육의 필요성

토요보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능력 있는 엄마들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도와야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은 아직까지도 토요일 근무가 너무나 많아요. (원감 1)

아이들 없이 토요일 당직을 했었어요. 현재는 토요보육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대부분이 학교의 놀토와 맞물려 있는 날이 있어서 안한다는 생각이 있고, 내년에는 학교에서 토요일은 모두 쉬는다고 하니 회사들도 바뀔 것 같아요. (교사 1)

☐ 토요보육 진행 및 방법

2시까지 토요보육을 진행해요.(원감 1)

토요보육 교사 12명중 한명씩 나오고 있어요(보통 4~5명 아이들이 토요보육 때 어린이집에 옴). 교사 순환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3달에 한 번 정도 오게 된 거예요. 주간계획에는 통합보육으로 계획안에 넣고 있고요.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으나, 선생님들마다 선호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경향이 있어요(신체활동, 동화책 읽기, 종이접기 등). (원감 1)

현재 토요보육은 수요가 없어서 안하는 것이예요. 격주 토요일(교사인 엄마)에만 아이를 봐주고 있어요. 직업이 없더라도 맡기려는 엄마들은 있어서, 공식화된 토요보육만 안하는 것이예요. 안 해도 되는데 엄마의 편의 때문에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이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원장 2)

통합으로 교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보통은 3명 정도 아이들이 오게 됨. 1명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가구가 따지면 1~2가구임. 보통은 5시까지 보육을 하는데, 늦게까지 한다고 하면, 한다는 가구가 많더라고요. 80% 이상이 부모가 집에 있는데도 토요일도 활용하더라고요. (교사 2)

☐ 근무하는 어린이집 주변 어린이집의 토요보육 현황

주변에서는 토요보육을 하는 원, 시간연장을 하는 원이 있기도 하지만, 수요가 아주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요. (원감 1)

토요보육을 격주로 하는 곳은 많아요(가정어린이집, 아이들 학교 가는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는 곳이 있음). 민간은 토요일에 활성화된 토요보육이 아니라 1~2명만 봐주는 개념이고,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하는 경우가 있는 듯... 골라서 하는 느낌이에요. (원장 2)

주변에 다른 원(2군데..) 토요보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교사 2)

☐ 토요보육 수요의 안정성

주로 오는 고정아이들은 직장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이지만, 나머지는 어머니의 필요에 의해서 토요보육을 이용해요. 그래서 많으면 5~9명까지 오는 경우도 있고. 토요보육을 어머니의 필요에 의해서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정말 급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원감 1)

초등학생도 토요일은 학교에 안가니, 더 안할 것 같아요(내년). 부모 중에서도 둘 중 하나는 쉴 것이고. 자영업인 경우에는 힘들겠지만 주변에 친인척들이 대부분 존재해서 토요보육에 대한 실수요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되요. 현재의 토요보육은 실수요자 보육이 아닌 엄마들 취미활동을 하라고 보육하라는 것으로만 보이기도 해요. 오히려 지원을 너무 늘려놔서 실제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원장 2)

3) 토요보육 개선안(토요보육반 vs. 거점형 토요어린이집)에 대한 의견

☐ 희망 어린이집마다 일정 조건을 갖추어 토요보육반을 운영하게 하고 교사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토요보육반으로 운영할 때 교사는 1명씩 근무를 해도 큰 아이들 경우는 10명 안쪽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어요. 선생님마다 맡고 있는 반의 특성에 따라서도 발달연령에 따라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요(예를 들어 영아반 선생님이 오시면, 유아를 맡을 때 어떻게 아이들과 즐겁게 있어야 하는지 등의 어려움들이 생겨요. (원감 1)

재정(교사 인건비)은 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통합적으로 근무하는 시간만큼만 수당으로 받아가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서도 점심준비 문제가 되요. (교사 1)

토요보육반 신고를 해서 원장이 반을 맡을 수 있다면 가정어린이집에서는 할 것이지만, 원장에게 교사처우개선비를 주지 않는 현실이라면 안할 거예요. 원장에 대한 혜택을 준다면, 가정에선 할 수 있을 수도... 그러나 돌아가면서 교사를 순환하는 것은 교사는 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토요보육반은 엄마들은 좋아하는 운영방식이죠. (원장 2)

☐ 지역거점형으로 토요보육 운영 어린이집을 지정하고 교사를 순환 근무시키며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별도 토요보육교사를 두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토요보육 관련해서는 부모 입장으로만 접근하면 안돼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나 원장도 생각해줘요. 거점 토요어린이집은 아동의 특성을 무시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교사도 감당할 수 없고요. (원장 2)

지역으로 묶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새로운 선생님과 만난다는 설레임도 있을 것 같고. 월급여식으로 바뀌게 되면, 근무한 만큼 받아가는 것이니까 선생님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 그리고 토요보육 기관이라면 근처의 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좋고, 원에 대해 홍보가 되는 경향도 있지 않을까... (교사 1)

원장님들이 토요어린이집을 권장해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원아 모집어려움 때문에... (교사 2)

어느 어린이집에서 하느냐가 중요할 거예요. 기관이 좋아서 반을 따로 만드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의 반을 이용할 텐데, 다른 반에서 자신의 것을 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교사들도 많죠(정리정돈, 파손되는 것 등의 문제로 인해). (원감 1)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도 원장은 항상 있어야 하는 상황이 돼요. 최소 2명이 토요일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프로그램을 할 수 없는 상황. 탁아 이상의 의미가 없게 되고. 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만을 책임지기도 힘겨워요. 고정된 수요자가 있다면 토요보육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수요자를 파악하는 것의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죠. (원장 2)

토요어린이집은 영아한테는 맞지 않는 모형이에요. 절대적으로 맞지 않아요. 장소, 모르는 선생님, 모든 새로운 상황이 영아들에겐 맞지 않음. 교사입장에서도 다른 원에서 보육을 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연령의 통합도 문제이고... (원장 2)

토요어린이집은 영아들에게는 또 다른 낯선 환경이 되어버려요. 큰 아이들은 가능할 수 있으나 영아는 정말 어려워요. 또 기관이다 보니 아이들도 바뀔 가능성이 많고. 그러도 구립이나, 100명 이상 되는 곳들, 직장어린이집 등이 토요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을 듯 해요. (교사 2)

복수교사제로 운영될 때의 문제점은 동일한 교사인데 위계가 결정되는 경향이 되고 (누가 담임인지, 부담임인지 혹은 주교사인지 보조교사인지 등 이렇게 나뉘게 되면 보조교사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어려울 수 있음). 또한 수업방식 등의 문제에서의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순환교사일 경우 아이들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요. 현재 원에서 3달에 한 번씩 토요보육 순환교사를 하고 있는데, 평일에 원에서 근무하는 교사지만 원의 모든 아이들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원감 1)

운영을 할 때 아이들 개별에 대한 (보육)일지가 필요해요. 개인 신상과 더불어 아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필수죠. (원감 1)

☐ 장기적으로 지역거점형 토요보육 어린이집 제도화 시 예상되는 문제

먼저 A라는 원이 거점 토요보육 어린이집이 결정된다면 그 옆의 어린이집은 모두 힘

이 들 것 같아요(몇 명의 원아로 원이 타격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저 같아도 평일에는 B원에 아이를 보내다가 토요일에 A원으로 옮긴다는 건 저희 아이 정서를 위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결국에는 B원이 좋아도 A라는 원으로 옮길 것 같아요... (원감 1)

토요일은 대부분 차량운행을 안하잖아요. 거점 토요보육 어린이집으로 데려다주는 것 그 자체가 비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 추운 날 더운 날은 데려다주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현재 보내는 원보다는 멀 가능성이 많잖아요. (원감 1)

아마 거점토요어린이집 이야기 나오면 교사들은 찬성하면서도 ‘우리 원만 아니면 돼’라고 할 겁니다. 교사들을 너무 이기적으로 몰은 건 아닌지. 하지만 요즘 그렇습니다. (원감 1)

운영자의 입장과 교사의 입장을 모두 생각하려니 너무 힘드네요. 그래도 만약 거점토요어린이집으로 인정되어 운영하게 된다면 하고 싶은 것은 많아요. 전 토요보육 어린이집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원감 1)

거점 토요보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원아는 꼭 직장 다니는 사람에 한해서 받아야 하고요. 등원시간과 하원시간은 대충 정해야 할 것 같아요. 들쭉날쭉하면 수업방행 및 아이들 정서에도 좋지 않고요. 대충 8시30분~9시 등원하고, 하원은 2시 30분 이후 개별 귀가 원아 명단 및 개인파일을 보며 아이들 신상에 대해 파악을 하고 지난주 토요일 일지를 보며 상황 파악하고 그런다면 다른 원에서 오는 아이들을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감 1)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물론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책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어디까지 거점어린이집에서 책임이 있는지 또한 아이들이 파손한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로 결정할 문제들이 많네요. (원감 1)

영아반과 유아반 두 반을 만들어야 해요. 토요보육 담당선생님도 영아반과 유아반 두 분이 필요해요. 처음엔 거점토요어린이집을 영아반과 유아반 두 개의 원을 하려고 했는데 형제, 자매가 있잖아요. 나눠서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한 어린이집에서 한다고 생각했더니 두 개의 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원감 1)

토요보육 어린이집에서 2개 반 형성을 하려면 연령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 4세만 되어도 2개반 운영이 가능하지만, 이건 큰 어린이집에서만 가능할 듯해요. 가정어린이집에서는 힘들고 만 0세 1명, 1세~2세 혼합 5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려울 것 같네요. 한 집에 몰아주는 것은 엄마들이 싫어할 거예요. (교사 2)

4) 토요보육 운영 요소에 대한 인식

☐ 교사 대 아동비율

0세반~2명, 0~1세 혼합반 5명..? 그런데, 1세만해도 배변훈련하기 바쁜데 연령별 비

울이 너무 어려워요.(교사 2)

4세 이상은 5명 이상도 괜찮으나, 1세 아이들은 현재도 5:1인데 토요일에도 그렇게 보면 어려울 것 같아요. 토요일은 교사혼자 모든 것을(급간식 포함) 해야 하는데 너무 어려울 것 같네요. 그래도 3명까지는 가능할 듯... (교사 1)

☐ 토요보육 프로그램

계획안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좋음. 그러나 기존에 토요일은 주로 무작정 진행되었어요. 기존에 아이들은 밥을 먹기 위해 오는 경우도 많았죠. (교사 1)

수업 면에서는 마지막 주 토요일은 아이들을 데리고 영화관이나 뮤지컬, 플레이타임 등 행사위주로 하고 싶어요. 직장 다니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야외활동을 한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원감 1)

그 외의 토요일 수업은 하루 종일 자유선택놀이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특별활동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적인 활동 + 동적인 활동 + 자유선택놀이로 이루어진 수업 가베 활동, 요리활동, 아이클레이, 만들기 활동, 게임 등... (원감 1)

수업을 하게 되면 연령이 다르기 때문에 계획안 작성에도 어려워요. 토요어린이집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교사 2)

☐ 토요보육 재정

최소한 급간식비로 1만 원 정도는 지원이 되고, 선생님 월급 보조가 되는 것이 가장 필요해요. 그리고 주방 아주머니나 기타 지원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원장이 매주 나와서 밥을 해야 하는 것인가? 대안이 별로 없어요. (교사 2).

토요보육에 대한 추가근무 수당은 월 급여에 포함되는 것보다는 시간당 수당이 좋아요. 월급에 민감하죠(민간어린이집). 자신이 일한만큼 받는다는 수당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토요보육 어린이집이 되면 아이들 당 비용, 각 연령별 비용 산정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어요. (원장 1)

그리고 모두들 우려하는 아이들 등원에 따른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요. 그날 활동을 홈페이지에 올리며 출석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초등학교 처럼 아이가 학교에 들어서면 엄마 핸드폰에 찍히는 것처럼 아이들이 원에 들어서면 구청으로 등원표시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은 어떤지... (원감 1)

선불로 교사는 받고, 추후에 원장님이 정부에 신청해서 받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승급교육 신청비처럼). 관리는 근무시간 토요보육 어린이집 전화로 확인전화, 감사를 진행하면 좋을 듯하고 아니라면, 근무하는 날 구청으로 교사가 전화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교사 1)

☐ (교사에게, 당신이) 원장이라면 어떤 방식의 토요보육을 할 것인가

지금도 토요일에는 아이돌보미를 많이 이용하는 분이 있습니다. 토요일은 차량을 안 해서 원에 아이들을 데려다줄 때...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아이사랑카드를 이용하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가능할 듯 해요. 토요일보육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아이돌보미 같은 방법도 있고요. 야간 시간연장을 하는 아이는 10시 20분까지도 있는 아이가 있었는데, 지원을 받으면서 아이돌보미 이용해서 더 일찍 집에 가기도 해요. (교사 1)

☐ 토요일보육에 대한 다른 대안

문제는 토요일보육에 대한 수요가 있더라도 그 기준이 애매한데 있어요.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만 운영된다면 실제로 운영할 수 없어요. 교사 8시간 근무, 어린이집 12시간 운영에서 원장은 골라서 아이들을 받는 현상이 벌어져요. (원장 2)

3. 토요일보육 개선 방안

- ☐ 현재 정규보육 운영시간은 주 6일 평일 12시간(기준 보육시간 7:30~17:30)으로 주당 72시간을 보육하도록 되어있음. 시간연장형 보육은 시간연장보육, 야간보육, 24시간 보육 및 휴일보육의 4가지 형태로 운영 중임.
- ☐ 향후 정규보육 운영시간은 주 5일 평일 12시간씩 주당 60시간을 보육하는 것으로 바뀌고, 토요일 보육은 궁극적으로 휴일보육의 범주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즉, 휴일보육의 의미가 현행 '일요일 및 공휴일'에서 '토·일요일 및 공휴일'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함.
 - 하지만 현행 정규 보육 운영시간을 갑자기 바꿀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호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으므로, 토요일의 경우 희망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토요일보육 서비스를 별도 제공하는 모형을 일정기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 토요일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근무인력에 대한 추가 근무수당을 지원하는 것을 개선방안의 기본방침으로 하되, 가능한 재정지원의 누수를 예방할 수 있는 각종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임.
- ☐ 본 연구에서는 토요일보육반 운영 모형을 「토요일보육-가형: 토요일보육반」과 「토요일보육-나형: 지역거점형 토요일 어린이집」의 두 가지 모형으로 제시하고자 함.
 - 실시 첫 단계에서는 두 모형을 병행하여 실시하다가 점차 지역거점형 모형만 남겨, 일정기간 지난 후부터는 토요일보육을 현행 휴일보육의 형태로 통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임.

가. 토요보육-가형: 토요보육반 운영 모형

1) 지정절차

- ☐ 현행 시간연장 어린이집의 운영방식을 토대로 설정함. 현행 시간연장 어린이집은 '월급여지원 시간연장반'과 '근무수당지원 시간연장반'의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하게 되어있음. 「토요보육-가형」은 별도 보육교사를 채용해야 하는 월급여지원 방식보다는 기존 보육교사를 순환하여 추가 근무시키고 근무수당을 지원하는 방식을 차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 이는 토요일만 근무하는 별도 보육교사를 채용하여 토요보육반을 운영할 경우 주중 근무하는 정규 보육교사와 토요전담 보육교사가 서로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영유아가 주중에 경험하는 보육내용과 토요일에 경험할 보육내용 간에 단절이 생겨 영유아에게 안정적이고 일관된 보육경험을 제공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 즉, 「토요보육-가형」은 일정조건을 갖추어 토요보육반을 운영하겠다고 신고한 어린이집에서 매월 토요보육반 운영보고서와 근무수당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토요일에 추가 근무를 한 보육교사의 근무수당을 일정액 지원하는 방법임.

〈표 V-3-1〉 현행 시간연장 어린이집과 「가형:토요보육반 운영어린이집」의 범위 비교

현행 시간연장 어린이집	토요보육반 운영어린이집 안(案)
·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요보육반 운영 실적을 보고하고 보육교사 추가근무수당 지원을 신청한 기관

- ☐ 토요보육반 운영 후 지원을 신청하는 기관의 규모는 현재 어린이집 35,000여개소의 약 80%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80% 예상치는 2009년도 보육실태조사에서 토요일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기관이 조사대상 기관의 84.4%였으며(유희정, 2011), 본 연구에서 분석한 전국 어린이집 대상 토요보육 현황조사에서도 토요보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82.2%인 것을 토대로 산출하였음.

2) 교사 대 영유아 비율

- ☐ 토요보육반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은 1:5를 원칙으로 하되, 0세아나 장애아가 있을 경우 보육교사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음. 유아로만 편성된 경우 1:7까지 편성할 수 있음.

3) 토요보육 프로그램

- ☐ 토요보육 계획은 어린이집의 기존 보육계획을 참조하여 해당 영유아의 연령 및 개인차를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수립함. 계절, 날씨, 절기 등을 고려하여 연간 토요보육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음. 단, 영유아의 연령차를 고려하여 모든 영유아가 흥미롭게 경험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도록 유의함.
- ☐ 토요보육반의 공간은 어린이집에서 미리 지정한 장소로 하되, 활동계획에 따라 일시적으로 특정 보육실이나 활동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토요보육반의 공간은 참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조용한 영역과 활동적인 영역이 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 특히 영아와 유아가 함께 활동할 경우 영아를 위한 통합적 탐색공간과 유아를 위한 놀이공간이 분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 토요보육이 진행되는 보육실의 교재교구는 참여 영유아의 연령과 개인차를 고려하여 계획된 주제에 어울리는 것으로 배치하여야 함. 끝차, 대형 자동차 등 영아를 위한 대근육 활동기구를 배치하고, 영아 간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영아가 흥미로워하는 교구는 복수로 준비해두어야 함. 유아를 위한 조작영역 교구와 탐색자료도 주제에 맞게 풍부하게 배치할 필요가 있음.
- ☐ 토요보육반의 하루일과는 오전을 중심으로 진행하되 실내외 자유선택활동을 시작으로 간식, 대소집단 활동, 점심 및 휴식, 자유놀이 및 귀가의 순서로 편성함. 낮잠이 필요한 연령대의 영아를 위해서는 조용한 영역에 아기침대를 비치하여 영아가 안전하게 분리된 영역에서 낮잠을 잘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함.
- ☐ 날씨가 좋을 때에는 미리 계획한 현장학습, 지역사회 탐방 등의 특별활동을 진행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반드시 원장과 1명 이상의 추가 인력이 배치되어야 하며 안전하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함.
- ☐ 토요보육을 진행하는 보육교사는 계획된 하루일과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보육

일지를 작성하여 평가하여야 함. 보육일지를 작성할 때에는 개별 영유아별로 활동의 특이사항, 배변 및 식습관 등을 서술하여야 함.

4) 교사 및 기타 인력 관리

- ☐ 원칙적으로 2명 이상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토요보육반을 하루 5시간 이상씩 월 4회 이상 운영하였을 경우 보육교사 근무수당을 월 30만원 지급함.
 - 토요보육반 보육아동을 2명 이상 보육할 경우 토요 근무수당을 지원함.
 - 토요보육반 보육아동이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그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토요 근무수당을 지원함.
 - 해당 토요보육반 전체 아동의 토요보육 보육시간 총 합이 월 40시간 이상일 경우 토요 근무수당을 지원함(등하원을 위한 차량 이동시간 제외).
- ☐ 어린이집별 토요보육반은 기관 유형에 따라 최대 2개반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함.
 - 가정어린이집은 토요보육반 보육교사를 1명만 지원함.
 - 가정어린이집 외 나머지 기관은 토요보육반 보육교사를 최대 2명까지 지원할 수 있음.
- ☐ 원장은 토요보육반을 운영할 경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출근하여 최소 1시간 이상 토요보육을 진행하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 감독하여야 함.

나. 토요보육-나형: 지역거점형 토요보육 어린이집 운영 모형

1) 지정절차

- ☐ 현행 휴일 어린이집 운영방식을 토대로 설정함. 현행 휴일 어린이집의 정의는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하는 기관을 의미함. 휴일 어린이집은 별도 휴일 근무전담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정규 보육교사가 휴일에 순환으로 추가근무를 하되, 하루 5시간이상 추가근무에 대해 근무수당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 「토요보육-나형」은 일정조건을 갖추어 지역거점형으로 토요보육반을 운영하고 자하는 기관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서 토요어린이집으로 지정하는 방식임. 지역거점형은 해당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뿐만 아니라

지역 내 타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를 일정비율이상 보육하는 것임.

- 「토요보육-나형」은 지역거점형이기 때문에 영아반과 유아반으로 2개 반 이상의 토요보육반을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 경우 기존 보육교사 외에 별도의 토요 보육 전담보육교사를 배치하도록 함. 토요보육 전담보육교사에 대한 지원 및 관리 는 현행 시간연장제 어린이집 운영내용 중 '월급여지원' 방식을 차용하여 설정함.
- 즉, 해당 어린이집에서 주중에 근무하는 정규 보육교사가 순환으로 추가 근무를 함으로써 해당기관에 대한 관리를 유지하고, 평일 보육내용과의 연계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토요 보육교사가 있어 지역 내 타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 아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

〈표 V-3-2〉 현행 휴일 어린이집과 「나형:지역거점형 토요보육 어린이집」의 범위 비교

현행 휴일 어린이집	토요보육 어린이집 안(案)
-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
- 국공립·직장어린이집·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학교, 종교부설 설치비 지원어린이집 포함) 중 휴일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기관	- 기존 휴일 어린이집은 가능한 모두 토요 어린이집으로 중복지정 - 국공립·직장·법인어린이집 중 휴일보육은 하지 않으나 토요보육만 실시하는 토요어린이집 추가 지정 -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일정조건을 갖춘 토요어린이집 추가지정
-	- 해당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를 반드시 1명 이상 근무시키고 토요 근무수당을 지원하는 근무수당 지원형을 기본으로 함. - 영아반과 유아반의 2개반 이상의 토요보육반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별도의 토요 보육교사를 월급여지원형으로 추가 지원함. - 지역거점형 어린이집의 바람직한 형태는 해당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와 토요보육교사가 함께 근무하는 것임.

- 「토요보육-나형」은 지역거점형 토요보육 어린이집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에 대 해 토요일에 추가 근무를 한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근무수당을 지원하고, 토요보 육 교사에 대해서는 월 급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지역거점형 토요보육 어린이집은 지역사회 내 수십 개씩의 어린이집마다 1개소씩 지정하도록 하되, 1년을 단위로 순환 지정함으로써 지역거점형 토요보육 어린이집의 기능을 공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2009년 현재 전국의 휴일 어린이집은 166개소임. 형태별 분포를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43개소, 법인어린이집 36개소, 민간 법인의 14개소, 민간개인 43개소, 가정어린이집 23개소, 직장어린이집 1개소임. 보육하고 있는 아동의 수는 503명임(2010 보건복지통계연보). 토요보육-나형을 적용하여 지역거점형으로 토요보육을 실시할 경우, 현행 휴일 어린이집보다는 훨씬 많은 토요보육 어린이집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2012년 지역거점형 토요보육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통해 토요보육 어린이집의 바람직한 운영모델을 구체화시키고 점차 지정기관을 늘려갈 필요가 있음.
- 토요보육 어린이집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 학부모에게는 휴일 어린이집(토·일요일과 공휴일에 운영하는 기관)과 토요보육 어린이집(토요일만 운영하는 기관)로 차별화시켜 인식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라 보임.

2) 교사 대 영유아 비율

- 지역거점형 토요보육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영아반과 유아반을 각각 1개반 이상씩 운영하도록 함.
 - 「토요보육-나형」은 지역거점형 토요보육 어린이집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에 대해 토요일에 추가 근무를 한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근무수당을 지원하고, 토요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월급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지역거점형 토요보육 어린이집은 지역사회 내 수십 개씩의 어린이집마다 1개소씩 지정하도록 하되, 1년을 단위로 순환 지정함으로써 지역거점형 토요보육 설의 기능을 공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은 영아반의 경우 0 - 2세 영아 연령혼합반 비율, 유아반의 경우 3-5세 유아 연령혼합반 비율을 준수함. 장애아가 있을 경우 종사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음.

3) 토요보육 프로그램

- 토요보육 계획은 어린이집의 기존 보육계획을 참조하여 영아반과 유아반을 별도로 수립함. 계절, 날씨, 절기 등을 고려하여 연간 토요보육 계획을 수립하되, 영유아의 연령 및 개인차를 고려하여 모든 영유아가 흥미롭게 경험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도록 유의함.
- 토요반의 공간은 어린이집에서 미리 지정한 두 개 이상의 보육실로 하되, 활동계획에 따라 일시적으로 특정 보육실이나 활동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토요보육반의 공간은 참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조용한 영역과 활동적인 영역이 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
- 토요보육이 진행되는 보육실의 교재교구는 참여 영유아의 연령과 개인차를 고려하여 계획된 주제에 어울리는 것으로 배치하여야 함. 영아반에는 끝차, 대형 자동차 등 영아를 위한 대근육 활동기구를 배치하고, 영아 간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영아가 흥미로워하는 교구는 복수로 준비해두어야 함. 유아반에는 유아의 연령대별로 탐색이 가능한 교구와 자료를 주제에 맞게 풍부하게 배치할 필요가 있음.
- 토요보육반의 하루일과는 오전을 중심으로 진행하되 실내외 자유선택활동을 시작으로 간식, 대소집단 활동, 점심 및 휴식, 자유놀이 및 귀가의 순서로 편성함.
 - 영아반은 개인에 따라 낮잠을 재울 수 있도록 조용한 영역에 아기침대를 비치하여 낮잠을 자는 영아가 놀이에 참여하는 다른 영아들과 분리된 영역에서 안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함.
 - 유아반은 연령이 어릴 경우 개인에 따라 낮잠을 필요로 할 수 있으므로 역시 조용한 영역에 분리된 공간을 조성하여 안전하게 낮잠을 잘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함.
- 날씨가 좋을 때에는 미리 계획한 현장학습, 지역사회 탐방 등의 특별활동을 진행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반드시 원장과 1명 이상의 추가 인력이 배치되어야 하며 안전하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함.
- 토요보육을 진행하는 보육교사는 계획된 하루일과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보육일지를 작성하여 평가하여야 함. 보육일지를 작성할 때에는 영아반과 유아반으로 나누어 구성하되, 개별 영유아별로 활동의 특이사항, 배변 및 식습관 등을 서술하여야 함.

4) 교사 및 기타 인력 관리

- 원칙적으로 2명 이상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아반과 유아반이 포함된 2개 이상의 토요보육반을 하루 5시간 이상씩 월 4회 이상 운영하였을 경우 보육교사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토요보육 교사 인건비를 지원함.
 - 토요보육반 보육아동을 2명 이상 보육할 경우 토요 근무수당을 지원함.
 - 토요보육반 보육아동이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그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토요 근무수당을 지원함.
 - 해당 토요보육반 전체 아동의 토요보육 시간의 총 합이 월 40시간 이상일 경우 토요 근무수당을 지원함(등하원을 위한 차량 이동시간 제외).
 - 토요보육반이 2개 이상일 경우, 1개반에는 토요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으며 인건비가 지원됨
 - 토요보육교사는 정규 보육교사로 등록되며, 경력(자격 및 호봉)을 인정받음.
- 원장은 지역거점형 토요보육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았을 경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출근하여 최소 1시간 이상 토요보육을 진행하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 감독하여야 함.

다. 지방자치단체의 토요보육 지원 방향

1) 종합

- 「토요보육-가형: 토요보육반 모형」의 운영기준을 현행 시간연장반 운영조건(보육 영유아 2명 이상)과 비슷하게 설정할 경우 보육교사 근무수당 지원을 받기 위해 토요보육반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할 기관의 규모가 상당할 것임. 이에 따라 토요보육에 대한 지원재정의 규모가 큰 반면 정책의 실질적 효과는 떨어질 수 있음.
 - 반면, 「토요보육-나형: 지역거점형 토요보육 어린이집 모형」을 중심으로 토요보육의 효율성만 높이하고자 할 경우 영유아기 자녀를 토요일에 맡겨야 하는 학부모의 보육안정성과 접근성이 떨어져 불만이 커질 수 있음.
- 그러므로 초기에는 「토요보육-가형: 토요보육반 모형」을 「토요보육-나형: 지역거점형 토요보육 어린이집」과 병행 실시하다가 점차 「토요보육-가형」을 줄이고

「토요보육-나형」을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하지만 이 경우에도 토요보육 지원에 대한 초기 재정지원 규모가 커서 여전히 예산압박이 생길 우려가 있음.

2) 지역사회 토요보육 수요조사

- ☐ 지자체는 지역사회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의 토요보육 수요를 긴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토요보육 공급물량을 조정해야 함. 매 3년마다 지역사회 토요보육 수요를 조사하되, 어린이집 재원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함.
- ☐ 토요보육에 대한 수요조사는 이외 사업체를 중심으로 한 영유아기 부모인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영유아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조부모 등의 친인척이나 개인 육아도우미의 지원을 받고 있는 부모의 추가 토요보육 수요를 탐지해낼 수 있을 것임.
- ☐ 친인척 등 개인 육아도우미를 이용하고 있을 경우, 육아도우미들이 토요일에 영유아를 돌봐주기를 원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부모의 입장에서는 토요일만 영유아를 맡기는 선택(option)을 희망할 수 있기 때문임.

3) 다양한 토요보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 토요일에 영유아를 돌보아야 하는 조부모 등 친인척, 개인 육아도우미, 배우자가 일하는 동안 혼자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남편이나 혹은 아내 등이 지역사회 육아플라자 등에 모여 영유아를 위해 놀이장소와 놀잇감,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 ☐ 토요보육 프로그램과 장소가 많을 경우, 재원 어린이집의 토요보육반이나 지역거점형 토요보육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일부 시간은 영유아로 하여금 어린이집에서 토요보육을 받게 하고, 일부 시간은 부모나 성인 보호자와 함께 개별 토요보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음. 부모나 성인 보호자는 영유아와 함께 놀이에 참여함으로써 영유아를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교육받을 수 있으므로 영유아가 경험하는 총체적 육아지원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음.
- ☐ 토요일에 영유아를 두세 시간 돌보아주는 놀이장소 등이 있을 경우 토요보육을 펼

요로 하는 부모뿐 아니라 쇼핑이나 결혼식 참석 등 개인 업무를 보고자하는 부모도 이를 이용할 수 있어 지역사회 육아지원에 대한 배려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임.

4) 지역 보육정보센터를 통한 어린이집과 부모 간 정보 교류

- ☐ 보육정보센터를 중심으로 토요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명단과 토요보육 서비스를 구하는 부모 간 정보가 원활히 교류될 수 있도록 연계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 보육정보센터 코디네이터를 통하여 부모가 토요일에 근무하는 시간동안 기존에 이용하던 정규 보육 서비스(어린이집, 개인 육아도우미 등)와 연계하여 추가의 토요보육 서비스를 긴밀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절해 줄 수 있을 것임.

VI. 보육교사 활용 방안

1. 보육교사 미취업 요인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의견

- ☐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나, 현재 무직이거나 교사와 무관한 일을 하고 있는 대상 10명에 대하여 심층 면접을 실시함.

가. 미취업 요인

- ☐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나 취업하지 않은 이유는 개인마다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양함. 그러나 면접을 통해 일부 미취업 요인들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을 발견됨.
 - 지적된 요인은 경제적 요인(낮은 임금수준), 직무환경(장시간 근로, 열악한 복지수준), 보육교사직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원장과의 철학 불일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임.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많은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들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미취업 상태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남.

1) 경제적 요인: 낮은 임금 수준

- ☐ 많은 면접 대상자들에게 공통적이며 가장 빈번하게 지적된 것은 경제적 요인임. 2009년 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는 하루 평균 9.5시간을 일하고 126만원의 월평균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남(유희정 외, 2009).
 - 2009년 법정 최저임금이 시간당 4,000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육교사는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보수를 받고 있는 실정임. 교사의 낮은 임금 수준은 이들로 하여금 보육교사라는 직업을 떠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어린이집에 있었습니다. 뭐 다른 기관보다는 낫지만 제가 첫 해에 60만원 받았거든요. 월 60만원이 괜찮다고 말할 수 없죠. 그 다음에는 107만원 받았고, 세 번째 해에는 111만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대졸 초임 연봉이 2,170만원인가 할 때였는데 많이 적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수 인력이 좋은 학교에서 많이 배우고 트레이닝된 인력이 하고 싶어도 교사하기에 어려움이 많이 있죠. (교사 3)

일은 많은데 당시에 한 60만원? 받았던 거 같아요. 돈도 돈이지만, 괜히 무시당하는 느낌도 들고, 선생님들 말로는 기사 아저씨보다 적게 받는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까지 오고 갔어요. (교사 8)

2) 직무 환경: 장시간 근로, 열악한 복지 수준

- 열악한 직무환경은 보육교사들이 갖는 공통된 어려움임. 특히, 이들에게는 교육이나 보육과 관련된 업무 이외에도 청소, 취사, 문서, 행정, 등하원 버스지도 등의 다양한 업무가 주어지고 있음.
- 그러나 제한된 근무 시간 안에 주어진 모든 업무들을 모두 수행할 수 없어서 영유아들이 있는 수업 시간 일부를 타 업무로 이용한다든지, 퇴근 시간이 미뤄진다는 등 업무 시간을 충당한다고 보고함. 이로 인한 육체적, 심리적 소진은 또 하나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일단은 일이 너무 많은 거 그리고 청소 같은 잡무가 많고, 서류 문제, 원에서 하는 행사도 많고 이렇게 일하는 거에 비해서 급여는 너무 낮잖아요. (교사 1)

혼자 종일반을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쫓았는데 애들을 하루 종일 퇴근하기 전까지 데리고 있어야 하는 게 많이 힘들었어요. 청소할 때도 애들 한쪽 구석에 몰아넣고 했어야 되는 상황들이 좀 힘들었죠. 그리고 구립에서는 엄마들이 구립을 선호하시잖아요. 7세반 같은 경우는 원에 한반밖에 없어서 인원이 거의 38명, 1대 38 한명, 1대 32, 33..., 30명은 항상 넘었던 것 같아요. 근무하면서는 많이 힘들었죠. (교사 4)

퇴근 시간이 너무 늦을 수밖에 없어요. 행사도 너무 많고, 업무는 늘 과다하고. 건강한 아이들을 키우려면 교사가 건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별보고 출근하고 별보고 나간다고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결혼하고 아이 키우게 되면서 점차 교사라는 직종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업무량 과다에 퇴근 시간까지 늦으니 가정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교사 7)

교사일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일들을 시켰어요. 아침 7시부터 나가서 놀이실 청소, 부엌 청소, 심지어 요리까지 돌아가면서 시켰어요. 애들이 많지 않은 곳이니깐 따로 조리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규모였나 봐요. 어쨌든. 그리고 애들 다 보내고 교재는 하나도 없어서 그거 만들고 나면 8시 9시에 퇴근하고.. (교사 8)

3) 보육교사직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 근무 환경의 열악함과 더불어 보육교사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인하여 교사직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음.

-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보육교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다면 견딜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는 대상자도 있었음. 보육교사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은 교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맞물려 취업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나름 의미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결국 애들 봐주는 보모 취급을 당한다고 생각하니 억울하죠.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하고, 애들을 가르친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부모들, 주변 사람들이 많아요. 누구나 1년 정도 배우면 다 어린이집을 열 수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대우도 계속 좋아지지 않고 그런 거 아닐까요? (교사 1)

그때는 양성과정을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6개월이나 1년 과정 공부를 하면 보육교사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육교사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저도 그런 절차를 밟았을 거라는 사회적인 인식도 좀 깔려있었죠. (교사 3)

글쎄요. 꼭 돈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전 무엇보다 교사로서 애들한테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지는 게 너무 싫었어요. 원장님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교사를 그냥 애들 돌봐주는 보모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글쎄. 제가 오래 공부한 건 아니지만, 양성 과정 하면서 1년 동안 내내 아이들 심리도 그렇고, 많이 배운 것 같은데. 그런 건 하나도 써 먹을 수 없다는 게 제가 말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그런 반응들이 좀 그렇던데. (교사 8)

4) 원장과의 철학 불일치

-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 갖고 있는 교육 철학은 운영의 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 특히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이 추구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교재 교구, 교사에 대한 전반적 처우, 교육의 질 등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음.
- 지속적으로 문제되는 민간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제고의 필요성은 면접을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남. 교사 경험이 있는 일부 면접자들은 원장과의 철학이 맞지 않아서 더 이상 교사직을 하고 싶지 않다고 보고하였음.

결국 그만 둔 이유는 ‘원장과 안 맞아서’라고 보면 돼요. 어느 순간 ‘아, 이제는 내가 어딜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략) 제가 실습할 때 구청 어린이집에서 했는데, 그때 원장님이 밖으로는 되게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어린이집 겉으로 보이는 부분은 굉장히 신경 쓰는 분이었던데요. 그런데, 그때 영아반에 제가 실습했는데 우는 아기를 못 안아 주게 하더라고요. 그게, 우는 애를 안아 주면 손 탄다는 거예요. 그 어린 애가 우는 걸 하루 종일 못 안아주게 하니까 그것도 죽겠더라고요. 나이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뜻대로 안 된다는 느낌이 드니까 나중에는 면접을 가서도 내가 스스로 한심하다는 느낌? 그래서 그만두게 된 거지요. (교사 5)

원장이 되게 많이 좌우를 하는 걸 느꼈어요. 구립이고, 수녀님이 운영하는 곳이었었는데 어린이집이 잘 되어 있어서 엄마들이 많이들 와요. 그런데 벽에 애들 그림 하나를 못 붙이게 하더라고요. 내가 실습한 반은 영아반인데, 애들 낙서나 이런 거 있으면 절대 못 봐주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원장님이 마음이 떠있는 사람이라 원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집중을 안 하고 나중에는 오히려 애들 엄마한테 내가 화가 나더라고요. 왜 이런 곳에 애를 보내냐.. 엄마들이 뭘 알겠어요. 결국 애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보이는 것만 신경 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사들을 봐도 지쳐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사 6)

5) 기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육아)

- 모든 직종에서 여성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여성의 경력 단절, 미취업 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면접 대상자들의 절반 이상이 아이를 키우는 30~40대였으며, 그 중 절반으로 육아로 인해 전업 주부를 선택하였음.
- 보육교사의 경우 대부분 출근 시간이 빠르고, 퇴근이 늦으며, 근로 형태에 융통성이 적기 때문에 많은 경우 자녀의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과 맞지 않아 취업을 포기하는 주된 이유로 작용함. 특히 보육교사는 타인의 아이를 맡아서 키우기 위해 자신의 아이를 희생해야한다는 점이 더 큰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그냥, 아이 낳게 되면서 쉬게 되었어요. 그동안 봐온 모습들이 있으니까 우리 애가 지금 세 살인데 (기관에 보내기가)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 애는 기관에 맡긴다는 게 좀 그럴기도 하고, 학교 같은 데는 유급, 무급 휴직 이런 게 있지만 우리는 없으니까 그런 건 바라기 힘들고. (교사 1)

사실 제가 일하려고 제 아이가 피해보는 게 말이 안 되고, 너무 미안하잖아요. 지금 제 직장(사무직) 선택할 때도, 전 월급이나 다른 거 안 보고 아이 맡기고 출퇴근 할 수 있는 여유량 시간이 가능한 지를 제일 먼저 봤어요. 아이 키우는 동안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걸 조금 피해를 보더라도, 마음 편히 맡길 수 있으면 그걸로 감사하죠. 직장 있는 엄마들 너무 불쌍해요. 저 일했을 때도 옆 반 선생님이 아이 아픈데, 자기 반 애들 대신 봐줄 사람이 없어서 나가지도 못하고 펄펄 울더라고요. 보조로 도와줄 한 사람만 있어도 그런 일은 좀 줄지 않을까요? 교사들은 아파도 아프다고 말도 못 해요. 반을 뺄 수가 없으니까. (교사 8)

주변에 보면, 자신의 아이는 맡길 데가 없어서 엄마, 시어머니, 친척을 총동원시키고 허겁지겁 출근하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리고 와서 너무 속상해 하죠. 남의 아이를 먹이고, 재우고 있는 심정이 어떨겠어요? 사실, 출퇴근 시간을 좀 조절해 주면, 마음 편하게 맡기고 올 수 있을 텐데, 또 그 오전 오후 근무를 대신 다른 선생님들이 더 많이 맡아야 하니 얼마나 눈치 보여요. 하라 그래도 못하죠. 공식적으로 무슨 대안이 주어지지 않으면, 알아서 그냥 대책을 찾는 수밖에요. 선생님들이 자기 애 데려올 수 있게 해달라고 몇 번 건의했는데, 곤란하단 얘기만 들었어요. 여러 가지 말도 나올 수

있고, 사실 다들 아이 낳을 나이니 자리가 부족할 수도 있고. 아무튼 운영하는 입장은 다른가보죠. (교사 3)

나. 요구 사항

1) 교사 처우 개선

- ☐ 모든 면접 대상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안했던 것은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임. 낮은 경제적 대우가 교사의 이직의 가장 큰 원인인 것을 감안할 때, 특히 경제적인 처우에 있어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우선 무엇보다 교사 월급을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다못해 야근 수당이라도 주던지. 야근은 당연시하면서, 수당은 바랄 수 없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이들을 맡기는 건데. 사실 어떤 일보다 더 많이 에너지가 필요하고, 더 집중도가 필요한데. 무조건 희생정신, 사명감 같은 얘기만 해서는 통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기준이 있고, 그것에 합당하게 급여를 줬으면 좋겠어요. (교사 3)

어느 직장이나 처음은 다 힘들죠. 그리고 월급도 적고. 하지만, 점차 일을 해 가면서 월급도 오르고, 어느 정도까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예상이 되니까 참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주임 된다고 뭐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다 뻔히 저희도 아는데. 원장님도 월급 받는 분들은 박봉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계속 너무 돈 얘기 하는 거 같아 그런가요? 그래도 솔직히 전 그렇게 생각해요. (교사 8)

2) 근무 환경 개선

- ☐ 교사 처우와 더불어 근무 환경의 개선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 교사들의 청소, 요리, 문서 작업 등의 잡무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양질의 보육,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보조교사, 청소부 등 도움 인력의 제공이 절실히 요구됨.

적어도 교구 만들 시간은 확보해 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어느 정도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직업인데. 청소하고, 요리하느라, 행사 준비하느라 애들을 방치하고 있을 때는 죄책감마저 들어요. 제가 있던 곳도 한 반에 한 명의 정교사가 담임으로 있고, 보조는 없었어요. 나름 동네에서 유명하고 인기도 많은 곳이었는데 대체 교사는 누가 빠지고 못 나올 경우만 고용하는 거니까, 개념이 다르죠. 반에 보조교사를 배치해 주든가, 원에 청소 인력을 배치하든가 아침저녁으로 청소하다 보면 이게 뭐하는 건가 싶죠. (교사 2)

3) 일·가정 양립 지원

- 자녀 출산은 보육교사들의 경력 단절을 유발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어린이집은 일하는 여성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임. 면접 대상자들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제안하였음.
- 특히 출퇴근 시간의 유연성, 시간제 근로의 활성화, 보조나 대체교사 인력의 확보 등으로 자녀의 등하원이나 급한 사고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많았음.
- 또한 어린이집이라는 공간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사의 자녀를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옴. 보육교직원들의 일·가정 양립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고민이 요구됨.

아이가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아이들이란 게 원래 그렇잖아요? 그런 사정을 조금 감안해줄 수 있는 분위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어떤 유치원에는 아예 비상교사가 있다는데. 교사들이 아프거나 문제가 생길 때 그 반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진짜 부럽더라고요. 그런 게 약간은 일반화 돼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아이 문제 뿐 아니라 교사 스스로를 위해서도 필요한 거 같아요. 저희끼리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교사는 아프지도 못한다고. 아프면 당장 우리 반을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파도 교실 가서 쓰러지자 그래요. (교사 2)

제 아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조건?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보니까 믿고 맡길 데를 찾기도 힘들고, 또 너무 멀리 떨어뜨려놓고 다니기가 힘들니까 같이 다닐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지요(교사 4).

이게 현실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내 아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일하면서 내 아이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부분 동료들도 보면 자기 아이 맡길 곳을 못 찾거나 아이 등하원과 본인 출퇴근 시간이 맞지 않아서 결국 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교사 7)

4) 유휴 인력활용

- 면접에 참여한 대상들은 대부분 보육 교사 직업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고, 처우나 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갖고 있음. 교사를 그만두거나 지원하지 않은 이유의 대부분이 근로 조건과 관련되어 있었음.

□ 그러나 일부의 경우에는 가정 보육교사 제도, 방과 후 돌보미, 산모 돌보미, 아이 돌보미 등의 직종에도 관심을 보임. 또한 특히 아이를 키우는 주부들의 경우 융통성 있는 시간활용이 가능한 직종을 개발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함.

○ 베이비시터(가정 보육 교사)

음... 베이비시터요. 그리고 요새 뭐 구청에서 파견시켜 주는 것도 있던데, (아이돌보미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대부분 나이 많으신 분들이 오셔서 하시더라고요. 제 친구도 그런 분들이 오셔서 도와주시거든요. 그런데 그건 그냥 할머니가 애기 봐주시는 뭐 그런 정도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다르잖아요. 한 집에 가서 아이 하나나 뭐 둘도, 너무 어린 애들은 말고 한 서너 살 되는 아이들, 만 2세 정도 된 애들 봐주는 그런 일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은 엄마들이 기관에 보내기도 어려우니까요. (교사 1)

○ 시간제 교사의 활성화

글쎄. 보수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제 일을 활성화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한 시간동안 보조교사를 한다든지. 그런 걸 관리해 주는 곳이 있어서 등록하면 연결해 준다든지 하면 좋겠어요. 지금은 다 알음알음으로 구해요.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서 구하기도 하고. 그런데 양쪽 다 왠지 신빙성이 없잖아요. 아이 키우는 동안은 시간제 일도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경력이 인정된다면 더없이 좋겠지만요. (교사 3)

○ 방과 후 보육교사

그런데 공부방 같은 거 있잖아요. 공부방을 보통 애들 모아놓고 엄마가 올 때까지 보살펴주는, 그 애들이 보호받는 공간을 만드는 데 보육교사들이 투입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 보육 개념도 있고, 교육의 개념도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부모가 없는 집으로 아이가 혼자 들어가기보다는 어떤 단체에서 그걸 해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은 해 본 것 같아요. (교사 6)

보통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끝나는 시간과 엄마들이 퇴근하는 시간이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전 그것도 틈새시장인 것 같아요. 내 아이 보면서 그런 애들 같이 봐주면 어떨까도 생각해 본 적 있거든요. 나중에 일(사무직) 그만두고, 어린이집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하다가 차라리 공부방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엄마들이 그런 거 원해요. 야근하게 되는 경우 정말 대책이 없거든요. 운영시간이 너무 짧아서 남는 게 없으려나 (교사 8)

2. 보육교사 인력활용 개선방안

- 보육교사 관련 전문가 5인, 관련 기관 2곳을 대상으로 보육교사 인력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자문회의를 개최함. 그 결과 미취업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활용 방안과 전반적인 인력관리 방안 등이 논의되었음.
- 심층면접, 관련연구고찰, 자문회의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육교사 인력활용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개선방안은 미취업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활용 방안과 전반적인 인력관리 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음.

가. 미취업 자격증 소지자 활용방안

1) 근로형태 유연화

- 현재 대부분의 미취업 상태인 자격증 소지자들은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시간제 근로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형태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음.
- 다양한 근무시간에 적합한 근로직종을 개발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함. 시간제 교사의 경우 학급 운영 이외에 보육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일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됨. 보육교사의 업무가 과중하여 보육의 질 제고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보완해줄 수 있는 위해서는 근로 형태 개발이 필요함. 각각의 근로 형태에 대해서 소정의 교육을 제공하여 교육현장에 투입할 경우 전문성 있는 인력으로 활용이 가능함. 제안된 형태는 다음과 같음.
 - 통합보육 시간제 교사
 - 건강영양관련 시간제 교사(점심타임 전후로 집중 배치)
 - 업무지원 시간제 교사
 - 특별활동 교사

2) 근로직종의 다양화

- 현재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대부분 보육교사로서 일하고 있음. 그러나 자격증 소지자가 일할 수 있는 분야는 더 확대될 수 있음.

- 실제 현재 보육정보센터의 보육전문요원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가정보육교사 제도의 경우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유희 인력들이 자신의 상황과 관심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직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제안된 일자리로는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국’의 현장관찰자, 가정보육교사나 아이돌보미 등의 가정 내 양육지원인력, 방과 후 교사 등이 있음.

3) 재취업을 위한 보수교육 실시

- 미취업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다시 보육 현장으로 투입되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이 필수적임. 재취업의 형태(보육교사, 시간제 교사, 현장관찰자, 보육요원, 가정 내 양육지원 인력 등)에 따른 보수교육과정 개발이 요구됨.
- 여성인력개발센터, YWCA, 건강가정지원센터, 보육정보센터, 보육교사 보수교육과정 운영 기관 등 여성인력 관련 지원센터들에 단기보수교육과정을 위탁하여 경력단절 보육인력과 일자리 간의 연계를 도모함.
- 보육정보센터 이외의 기관을 거론하는 것은 교사 수급이 어려운 곳은 정작 지방인데, 지방에는 보육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고, 오히려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YWCA 등이 운영되는 곳이 더 많음
- 단, YWCA 같은 주부단체의 경우 전문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음.

4) 보육교직원들의 일·가정 양립 보장

- 많은 보육교직원들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보육교직원들의 자녀에 대한 보육지원이 필수적임. 기관 규모나 상황 등의 문제로 교직원 자녀를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 인근 지역과의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이러한 자녀양육 지원은 교사들의 직무 환경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교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보육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5) 적극적 홍보

- 경력 단절 보육교사의 재취업 관련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함(예: 대체교사형태 또는 시간제 교사 형태 등). 공익광고 형태로 TV에 보도하거나, 각 지역 라디오나

배너에 홍보 또는 인기 드라마의 카메오 내용으로 삽입 가능함.

- 경력 근로형태의 유연화에 대한 시도에 있어서 경력인정 문제는 중요한 이슈임. 그동안 주 40시간 이상일 때 경력을 인정해주던 과거의 시스템이 변화하고 있음. 현재 주 30시간의 단축근로형태도 경력으로 인정해주고 있음. 이에 대한 홍보를 통해 유인책으로 활용할 수 있음.

나. 자격증 소지자 인력관리 방안

1)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활용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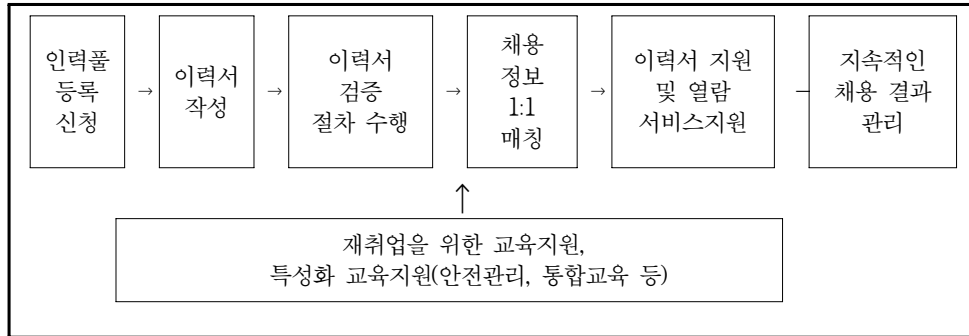
가) 보육교직원 자격증 소지자 대상 인력풀 관리 시스템 구축

□ 목적

- 보육 관련 정보의 접근성 제한 등으로 인해 보육 교직원 자격증 취득 후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대상을 위한 인력풀을 구성하여, 보육 관련 최신 정보 및 채용 정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함.
- 인력풀 등록자를 대상으로 변화된 보육정책과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취업, 재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특성화된 전문교육 프로그램(예: 어린이집 안전관리,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등)을 제공함. 현장 부적응으로 인한 재이탈 예방 및 전문성을 갖춘 인력 배양을 위함.
-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교부기관을 통해 검증된 인력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격취득에서부터 채용까지 one-stop 서비스를 구현함.
- 보육현장에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근무 공백 기간 중에도 보육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잠재적 보육인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제공함.

□ 추진체계

-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내 인력풀 관리시스템을 구축함.
 - － 인력풀 관리시스템 내 등록 신청, 현황 조회, 어린이집 구인신청 정보조회, 자격관련 최신 정보 및 채용 정보를 위한 메일링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함



[그림 VI-2-1] 보육교직원 인력풀 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체계

- 인력풀 등록 신청자 이력서 검증 절차 수행 및 대상을 관리함.
 - － 인력풀 등록 신청자의 이력서 검증을 위한 관련 기관의 협조를 요청함.
 - － 등록 신청 대상의 학력, 경력 관련 기관을 통해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에 협조 공문 발신 및 수신 결과를 관리함.
 - － 인력풀 등록 신청 결과 통보함(인력풀 관리시스템을 통한 결과 통보).
 - － 검증 절차 완료 대상을 관리함(학력, 경력, 직종별, 채용희망 지역별 대상 분류 및 명단 관리).
- 인력풀 등록자 재취업을 위한 교육 및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 － 장기간 비현직자에 대한 현장 적응 교육 및 전문성을 요구하는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 － 현장 적응 교육 프로그램 개발(온라인 교육 포함) 및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예: 어린이집 안전관리,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자원봉사 등) 운영함.
 - － 인력풀 관리시스템 내 교육 수강 신청 및 교육 프로그램 수료 시 수료증 발급 시스템을 구축함.
-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내 구인 신청 내역 및 지원자 이력서 열람 체계를 구축함.
 - － 채용 관련 정보 카테고리별(학력, 경력사항 등) 입력을 통해 구인 신청 및 이력서 지원 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이력서 열람 화면을 구성하여, 원하는 채용 요건을 갖춘 인력에 대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함.
- 인력풀 관리시스템 내 어린이집 구인신청 정보를 관리하고 1:1로 매칭함.

- 구인신청정보와 인력풀 등록자간 조건 검색 수행 결과에 따라 1:1로 매칭함.
- 이력서 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대상의 경우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어린이 집에서 이력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정보를 연계함.
- 인력풀 등록자 대상 채용 관련 1:1 맞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
- 보육 관련 최신 정보 안내를 위한 메일링 서버를 구축함.
- 인력풀 등록자를 대상으로 채용 관련 최신정보 및 보육관련 뉴스레터(승급교육, 관련 학회 소식, 보육정책 방향 등)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함.

나) 기대 효과

- ☐ 공신력을 갖춘 국가자격증 발급 기관을 통해 자격증 취득부터 채용 지원까지 가능한 one-stop 서비스를 구현함.
- ☐ 현직에 있지 않더라도 인력풀 관리 대상이 되는 경우 보육 관련 최신정보를 공유하고 노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후 보육현장으로의 용이한 진입 가능성을 기대함.
- ☐ 다양한 근무형태별 대체인력(시간제 보육교사, 대체교사 등) 확보 가능성을 기대함.

2) ‘보육정보센터’ 보육인력 관리시스템 지원 방안

가) ‘보육교사 인력뱅크’ 시스템 마련을 통한 매칭서비스

- ☐ 추진방향
 - ‘보육교사 인력뱅크’ 중앙시스템을 구축하여 어린이집과 보육인력을 매칭함.
- ☐ 세부내용
 - 대상: 인력뱅크 가입 전국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
 - 방법
 - 기본 data base
 - 어린이집 회원, 교직원 회원
 - 어린이집 구인: 근무조건, 자격요건, 경력 우대사항 등 검색
 - 교직원 구직: 선호지역, 직책, 근무조건 등 분야별 검색
 - on-line에서 관련 서류 첨부하여 모집 응시 체계를 구축함.
 - ※ 정보열람, 또는 인력뱅크 담당자 연결



[그림 VI-2-2]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심으로 한 보육교직원 인력풀 관리 시스템 사업 추진 체계

○ 준비사항

- ‘보육교사 인력뱅크’ 시스템 구축 및 홍보사업 전담 인력을 배치함(※각 어린이집 링크 또는 정보센터 링크).

□ 기대효과

- ‘보육교사 인력뱅크’ 활용을 통한 지역별 인력 정보리스트를 확보함.
-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공급의 어려움을 완화함.

나)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구직’ 시스템 활용

□ 추진방향

- 중앙보육정보센터와 시군구보육정보센터의 구인·구직란을 연결하여 인력수급

체계를 단일화함.

☐ 세부내용

- 대상: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 방법: 중앙보육정보센터에 '구인·구직' 배너를 구축하고 각 시군구보육정보센터와 연계하여 구인 및 구직을 단일화

☐ 기대효과: 구인 및 구직 통로를 단일화하여 이용자 편리성 도모

3) 기타 - 자격관리 및 인력 관리 시스템의 연동

☐ 자격증 신청 시 회원가입 단계에 자격증 발급 이후에 채용 및 보육분야 최신 정보에 대한 수신(메일 또는 SMS)을 받았다는 동의를 받아서 인력관리 시스템으로 자동 연동되도록 하는 방안임. 개인정보에 대한 적법한 관리체제의 구축은 가능하나, 장기적인 이탈 시 추적이 어렵다는 문제점 있음.

☐ 그러나 보육현장에 진입하는 자격을 취득자에게 채용에 관련된 정보를 얻는 경로를 확실히 전달할 수 있음.

참 고 문 헌

- 강문희·김매희·이경희·정정옥(2005). 야간 및 24시간보육 실태 및 요구도 조사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회지, 22, 27-56.
- 김동례·백영애·김지영(2010). 시간연장형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요구도 :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한국보육학회지, 10(2), 59-77.
- 김명순 외(2009). 보육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운영기준 합리화 방안. 보건복지가족부·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 김명순(2010). 보육선진화를 위한 보육교사 및 시설장 전문성 향상에 관한 개선안 논의. 육아정책연구소·한국보육진흥원 토론회 자료집: 보육선진화를 위한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방안, 43-48.
- 김은설·안재진·최윤경·김의향·양성은·김문정(2009). 보육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방안 연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연구소.
- 김정신·노은호(2006). 전문직으로서의 보육교사와 자격제도. 한국여성교양학회지, 15, 207-234.
- 김정희·이경아·서화숙·최현진(2004). 특수(시간연장형)보육 수요조사 및 정책 대안 연구. 서울: 여성부·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백선희(2008). 보육정책으로서의 가정내 보육지원 제도화 방안에 대한 검토. 가정 내 보육지원 제도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
- 보건복지부(2009). 2009 보육통계,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0). 2010 보육통계, 서울: 보건복지부.
- 서문희·김은설·최진·안재진·최혜선·김유경·조애저(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가구조사 보고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 서문희·양미선(2011). 보육시설 이용시간 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이윤진·유해미·송신영·김세현(2011). 출산수준 제고를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최혜선(2010).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서원경·최석란(2005). 보육교사와 영아의 애착 증진을 위한 야간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한국영유아보육학회지, 42(9), 253-277.
- 유희정(2011). 주 40시간 준용과 어린이집 운용방안. 한국보육학회 추계학술자료집:만 5세 공통과정과 보육의 새로운 체계고찰, 95-117.
- 유희정·이미화·민현주·강민정·선보영·서영숙(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보육 시설조사 보고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윤경준·지경빈(2011). 보육교사 이직 의도와 정책적 시사점 -서울형 어린이집의 구조적특성과 근무환경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5(2), 171-197.
- 이미화·장명림·신나리·김문정·김현철(2006). 육아지원인력의 수급전망과 전문성 제고 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 이숙희(2009).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탐색, 한국보육시설연합회 토론회 자료집: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방향.
- 이옥(2007). 차기정부의 육아정책과제. 육아정책개발센터 2주년기념 세미나 자료집.
- 임양미·구현아·안효금(2009). 경기도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 개선방안 연구. 수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장영인·최영신(2008). 시간제보육의 필요성과 그 활성화 방안 모색. 한국영유아보육학회지, 53, 79-105.
- 정미라·조희연·안재진(2009). 프랑스의 육아정책.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 정효정(2005).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영유아보육학회지, 42, 279-303.
- 조선주·유희정·강민정·오현경(2010). 시간연장 보육교사 근무수당 지원 시범사업 효과분석 및 시간연장보육 활성화방안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윤경·김재원(2011). 보육교직원 보수체계 개선 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保育小辭典編集委員會(2006). 保育小辭典. 東京: 大月書店.
- 全國保育団体連絡會·保育研究所(1999~2010). 保育白書 1999~2010. 東京: ちいさいなかま社.
- 名古屋市子ども青少年局・子育て家庭部保育企画室・保育運営課(2010). 名古屋市の保育. 名古屋市: 名古屋市役所.

- Adams, G., & Rohacek, M. (2002). More than a work support? Issues around integrating child development goals into the child care subsidy system.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7, 418-440.
- Barnes, M., Bryson, C., & Smith, R. (2006). Working a typical hours: What happens to "family life". Research report funded by the Nuffield Foundation and done in collaboration with the Relationships Foundation. Retrieved October 31, 2011, from <http://www.natcen.ac.uk/media/665721/working%20atypical%20hours%20research%20report.pdf>
- Cho, EK. & Couse, J. L.(2008). Early Childhood Teacher Policy in the United States: Continuing Issues, Overcoming Barriers, and Envisioning the Fu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2(2), 15-30.
- Greenberg, M. H. (1998). Spend or transfer, federal or state? Consideration in using TANF and TANF related dollars for child care. Washington, DC: Center for Law and Social Policy. Retrieved October 31, 2011, from http://www.clasp.org/admin/site/publications_archive/files/0021.pdf
- Harries, T., La Valle, I., & Dickens, S. (2004). Childcare: How Local Markets Respond to National Initiatives. Research Report 526, Department for Education, London. Retrieved October 31, 2011, from <https://www.education.gov.uk/publications/eOrderingDownload/RB526MIG396.pdf>
- Henly, J. (2008). Employment-based challenges: Scheduling and its implications for child car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Child Care Policy Research Consortium, Washington, DC.
- Johnson, J. H. IV. (2004). Do Long Work Hours Contribute to Divorce? *Topics in Economic Analysis and Policy*: Vol. 4(1), Article 24.
- Martinez-Beck, I. (2009). Design phase: National Study of Child Care Supply and Demand-2010 literature review and summary. 4th Draft, Revised, August 13, Retrieved October 31, 2011, from http://www.acf.hhs.gov/programs/opre/cc/design_phase/literature_review.pdf
- Meyers, M. K. (2007, November 19). Child-Care Pay, Child-Care Quality. The American Prospect.

- Minister for Education and Science(2008). Developing the workforce in the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sector Background discussion paper.
- Ministry of Education, New Zealand(2008). Perceptions of Teachers and Teaching: A Focus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 Moss, P. (2000). Workforce Issu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For consultative meeting on International Development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 Moss, P. (2003). Re-forming the Education and Care Workforce in England, Scotland and Sweden UNESCO Policy Brief on Early Childhood. L
- Platinga, P. & Remery, C. (2009). The provision of childcare services: A comparative review of 30 European countries.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Employment, Social Affairs and Equal Opportunities.
- Presser, H. B. (1995). Job, family and gender: Determinants of nonstandard work schedules among employed Americans in 1991. *Demography*, 32, 577-598.
- Rutter, J. & Evans, B. (2011). Informal childcare: Choice or chance? A literature review. Retrieved October 31, 2011, from http://www.daycaretrust.org.uk/data/files/informal_childcare_march_2011_final.pdf
- Singler, R. (2011). Open all hours? Flexible childcare in the 24/7 era. Retrieved October 31, 2011, from http://www.daycaretrust.org.uk/data/files/atypical_hours_report_final_march_11.pdf
- Statham, J., & Mooney, A. (2003). Around the clock: Childcare services at atypical times. Bristol: The Policy Press, UK. Retrieved October 31, 2011, from <http://www.jrf.org.uk/sites/files/jrf/jr144-childcare-services-times.pdf>
- Stoll, M., Alexander, D., & Sugimura, N. (2006). Working Later Illinois: Work Schedules, Incomes and Parents' Access to Child Care. Illinois Action for Children Research Department. Chicago, IL. Retrieved October 31, 2011, from http://www.actforchildren.org/content_assets/MDP_ResearchPublications_PDFs_WorkScheds.pdf
- Szekely, A. E. (2004). Using CCDF to finance improved access to child care during

Nontraditional Hours. Welfare Information Network, October, 1-12. Retrieved October 31, 2011, from <http://76.12.61.196/publications/usingccdfinanceSB.pdf>

Whitebook, M., Howes, C., & Phillips, D. (1998). Worthy work, unlivable wages: The national child care staffing study, 1988-1997. Washington, DC: Center for the Child Care Workforce.

<참고 웹 사이트>

<http://www.ccw.org/>

<http://www.city.yokohama.lg.jp/front/welcome.html>

<http://www.city.kawasaki.jp/index.html>

<http://www.city.kyoto.lg.jp>

<http://www.city.sapporo.jp/index.html>

<http://www.mhlw.go.jp/index.shtm>

<http://www.referenceforbusiness.com/industries/Service/Child-Day-Care-Services.html>

부 록

부록 1. 시간연장보육 이용신청서

부록 2. 토요보육 현황 조사 설문지

[부록 1] 시간연장보육 이용 신청서

시간연장보육 이용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아동과의 관계	
	주소				집전화	
					휴대전화	
가족 사항	신청인과의 관계(보호자 모두 기재)	성명	직업	연락처 (휴대전화)		
이용신청 현황	아동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이용어린이집 명 (소재지)	()				
	주당 이용횟수	회	이용시간	: ~ :		
	이용사유					
〈유의사항〉 -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 하원 시 시간연장 출석부에 하원시간 기록 및 보호자 확인을 자필로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부 허위 날인 및 부정 수급 사례 적발 시 보육료 미지급 및 환수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12.3.1부터는 본 신청서가 시·군·구청장(보육담당과에 FAX전송 또는 스캔하여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등재)에게 제출하여야 시간연장보육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어린이집원장 (서명) ()시·군·구청장 귀하						

[부록 2] 토요보육 설문조사지

토요일 어린이집 운영현황 설문조사지

(해당 사항에 직접 기재하시거나 해당 번호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1) 귀하께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시·도) (시·군·구)]

문2) 귀하께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국공립 ② 법인 ③ 민간 ④ 가정 ⑤ 부모협동 ⑥ 직장

문3) 귀하께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정원은 몇 명입니까?

① 20명 이하 ② 21명 이상 40명 이하 ③ 41명 이상 60명 이하
④ 61명 이상 80명 이하 ⑤ 81명 이상 120명 이하 ⑥ 121명 이상

문4) 귀하께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현원은 몇 명입니까?

① 20명 이하 ② 21명 이상 40명 이하 ③ 41명 이상 60명 이하
④ 61명 이상 80명 이하 ⑤ 81명 이상 120명 이하 ⑥ 121명 이상

문5) 귀하께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7월달 토요일 운영현황은 어떻습니까?

구 분	운 영 여 부	비 고
2011.7. 2.(토)	① 운영함 ② 운영하지 않음	※ 모두 운영하지 않음으로 체크하신 분은 아래 문6)~문8)은 작성하지 않음
2011.7. 9.(토)	① 운영함 ② 운영하지 않음	
2011.7.16.(토)	① 운영함 ② 운영하지 않음	
2011.7.23.(토)	① 운영함 ② 운영하지 않음	
2011.7.30.(토)	① 운영함 ② 운영하지 않음	

문6) 귀하께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7월달 토요일 이용 아동은 몇 명입니까?

구 분	이 용 아 동		
2011.7. 2.(토)	(총 명),	(영아 명),	(유아 명)
2011.7. 9.(토)	(총 명),	(영아 명),	(유아 명)
2011.7.16.(토)	(총 명),	(영아 명),	(유아 명)
2011.7.23.(토)	(총 명),	(영아 명),	(유아 명)
2011.7.30.(토)	(총 명),	(영아 명),	(유아 명)

문7) 귀하께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7월달 토요일에 출근한 교직원은 몇 명입니까?
(위 문6에 이용아동이 없는 경우에도 어린이집을 운영한 경우 작성)

구 분	계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기타 직원
2011.7. 2.(토)	()명	()명	()명	()명	()명
2011.7. 9.(토)	()명	()명	()명	()명	()명
2011.7.16.(토)	()명	()명	()명	()명	()명
2011.7.23.(토)	()명	()명	()명	()명	()명
2011.7.30.(토)	()명	()명	()명	()명	()명

문8) 귀하께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7월 토요일 운영시간은 몇 시까지입니까?

구 분	운 영 시 간
2011.7. 2.(토)	① 12:00까지 ② 13:00까지 ③ 14:00까지 ④ 15:30까지 ⑤ 15:30 이후
2011.7. 9.(토)	① 12:00까지 ② 13:00까지 ③ 14:00까지 ④ 15:30까지 ⑤ 15:30 이후
2011.7.16.(토)	① 12:00까지 ② 13:00까지 ③ 14:00까지 ④ 15:30까지 ⑤ 15:30 이후
2011.7.23.(토)	① 12:00까지 ② 13:00까지 ③ 14:00까지 ④ 15:30까지 ⑤ 15:30 이후
2011.7.30.(토)	① 12:00까지 ② 13:00까지 ③ 14:00까지 ④ 15:30까지 ⑤ 15:30 이후

문9) 토요일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제도개선 및 정부에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쁘신데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 취약보육과 보육교사 인력활용을 중심으로 -

발행일 2011년 12월
발행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전화: 02) 2023-8944
팩스: 02) 2023-8921
인쇄처 대명기획 02) 2273-1292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0549-01